

2016
겨울

생협 평론

25

길잡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6
— 박종현(편집위원장)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

우리 사회 고령화 문제와 그 해법으로서의 사회적경제 14
— 정건화(한신대학교 교수)

고령화에 대응하는 일본 생협의 복지사업 36
— 이향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원)

의료협동조합이 만들어가는 ‘노인이 행복한 세상’ 56
— 박봉희(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교육연구센터 소장)

여민동락공동체의 일상 76
— 강위원(여민동락공동체 대표 살림꾼)

고령화의 도전과 한살림의 대응 90
— 장지연(한살림서울 돌봄기획팀 차장)

[좌담]

조합원의 눈으로 노후를 꿈꿔보다 98



김미선 김종희 우미숙 추경숙 김형미

이슈 일반협동조합의 공익성을 말하다 119
— 최영미(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이른바 ‘일반협동조합’의 공익성에 관한 법이론적 소고 130
— 변철환(한국기업·노동·복지법학회 이사)

돌발 논문 협동조합 회계기준의 필요성과 신뢰성 확보 방안 148
— 이한우(세무사)



아이쿱생협 만평	함께하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 박해성(만화가)	162
기획 연재	협동조합을 가다 ⑬ 따로 또 같이, 아티자장(artisan)들의 발자국 — 김푸르매(S. Economy 편집장)/사진 손정화(라파엘 인터내셔널)	163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길라잡이 ⑤ 조합원의 시선으로 준비하는 총회 — 김현하(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파트 파트장)	178
서평	어떤 잘못도 없는 가난의 세습, 그 비극의 목격담 : 로버트 D. 퍼트남, 『우리 아이들』 — 정설경(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캠페인팀)	186
	이 시대의 인의(仁醫)를 찾아서 : 임중환 외, 『참 좋은 의료공동체를 소개합니다』 — 이태수(꽃동네대학교 교수)	191
협동조합 소식	‘돌봄’의 문제를 고민하는 해외 협동조합 — 이주희(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국제협력파트)	195
	독자의 소리	4
	정기구독 안내	247
	『생협평론』 과월호 목차	200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발행물 목록	231

생협 평론

기간 2016년 겨울 제25호 **퍼낸날** 2016년 12월 20일 **퍼낸이** 이정주 편집위원 김기태 김대훈 김현대 김활신 박성순 최혁진
 편집위원장 박중현 **퍼낸곳** (재)ICOOP협동조합연구소 **주소** 서울시 구로구 연동로 320 성공회대학교 일만관 2B 204호
전화 02-2060-1373/1379 **이메일** icoop-institute@hanmail.net **편집간사** 신효진 **디자인편집** 잇다 **인쇄** 아람P&B
ISSN 2093-9876 **등록번호** 구로, 바00038 **등록일** 2016년 4월 5일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도서 반품 및 유통 관련 문의** 도서출판 **알마**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연남로 1길 8 | 전화 · 02-324-3800

독자의 소리

이 예 나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사회적경제
전문인력양성사업단
전담교원

『생협평론』을 창간호부터 차례대로 꽃으면 무지개색이 된다는 걸 아시나요? 2010년 빨간 표지의 창간호를 시작으로 어느새 빨주노초파남보 일곱 가지 색이 다 채워져가네요. 협동조합을 공부하는 저에게 『생협평론』은 언제나 유용한 자료참고이자 공부거리를 던져주는 보물창고의 역할을 해줍니다. 지면을 빌어 『생협평론』 발간에 힘써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4호에서도 최근 성장하기 시작한 협동조합 프랜차이즈에 관한 알찬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모델과 소셜프랜차이즈의 특징 및 사례들로 이어지는 설명은 협동조합과 프랜차이즈의 결합이 논의되고 있는 맥락을 짚으며 독자의 이해를 높여주었습니다. 또 해피브릿지의 생생한 컨설팅 사례에 더하여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흐름을 개괄하고 이를 협동조합에 적용해보는 좌담의 내용까지, 페이지를 넘길수록 범위가 좁혀지면서 깊이 있게 들어가는 내용 구성이 점점 더 몰입도를 높여주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사회적기업진흥원 등 관련 정부기관들의 지원 내용도 알 수 있어 실제 협동조합 프랜차이즈를 생각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유익한 정보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언급된 것처럼, 한국에서 프랜차이즈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게 나타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24호를 읽으며, 협동조합과 프랜차이즈의 만남은 이러한 구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창의력의 발현, 시도, 실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개개인이 모여 협동조합을 만들듯,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도 개별 사업체들이 모여 본부를 형성하는 ‘아래로부터의 프랜차이즈’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부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이 본부를 만들고,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거래관계를 형성한다는 생각은 '갑을 관계'라는 부정적 이미지의 기저에 깔린 착취적 구조를 바꾸어보려는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프랜차이즈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신뢰와 연대의 형성은 하루아침에 이뤄지기 어렵고, 협동조합의 가치와 운영 방식이 접목된 고유한 거버넌스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규모화를 통한 비용 절감은 물리적인 자본이나 운영비의 절감에서 올 수도 있지만, 이러한 무형의 관계맺음이 시스템과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네트워크를 통한 규모화'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소셜' 프랜차이즈이겠지요.

기획 연재에서 김현하 파트장님이 언급한 '시지프스의 신화' 이야기에 서처럼, 한국에서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소셜프랜차이즈의 성공과 확산은 어쩌면 요원하게 느껴지는, 끊임없이 굴러 내리는 바위를 밀어 올리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협동조합을 통해 당연한 듯 전제하고 있던 시스템들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변화의 가능성을 제기해볼 수 있다면, 그것이 시지프스의 바위가 아니라 '롤링다이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협동조합과 프랜차이즈의 만남이 우리나라의 많은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들에게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잡이

박종현

편집위원장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그동안 생협은 안전한 먹을거리, 도농 상생, 주부들의 행복한 여가와 같은 당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도 영리기업도 해결해주지 못했던 문제를 협동의 힘을 통해 스스로 해결했던 것이다. 생협의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청년의 일자리 문제, 비정규직의 문제, 자영업의 문제 또한 협동조합의 문화와 기풍으로 해결해보려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협동조합 사람들의 주목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지만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영역이 있다. 바로 노인 문제이다. 한참 일할 수 있는데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떨려나 경제력을 상실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은퇴자들이 도처를 떠돌고 있으며, 늙고 쇠약해져 삶을 스스로 돌볼 수 없게 된 채 여생을 힘겹게 보내는 노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노인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고민거리가 아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든 나라가 직면한 문제이다. 고령인구가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고 경제활동에 배제됨으로써 사회복지 지출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가는 반면, 이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인류의 축복이어야 할 장수가 개인적 불행과 사회적 재앙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서, 고용관행·연금·사회복지 등 그동안 사회를 지탱해왔던 시스템 자체에도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규칙을 마련하는 것은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유독 심한 나라이기에 다른 나라들보다 노인 문제의 심각성이 훨씬 크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 중 절반은 빈곤 상황에 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빈곤률인 12.4%와 비교할 때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다. 경제력과 자존감을 잃고 분노를 삶의 동력으로 연소시키는 다수의 노인들이 외롭게 늙어가는 한편에는, 부와 권력을 움켜쥔 낡은 가치관의 극소수 노인들이 나라를 퇴행시키는 기묘한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노인 세대의 이러한 양극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끼치는 폐해

는 너무도 크며, 노후 책임을 고스란히 개인에게만 미루는 기존의 방식 또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생협평론』은 이번 호의 특집을 ‘협동조합과 함께 하는 행복한 노후’로 선택했다. 고령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정공법은 무엇이고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가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한 해외의 협동조합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왔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생협이 이 과제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 등이 우리가 품었던 질문들이었다.

이번 특집의 총론은 정건화 한신대학교 교수가 맡아주었다. 이 글은 고령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며 인류사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띠는지, 선진국들의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사회혁신의 구상을 제시하고 있는지 등을 상세히 검토한 뒤에, ‘새로운 노년의 상^儻’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경제를 주요한 해법으로 제안하고 있다. 고령 세대가 돌봄과 수혜의 일방적인 대상에서 벗어나 지역의 사회적경제 영역을 기반으로 자신의 경험과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년을 다채롭고 의미 있게 만들자는 제안에 우리 사회가 귀 기울이기를 기대해본다.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이향숙 연구원은 생협을 통해 초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처했던 일본의 경험을 소상히 들려준다. 일본에서는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의료·돌봄·예방·주거·생활지원 서비스를 일체형으로 제공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 문제에 대해 오래전부터 헌신했던 단체들의 이야기도 준비해보았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박봉희 교육연구센터장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믿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제공과 더불어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고, 어떤 비전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진솔하게 들려준다. 이 글에는 의료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요양(병)원들의 경우 노인의 존엄과 행복을 어떻게 지켜주는지도 생

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우리의 의료협동조합들이 삶의 기쁨과 애환을 나누는 건강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는 <서평>에 소개된 『참 좋은 의료공동체를 소개합니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민동락(與民同樂)공동체 강위원 대표 살림꾼은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서 노인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새로운 실천을 소개하고 있다. 여민동락은 지역 주민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복지 너머의 복지’를 꿈꾸며, 노인복지시설·마을기업·협동조합을 꾸려나가는 소박하면서도 진취적인 공동체이다. 노인들의 마지막 삶에 동행하며 우애의 역사를 함께 써나가는 이 놀라운 실험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그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늘날 새로운 방식의 공동체가 어떻게 가능할지에 관한 풍부한 생각거리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생협은 안전한 먹을거리 이외에도 조합원들의 다양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사업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중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노인돌봄 영역이다. 한살림서를 돌봄기획팀 장지연 차장은 생협들 중에서도 노인돌봄으로의 사업적 확장에 가장 적극적인 한살림의 경험을 소개한다. 조합원의 생애주기에 따라 돌봄의 영역과 범위를 확장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에서 돌봄의 관계망을 만들고자 하는 한살림의 시도가 생협의 새로운 돌봄 모델로 발전하기를 기대해본다. <좌담>에서는 ‘조합원의 눈으로 노후를 꿈꿔보다’는 주제로 생협이나 의료사협 등의 관계지들로부터 협동조합 활동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 협동조합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데 생협으로부터 어떠한 역할을 기대하는지 등을 들어보았다. 진솔하고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협동조합 운동에 오랜 기간 참여하면서 축적한 깊은 지식과 지혜를 나눠준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번 호의 <이슈>는 협동조합의 공익성 문제를 다루었다. 현행법에서는 협동조합을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영리법인, 후자는 비영리법인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분류는 많은 협동조합을 공익성을 무시한 채 영리 추구의 세계로 내몰 위험이 크다. 변철환 한국기업노동복지법학회 이사와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의 글을 통해 영리성과 공익성의 의미를 법률적으로 검토해보고, 여러 협동조합들의 사례 속에서 협동조합이 공익을 실제로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이유도 이 때문이다. <돌발논문>에서는 협동조합 회계에 관한 글을 실었다. 회계란 기업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협동조합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다. 그런데 현행 회계기준은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협동조합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문제가 많다. 협동조합 회계기준의 필요성과 신뢰성 확보 방안에 관한 이한우 세무사의 글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연재 중인 ‘협동조합을 가다’에서는 김푸르메 S. Economy 편집장이 협동조합 도시로 잘 알려진 몬트리올의 ‘당프랑트 예술인협동조합’을 다녀왔다. 또다른 기획연재물인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길라잡이’에서는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의 김현하 파트장이 협동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자 민주적인 운영 원리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총회가 흥미진진한 토론과 즐거운 축제의 장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을 들려준다. 이번 호의 서평에서는 공동체의 문제를 다룬 대표적인 두 권의 책을 소개한다. 사회적 자본으로 잘 알려진 로버트 퍼트넘의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 몇 십 년 동안 진행 중인 공동체의 파괴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면, 임종한 교수의 『참 좋은 의료공동체를 소개합니다』는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힘겹고도 의미있는 경험을 들려준다. 서평을 맡아준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의 정설경 캠페인팀장,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의 이태수 교수께 감사드린다. 영국·싱가포르·일본에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봄 협동조합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해외소식>, 세대간 연대와 협동을 통해 노인문제를 해결해가는 모습을 한 칸으로 그려낸 <만평>

에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오만과 무책임과 무능이 뒤섞인 시대착오적인 정권을 심판하는 새 역사를 쓰고 있다. 광장에 나가 촛불을 높이 치켜든 이들이 바라는 바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각자가 자신의 몫을 함께 감당하는 나라, 곧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자는 데 있을 것이다. 민주공화국을 굳건히 떠받치는 뿌리는 수많은 풀뿌리 공동체들이다.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면서 '민주'를 배우고 '공화'를 실천하는 생협과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가 바로 풀뿌리 공동체들이다. 이 공동체 속에 우리 사회의 가장 연장자이자 가장 약자인 노인들도 참여할 공간이 마련된다면, 공동체의 뿌리는 한층 깊이 내릴 것이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모두가 각자의 자원을 가지고 능력껏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곧 다양한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가 수많은 꽃이 되어 조화를 이루는 '백화제방' 百花齊放의 세상이 바로 그것이다.

특
집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

적자생존·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면서 사회 안전망은 부실해졌고 노후 책임은 고스란히 개인의 숙제가 됐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은퇴, 노후 문제에 대한 공감대는 상당하다. 고령화의 문제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음에도 한국협동조합에서 그 무게에 비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특집을 통해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 정도와 협동조합이 고령화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이유, 협동조합이 시니어들과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고령화 문제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해결한 해외 사례와 그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한국의 생협이나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앞으로 어떤 새로운 사업 구상들을 펼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생협 평론

우리 사회 고령화 문제와 그 해법으로서의 사회적경제

_____ 정건화

고령화에 대응하는 일본 생협의 복지사업

_____ 이향숙

의료협동조합이 만들어가는 '노인이 행복한 세상'

_____ 박봉희

여민동락공동체의 일상

_____ 강위원

고령화의 도전과 한살림의 대응

_____ 장지연

좌담

조합원의 눈으로 노후를 꿈꿔보다

_____ 김미선, 김종희, 우미숙, 추경숙, 김형미

정건화

한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

우리 사회 고령화 문제와 그 해법으로서의 사회적경제

“ 고령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은 노년의 의미와 이미지, 고령 관련 사회제도와 정책 등 유·무형의 우리 사회 인프라를 바꾸는 거대한 사회전환 프로젝트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이 프로젝트는 비단 노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다. 사회 구성원의 주체이자 대상으로서 새로운 노년의 상을 형성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의 대안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

1. 우리 사회의 고령화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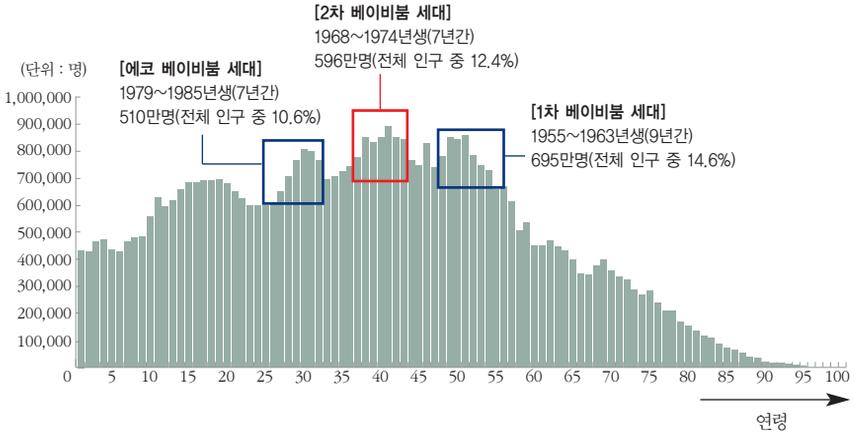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3.1%로 ‘고령화 사회 Aging Society’ 단계를 지나 ‘고령사회 Aged Society’에 진입했고 2060년이 되면 40%를 넘어 전 세계에서 시니어 인구 비율이 1~2위를 다투는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¹

고령(화)사회란 말 그대로 고령 인구가 사회의 주된 구성원이 되는 사회로서 몇 천 년의 역사에서 인류가 처음으로 맞은 사회이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으며 대응해온 서구의 경험에서 보면 지금까지 작동해온 많은 제도와 시스템들, 예컨대 노동시장, 연금, 의료보험, 도시계획 등은 고령화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 결과 이미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장수 패러독스’ 혹은 ‘장수 딜레마’라 불리는 현상들이 감지되고 있다. 이는 축복이어야 할 ‘호모 헉드레드 Homo Hundred’ 시대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행과 재앙의 상황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 가운데 퇴직 후 생계 문제를 피부로 실감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가 본격화되었다. 우리나라 1,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전체 인구의 1/3 수준인 1,650만 명에 달하는데 이미 50대에 들어선 1차 베이비붐 세대는 물론 2차 베이비붐 세대에게도 대안 없는 조기퇴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그리고 3차 베이비붐 세대까지 앞으로 30년간 퇴직의 쓰나미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1〉).

1 통계청(2015. 7).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그림1〉 연령대별 인구 분포 및 베이비붐 세대 현황



출처 : 서울50플러스재단(2016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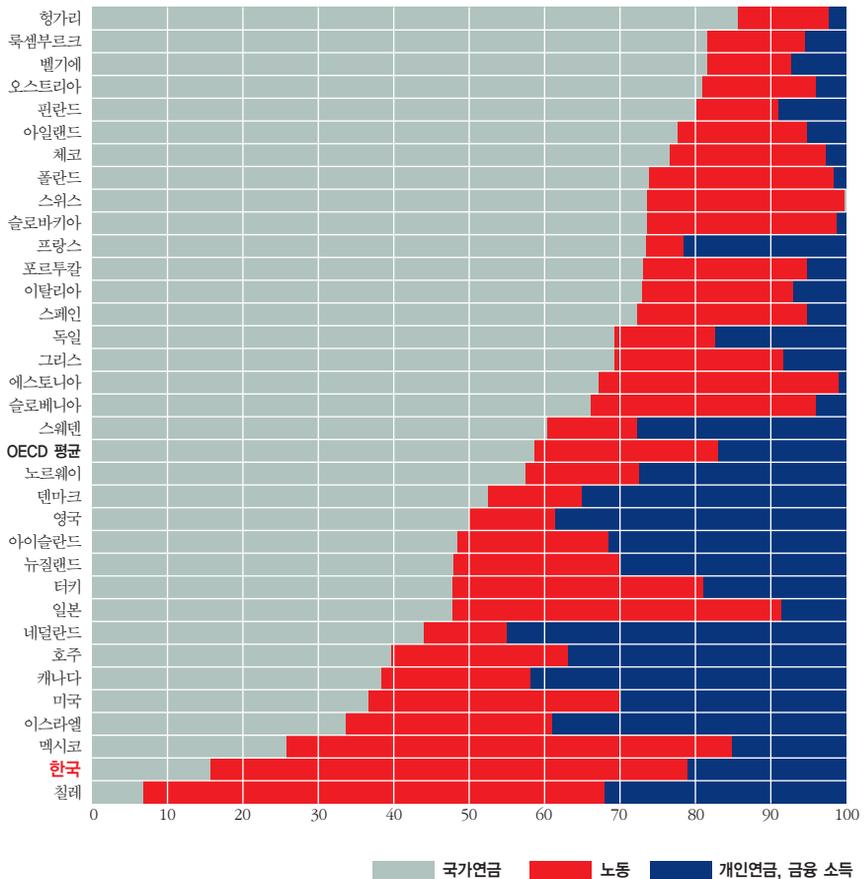
2. 부족한 고령화 준비

우리 사회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거대한 인구학적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미국의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나 국제 컨설팅기업 맥킨지는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인구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조언한 바 있다.²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고 경제활동에서 배제됨으로써 부득이 대규모 복지 지출의 수혜자로 이행하게 되는 인구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함으로써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데 오늘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의 심각성이 있다.

² McKinsey Global Institute(2013). 이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경로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그 이유로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 변동 상황, 즉 턱없이 부족한 인구 증가와 유례없는 고령화를 들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시스템은 다층적 구조로 되어 있지만 기초적인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보장제도가 아주 미흡하다. 그래서 고령세대의 상당수가 스스로의 경제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 비교 자료에서도 잘 확인된다. OECD 국가 중 한국은 고령세대 소득 구성에서 연금소득의 구성비가 가장 낮고 근로소득의 구성비가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그림2〉).

〈그림2〉 65세 이상 고령층 소득 구성(2000년대 말 기준)



자료 : OECD, "한눈에 보는 연금"

출처 : OECD(2013). 한겨레(2015. 5. 12.)에서 재인용.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690818.html>

이처럼 고령세대가 되더라도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비중이 높지만 고령세대의 노동시장은 굳게 닫혀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령자 고용정책이 시작된 것은 2005년 무렵이다. 이후 정부는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07~2011)’(2006년),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50+세대’ 일자리 대책’(2009년) 등을 수립했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했으며(2005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구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2008년)도 있었다(국회입법조사처, 2010).

그러나 정부가 시행한 다양한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의 성과는 미미한데 그 이유는 분명하다. 거의 모든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법적 강제력이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권고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사업장 근로자 수의 3% 이상을 55세 이상 고령자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용 의무는 노력 의무이고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없다. 노동시장에서의 정년 연령은 55~57세로서 선진국의 평균적인 정년 연령인 60~65세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우리의 평균 수명이나 노령연금 지급 시기와의 크게 괴리가 있다. 게다가 비자발적인 조기 정년퇴직이 만연해 있고 퇴직 후 근무연장이나 재고용의 길은 거의 막혀 있다. 그 결과 조기은퇴 후의 장·노년층은 기초연금 외에는 별다른 소득원이 없고 그나마 주어지는 많은 시니어 일자리는 주로 서비스 분야에서의 저임금 비정규직이다.³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사회의 어두운 모습을 노정하기 시작했다. 심각한 노인 파산과 빈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높은 노인 자살률 1위⁴는 현재 우리 사회의 맨얼굴이다.

3 2014년 자료를 보면 재취업한 장년층의 단지 27.7%(55만 3천 명)만이 상용직 일자리를 얻었으며 나머지 72.7%는 임시직이나 일용직, 자영업 일자리였다(고용노동부, 2014. 9. 22. 장년고용종합대책)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평균 빈곤율은 49.6%로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절반, 즉 노인 2명 중에 1명이 빈곤 상황에 있다.⁵ 또 파산선고자 네 명 중 한 명이 60대 이상의 생계형 파산이라는 통계 역시 한국 사회의 고령화와 노인빈곤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이다.⁶ 가족이 해체되고 단독가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홀로 사는 노인의 빈곤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65세 이상 1인가구 인구는 전국에 144만 3천 명을 헤아리는데 ‘노인 단독가구’ 즉 독거노인 가구의 월 소득은 평균 97만 원에 불과하고 그중 65%는 가족이나 지인이 준 용돈 등 ‘이전소득’이다(2015년 2분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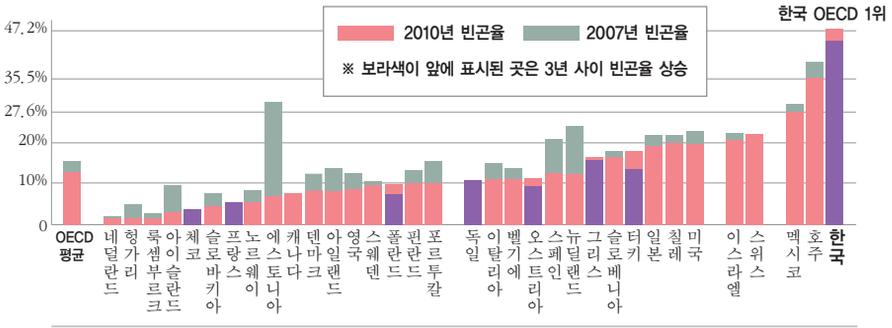
국제 비교 통계를 보면 한국의 노인빈곤 상황의 심각성이 극명하게 확인된다. 한국 노인 빈곤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2.4%)의 4배로 노인 빈곤율에 있어 압도적으로 높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빈곤율 또한 높아지다가 65세 이상부터는 OECD 평균의 4배 수준에 이를 정도로 노인 빈곤율이 높은 상황을 보인다. 더욱이 한국 사회의 노인 빈곤율은 2006년 43.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OECD 33개국 가운데 20개 국가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과도 대조적이다(〈그림3〉). 우리와 달리 전체 33개국 중 20여 개 나라에서는 전체 인구 빈곤율이 노인 빈곤율보다 높아서 고령층의 빈곤이 결코 당연한 것은 아니고 우리의 경우 노인 빈곤 현상이 두드러진 것임을 알 수 있다.

4 우리 사회의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55.5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의 2배 수준이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살률도 높아진다. WHO(세계보건기구), 세계 172개국 중 자살률 통계 신뢰성이 높은 60개국 대상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자살률(70세 이상)은 나머지 59개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높고 OECD 평균 자살률(연령표준화 자살률 12.0명)보다 무려 5배이다. 자살의 원인이 모두 경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부터 빈곤과 자살률이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빈곤과 외로움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많은 노년층이 경제적으로 곤란으로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고 있음을 의미한다(WHO, 2015).

5 통계청(2015). 가계동향조사 분석.

6 연합뉴스(2016. 7. 9). 「〈인구절벽〉③ 고달픈 노인… 미래 우리 모두의 모습?」

〈그림3〉 65세 이상 중 빈곤층 비율



자료 : OECD, "한눈에 보는 연금"(2013)

출처 : WHO(2014), 한겨레(2015. 5. 12.)에서 재인용.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690818.html>)

3.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정책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시장과 국가 영역에서만 해법과 해결의 동력을 기대하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과 문제 영역의 광범위함에 비추어볼 때 부적절하다.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현실은 국가나 시장의 실패가 일상화된 데 따른 것이다.

물론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정책 방안을 고민할 일차적인 책임과 역할은 국가에 있다. 정부는 법과 제도, 행정 인력과 예산을 통해 필요한 물적, 비물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역할은 한계가 존재하며 제도의 작동 원리를 바꾸는 일은 이해 관계를 지닌 행위자들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 행위자라 함은 당사자 특히 고령화의 문턱을 넘고 있는 장년층을 포함해서 고령화를 바라보는 사회 구성원 전부에 해당한다.

새로운 고령사회정책의 핵심은 노년층이 단지 돌봄의 대상이 되는 좁은 시야를 넘어서는 데 있다. 아울러 사회 전반에서 나이들의 긍정성에 대한 인식, 새로운 노년상의 정립 등이 요청된다. 고령세대 또한 단지 돌봄과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그들이 보유한 경험과 시간이 곧 사회의 자산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노인이 사회의 다수 구성원이 되는 세상에서 그들을 단지 보살핌care의 대상으로만 본다면, 그 인력과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음이 너무나 자명하다. 새로운 접근이 없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오히려 한정된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세대 갈등이 심화될 것임도 분명하고 혹자를 이를 ‘세대 간 전쟁’이라 과격하게 표현하기도 한다(정건화, 2016b).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부르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는 고령화에 따르는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유급활동paid work 영역과 무급활동unpaid work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Nikolova M., 2016).

유급 경제활동을 위한 정책은 퇴직이나 은퇴 연령을 늦추어 더 오래 경제활동을 하도록 제도 환경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고령사회에서 고령세대가 가능한 한 늦게까지 스스로의 생활을 책임지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이들을 부양하기 위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고령세대의 경제활동 지속은 비단 물질적 생활뿐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은 물론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세대 유급활동의 지속을 위한 방편인 단계적 은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년제도, 임금피크제, 연공형 노동시장을 직능급으로 전환하는 등 정부의 정책, 노사 관계,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관행 등에서 발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것이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한편 무급활동은 자원봉사, 다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취미와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등을 지칭하는데 이 역시 건강한 노년의 삶에 많은 도움을 준다. 무급활동이라는 표현에서 아무런 보상이 따르지 않는 활동이

란 느낌을 주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무급활동은 사회적 연대의 수준을 높여주고 참여자들로 하여금 삶의 만족도를 높여준다.⁷ 따라서 고령세대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에 기여하여 복지비용을 감축시키는 등 직·간접적인 사회적 편익을 낳는다. 사실 급속히 증가하는 고령세대에 대한 모든 지원을 시장을 매개로 한 유료 서비스만으로 충당하는 것은 지속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는 모든 활동이 유급노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시장 편향적 사고의 산물이기도 하다.

이처럼 고령세대의 은퇴 시기를 늦추거나 단계적 은퇴(gradual/hased-in retirement)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이들이 수동적인 돌봄의 대상으로만 머물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시간과 경험을 활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돌봄과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것은 고령화 문제를 대응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므로 새로운 정책의 핵심 원리로서 주체이자 대상이 되는 양면성을 고려하면서 고령세대의 유급활동과 무급활동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표1〉 참조). 사회적경제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들 4가지 영역에서 모두 작동할 수 있으며 특히 음영이 짙은 영역에서 그 역할이 클 것이다.

〈표1〉 고령 문제와 관련한 세부 정책과제 영역

	주체	대상
유급	단계적 은퇴(phased retirement) 파트타임 일자리 새로운 창업(앙코르 커리어)	돌봄(care-giving) 공적 노후보장
무급	사회공헌 자원봉사(volunteer)	가족, 친지에 의한 부양, 지역사회(communitiy)의 지원

7 이때 매우 중요한 것은 시니어의 활동이 존엄과 자율성을 갖도록 배려하는 것이며 무의미한 단순 반복 작업에 매여두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시니어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적합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잘 구상되고 설계되어야 하며 특히 선택의 자유와 자율성은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Nikolova M.,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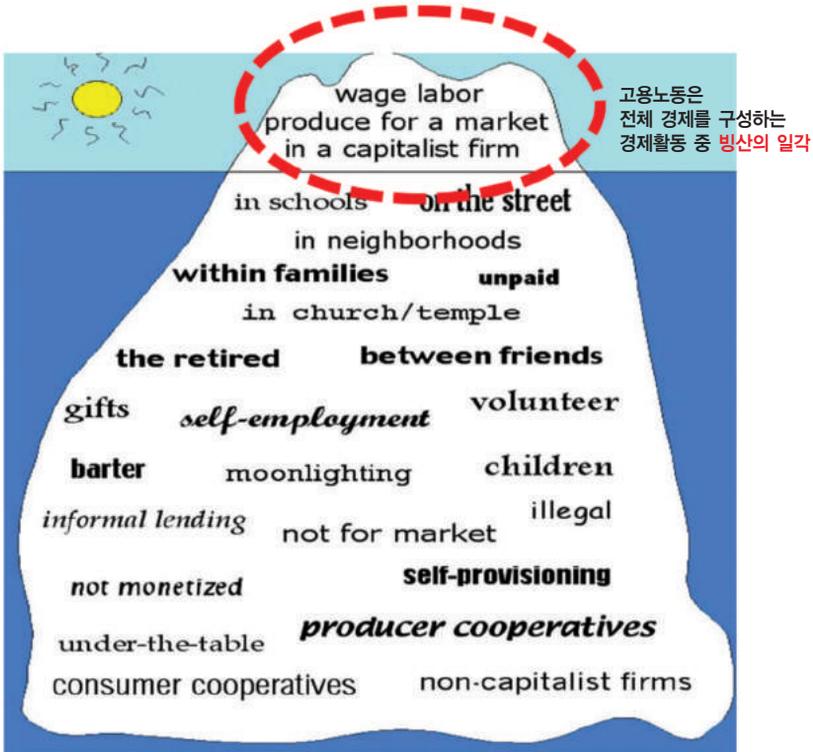
4. 고용 문제의 재인식 : 사회적경제의 시대

우리 사회에는 40~50대 중년의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비자발적 조기퇴직을 경험하고 있는 한편, 청년들은 풀타임 고용 관계의 초입에서 문턱을 넘지 못하는 심각한 실업의 고통을 겪고 있다. 고용 위기의 어두운 그림자가 온 사회를 뒤덮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노동시장에서의 발본적 변화가 시급하지만 ‘고용 없는 성장’, ‘고용 위기’의 어두운 그림자는 비단 우리 사회뿐 아니라 현대사회를 뒤덮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심화되는 고용 위기는 비단 우리 사회에서만 아니라 글로벌 자본주의사회에서 어디서나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OECD 국가 소속 인구 중 거의 1/3의 사람들이 실업 상태에 있고, 고용 문제가 초래하는 사회 불평등의 심화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하며 집권한 많은 정부들이 있었으나 성과는 미미하다(Uluorta, 2009).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른 이른바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결과라 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감소는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고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계기로도 작용한다(정건화, 2016a). 그러므로 정규직 노동시장에서의 고령세대를 위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이 글에서는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에 주목하여 고령세대의 유급활동과 무급활동을 아우르고 공공부문(국가)과 민간부문(시장)을 넘나드는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리는 흔히 경제활동을 ‘보수를 받고 노동자들이 시장거래를 위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으로 이해하지만 고용계약에 기초한 노동은 전체 경제활동이라는 빙산에서 보면 수면 위로 보이는 아주 작은 조각, 즉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나머지 대부분의 경제활동은 수면 아래에 있는 거대한 빙산 자체를 구성하고 있다(Cameron, J.(2008)(〈그림4〉 참조).

〈그림4〉 경제활동 전체와 고용노동의 비교



자료 : Community Economies Collective, 2001, Cameron, J.(2008)

출처 : 정건화(2012) 재인용.

현실 사회에서는 이처럼 시장 고용 관계를 매개로 하지 않고 수행되는 경제활동 영역이 매우 크고 이들 영역은 사회의 유지와 재생산을 위해서 필수적인 많은 활동을 포함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활동에 자신의 노동력, 즉 시간과 노력을 끊임없이 투입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민의 25%가 연간 79억 시간, 1,840억 달러 가치의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Nikolova Milena, 2016). 호주를 포함한 여러 서구 나라들에서 비시장적 고용을 통한 경제활동의 규모를 측정하면 거의 GDP에 육박하는 규모가

된다(Cameron, J. 2008). 더욱이 정규직 풀타임^{formal full-time} 고용은 점점 낡은 패러다임이 되고, 현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부분적인 노동^{part-time}이 지배적으로 되는 패러다임 변화가 진행 중이다. 우리가 오늘날 목도하고 있는 이른바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만성적인 고용 위기의 해법으로 시장 고용에서 배제된 사회구성원들을 사회 유지에 필요한 활동^{work}, 즉 사회적 노동, 공공선^{common good}에 기여하는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금전적, 비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사회적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Uluorta, H, 2009). 이미 유럽의 복지국가들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과학기술 및 생산 시스템의 변화,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고용구조, 노동시장의 변화가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 영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용 문제에 관심이 큰 ILO^{세계노동기구} 또한 사회적경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ILO는 경제적 활력과 함께 지역 발전과 사회적 연대라는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경제를 '생태적, 사회적, 공동체적 목표가 하나로 수렴되는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 모델'로 설정하고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ILO, 2011). UN 역시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선정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과 제도 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쏟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물론 사회적경제의 일자리가 모두 파트타임 일자리인 것은 아니지만 기존 정규직 풀타임 일자리에 비해서 급여나 근무환경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고령세대의 신체적 조건이나 노동시장 시장조건 등을 고려하면, 근로시간을 줄여가는 단계적 은퇴의 과정에서 이런 유형의 일자리가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또 근무시간을 줄여 더 많은 여유 시간을 즐길 수 있으며 일로부터의 부담과 책임,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 수도 있다. 금전적 수입은 적더라도 자신이 지닌 경험과 시간을 활용하고 지역사회나 이웃에 도움을 주는 지역 사회 일을 함으로써 얻는 보람과 만족이라는 비금전

적 보상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니기에 사회적경제는 단계적 은퇴, ‘앙코르 커리어’⁸라 불리는 ‘인생의 제3의 단계’에서 의미 있는 삶을 모색하는 고령세대들을 위한 영역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 시행된 설문조사(2011년)에 따르면 900만 명의 44~70세 사람들은 앙코르 커리어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3,100만 명은 이러한 활동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이들이 이후 활동하고자 하는 영역은 교육(30%), 보건의료(25%), 공공부문(25%), 비영리조직(11%), 영리조직(5%), 기타(3%) 순이었다. 조사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앙코르 커리어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룹과 무관심한 그룹 사이에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능력이나 학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앙코르 커리어를 고민하는 응답자들 다수가 미국 금융위기 이후의 불황을 겪어 퇴직 후 경제생활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중산층이라는 사실이다. 이들의 연봉은 대부분 5만 5천~6만 불 사이였으며 재산 15만 불 이하 50%, 5만 불 이하 30%의 사람들이었다(Civic Ventures, 2011).

대표적인 무급활동으로서 자원봉사가 실질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국제 통계(표2)를 보면, OECD 국가 전체로는 GDP의 1.9%를 차지한다. 특히 미국, 독일,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3% 이상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비중은 0.5%로 비교 대상국 중 두 번째로 낮은 나라에 속한다. 우리 사회는 기부, 사회환원, 자원봉사, 주민참여 등 시민 사회의 역량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들이 높아져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 미국에서처럼 고령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베이비부머들이 그 주체가 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⁹ 왜냐하면 자원봉사와 시니어 건강 간의 정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이며 고령화를 맞아 시

8 '퇴직 후의 새로운 삶의 전환과 새로운 활동'을 지칭한다. 정건화(2016c).

9 바로 이러한 목적에서 서울시는 2016년 새로운 노년의 삶, 시니어 새로운 일자리와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서울50플러스재단을 설립하였다.

니어들의 활발한 나눔과 베품의 사회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와 기여가 윈윈(win-win)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표2〉 OECD 국가들에서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 추정(2013년)		
	Estimates of the economic value of volunteering	
	Amount (2013 value, US\$ billion, PPPs)	% of national GDP (2013 value, US\$, PPPs)
호주	49.4	4.7
오스트리아	4.5	1.2
벨기에	5.1	1.1
캐나다	36.3	2.4
덴마크	6.7	2.7
에스토니아	0.5	1.4
핀란드	2.9	1.3
프랑스	19.2	0.8
독일	117.6	3.3
헝가리	0.5	0.2
아일랜드	3.5	1.7
이태리	19.6	0.9
일본	33.2	0.7
한국	7.8	0.5
멕시코	19.7	1.0
네덜란드	7.7	1.0
뉴질랜드	6.4	4.1
노르웨이	5.9	1.8
폴란드	25.3	2.8
슬로베니아	4.3	1.5
스페인	1.2	2.0
스웨덴	22.1	1.4
영국	60.2	2.5
미국	621.7	3.7
OECD 25개국	1,093	1.9

출처 : OECD(2015). 'OECD Better Life Initiative, How's Life'

고령세대의 시민사회 참여는 ‘새로운 노년의 상’을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생물학적 의미’에서 노년은 탄생 이후 시간의 흐름 속에 죽음을 향해 다가서는 상황을 말하지만 ‘사회적 의미’로서의 ‘노년’은 새롭게 탄생될 수 있다. 노년의 삶으로 이행해가는 50~60대 초반의 사람들에게 스스로 노년의 정체성에 대한 학습과 성찰, 숙고의 기회와 시간이 주어져야 하고 그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자신의 노년의 삶의 다양한 선택 경로에 대한 모색과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정건화, 2016b).

이 활동은 대규모로 노년으로 이행해가는 베이비붐 세대의 몫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에서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는 데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을 맞게 된 인구학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은퇴와 고령화를 맞게 될 1, 2차 베이비붐 세대는 1,500만 명에 육박한다.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와 고령화를 맞아 그것이 단순히 돌봄이 대상이 되는 노년으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장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과 사회를 위해 만족스럽고 긍정적인 삶을 전개하는 기회가 열리도록 지원하는 시민사회 내 비영리 조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서울시가 설립한 ‘서울 50플러스재단’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시니어의 새로운 활동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특히 시니어의 생계형 일자리와 자원봉사 및 사회공헌을 두 축으로 하되 하나의 스펙트럼 상에서 유급활동과 무급활동, 풀타임과 파트타임을 넘나드는 시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필요한 연구, 교육,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활동을 서울시 내 광역 및 기초 자치구 차원에서 펼치겠다는 구상이다(서울50플러스재단, 2016).

〈그림5〉 서울50플러스재단 장-노년세대 일자리 사업 구상

방향성 1 : 공헌형·혼합형 중심 앙코르 일자리* 모델 제시

	구분	성격	지속성	활동시간	활동형태 예시
교육 및 문화 조성	자원봉사	· 공익 목적, 무급 활동이 기본	다양함	대부분 시간제	· 노력봉사, 프로보노 · 이사회 활동
50+ 세대	공헌형 일자리	· 공익 목적이며, 실비 수준 활동비(stipend) 지원 · 새로운 활동 모델 발굴, 일자리 인턴십 성격	보통 1년 이내	대부분 시간제	· 서울시 보람일자리 · 고용부 사회공헌 일자리
	혼합형 일자리	· 공익 추구하고 수입(income)을 함께 만족하는 일자리 · 기존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전직 및 창직 형태가 다수	보통 장기	시간제 또는 풀타임	· 소셜벤처 전직/창업 · 비영리, 마을 로컬푸드 매니저
기존 일자리 기관과의 Seamless 연계	생계형 일자리	· 수입/생계가 주목적인 일자리	보통 장기	대부분 풀타임	· 생계형 자영업 · 수익을 위한 벤처

* 앙코르 일자리 : 인생후반 지속적 수입 뿐만 아니라, 개인적 의미와 성취, 사회적 영향과 가치를 만드는 일자리/일자리

출처 : 서울50플러스재단(2016a).

5. 민관 협력, 지역사회 기반 사회적경제

서구에서는 고령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공공부문과 제3섹터 간 협력을 통해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공부문과 연계한 비영리 제3섹터나 사회적경제에서 가사 지원, 요양시설, 주거, 돌봄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민관 협력 모델들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고령세대에 대한 돌봄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기존 공공에 산으로 시행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평가가 좋아지는 성과가 나타

났다. 또 애드보커시^{advocacy} 그룹의 관심과 개입을 통해 취약한 고령층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여론 환기와 개선도 이루어졌다(Harper Sarah and Kate Hamblin, 2016).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 주목되는 민관 협력 모델들은 자연스럽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게 된다. 고령화에 대응하는 일자리든 돌봄 서비스이든 모두 지역(커뮤니티)을 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것이 당사자들에게나 서비스 제공자들 모두에게 더 높은 만족을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상생활의 영위에서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초고령 세대에게 여생을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공간에 머물면서 보낼 수 있는가 여부는 이들의 삶의 질에 결정적인 변수이다. 2015년 시행된 미국 60세 이상 시니어 설문조사 결과(미국 고령화 서베이, 2015)를 보면, 응답자의 58%가 최근 20년 이상 현재의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고, 또 75%가 현재의 거주지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80세 이상 초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한편 핵가족화, 가족해체, 단독가구의 증대에 따라 이들에 대한 돌봄은 점점 유료 서비스로 전환되고 시설 수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고령세대에 대한 돌봄이 지역경제, 지역 고용과 연결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사회적경제가 고령화에 대한 대응에서 특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사회적경제의 특성에 있다.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는 당사자 참여, 연대와 협력 등의 특성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돌봄, 보건의료, 교육, 문화, 주택, 환경 등의 영역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 영역들은 이윤 중심의 기업 조직이나 기존 행정을 통한 공공정책들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고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에 기반한 대안적 접근이 필요한 영역으로 사회적경제를 통해 선순환적 해결이 가능한 대표적 영역이다. 지역 쇠퇴와 빈곤, 실업과 저고용이 만성화된 사회에서 사회문제 해결에 한계를 드러낸 국가와 시장을 넘어서는 창의적인 해법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해법들은 다양한 지역의 풀

뿌리 사회적경제 단위에서 그 단초가 마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사회적경제는 종종 사회혁신의 담당자 역할도 한다. 사회적경제는 보통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소규모 경제 조직으로 시작되는 경향이 있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일원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사회 발전에 직접적인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년의 특성과 선호를 감안해서 지역사회(커뮤니티)와 이웃(네이버후드)을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하는 사회적경제가 작동하고 이를 통해 지역 거주 시니어에 대한 서비스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하는 경우 의료비 외 많은 사회적 비용의 감소도 가능하게 된다. 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도 다양한 지역사회 모임을 통해 지역 고령세대들이 주민들과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가사 지원이나 재가 및 간병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공급자들이 노동자 협동조합을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시니어들은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시니어로 특화된 소비자협동조합은 고령세대의 식생활이나 주거생활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시니어 주거 협동조합은 아파트나 타운홈 커뮤니티에서의 안전하고 적절한 주거 여건을 제공한다.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격리의 위험에 노출되는 단독주택 소유 고령자들을 위한 소규모 주택들을 네트워킹한 소규모 주택 협동조합도 고령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세대를 넘나들며 이웃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가능케 했다(Harper Sarah and Kate Hamblin, 2016 : 437).¹⁰ 우리나라에서도 빈곤층 고령 주민들이 모여 사는 서울시 성북구 소재 성곽마을의 마을기업 동네목수나 그 외 많은 지

¹⁰ 그 외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클레몬트의 Pilgrim Place,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Beacon Hill Villag, 그 외 미국 각지의 Housing Co-op, Ageing in Place Movement 등 NPO 형태로 운영되는 지역기반 주거 공동체 프로그램의 사례들이 있다.

역사회 기반 돌봄 사회적협동조합들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런 성과들은 공공 서비스의 시장화가 해법이 아님을 말해준다. 대안은 정부의 공공정책과 제3섹터 간 협력,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경제의 확장에서 찾아진다. 그리고 협력의 작동 원리인 민관 파트너십 혹은 민관 거버넌스의 경험은 비단 고령화에 대해서 뿐 아니라 여타의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에서도 훌륭한 성과들로 이어질 수 있다.

6. 맺음말

지금까지 한국 사회 고령화의 실태와 새로운 고령 정책의 필요성, 그리고 고령화의 대안적 해법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의의와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 제시한 해법의 핵심은 사실 평범한 것이다. 사회적경제를 매개로 고령세대가 주체로서 다양한 유급활동과 무급활동의 경계를 넘나들며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또 지역사회의 유·무형의 자원들로부터 도움과 배려를 받는 대상이 되는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고령세대는 주거 이동성이 낮아 지역사회 소속감이 높고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빈도도 높은 편이다. 그리고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는 고령세대에 여러 편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특히 경제의 지역 순환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경제는 유·무형의 지역 자원을 엮고 지역의 고령세대 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지역 생태계를 만들고 나아가 지역경제 내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초고령 시니어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의 경우, 고령세대가 지역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재가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물적, 인적 인프라 구축과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현대판 고려장’이라 불리는

노인 요양시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제대로 관리, 감독되지 않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대안적 접근이 절실하게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마침 우리 사회에서도 최근 들어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기존의 오래된 커뮤니티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지역사회를 재생하는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국과 우리 사회에서 여러 사례로 확인되는 바, 고령세대를 대상으로 한 주거협동조합이나 시니어와 젊은이들을 연결해서 저렴하게 주거지를 제공해주는 주거공유 프로그램¹¹처럼 물리적 도시재생사업의 내용을 채우면서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사업들이 부단히 시도되고 그 성과가 공유되기를 기대한다.

이에 필요한 제도적, 사회경제적 환경을 만드는 데는 공공의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에 대한 제도의 보완과 지원도 필요하다(대표적으로 사회금융). 그런 점에서 이러한 제도 환경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는 분명 단기적으로 비용이 들어갈 것임에 틀림없다. 예컨대 단계적 은퇴 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이 클 것이고 지방정부 역시 지역 커뮤니티의 물적, 인적 자원을 고령 친화적으로 바꾸는데 필요한 예산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적인 고령화에 따른 제반 사회적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증가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고려하면 이러한 접근이 갖는 예방적 효과에 따른 편익, 복지 편익이 단기비용을 압도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고령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은 노년의 의미와 이미지, 고령 관련 사회제도와 정책 등 유·무형의 우리 사회 인프라를 바꾸는 거대한 사회 전환 프로젝트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이 프로젝트는 비단 노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비단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보다 안전하고 따듯

11 서울50플러스재단(2016b).

하고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드는 것이듯 세대 통합적인 사회 구성원의 주체
이자 대상으로서 새로운 노년의 상을 형성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미래사
회의 대안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 참고자료**
- Civic Ventures(2011). Choices : Purpose, Passion and a PaycheckIn a Tough Economy.
 - Harper Sarah and Kate Hamblin(2016). International Handbook on Ageing and Public Policy, Univ. of Oxford Press.
 - ILO(2010). Global Jobs Pact Policy Briefs, No.10., 2010, The Resilience of Social and Solidarity Enterprises : the Example of Cooperatives.
 - McKinsey Global Institute(2013). Beyond Korean style: Shaping a new growth formula (Report, April 2013).
 - National Council on Ageing(2015). Infographic : The 2015 United States of Aging Survey (<https://www.ncoa.org/>)
 - Nikolova, Milena(2016). Two solutions to the challenges of population aging , UP FRONT Brookings, Monday, May 2, 2016
 - OECD(2013). Pensions at a Glance 2013: OECD and G20 Indicators.
 - OECD(2015). OECD Better Life Initiative, How's Life?
 - Uluorta, H.(2009). The Social Economy: Working Alternatives in a Globalizing Era (Rethinking Globalizations), Taylor & Francis. Kindle Edition.
 - WHO(2014). Preventing suicide: A global imperative.
 - 고용노동부(2014). 장년고용종합대책, 2014. 9. 22.
 - 국회입법조사처(2010). 고령자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향, 현안보고서 Vol. 65.
 - 서울50플러스재단(2016a). 50+일자리사업 추진 방향 및 과제 (내부자료)
 - 서울50플러스재단(2016b). 앙코르50+포럼 <제2회 주거공유(Home Sharing), 주택과 삶을 공유하는 50+, 50+리포트 2호.
 - 연합뉴스(2016. 7. 9). <인구절벽>③ 고달픈 노인... 미래 우리 모두의 모습?
 - 정건화(2012). 민주주의, 지역 그리고 사회적 경제, 동향과전망 2012년 가을·겨울호(통권86호).
 - 정건화(2016a). 한국경제와 사회적 경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긴장과 화해,
 - 정건화(2016b). 50+세대가 사회 주역이 되는 미국과 싱가포르, 50+리포트 1호, 서울50플러스재단.
 - 정건화(2016c). 미국 베이비 부머의 고령화: 시니어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50+리포트 2호, 서울50플러스재단.
 - 통계청(2015).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2015.7.
 - 한겨레(2015. 5. 12). 노인층 빈곤율과 자살률 세계 1위(<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690818.html>)

이향숙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원

고령화에 대응하는 일본 생협의 복지사업

“ 일본에서는 급격한 고령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의료, 돌봄, 예방, 주거, 생활지원 서비스를 일체형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노인복지를 개인이나 공적 기관만이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한 복지, 의료 관련 단체, 지역 단체 등의 연대를 활용한 시스템은 이후,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을 세워나가는 데 참고가 될 만하다. ”

1. 들어가면서

한국과 일본의 전통적인 지역사회는 농촌을 중심으로 촌락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그것을 지탱하는 공동체가 존재했다. 그러나 한국은 식민지시대, 한국전쟁, 산업화를 거치면서 지역사회를 뒷받침해왔던 전통문화의 후퇴와 함께 전형적인 지역사회 쇠퇴의 경로를 걸어왔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산업화에 따라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은 눈에 띄게 쇠퇴했다. 지역사회에서의 유대 약화, 개인의 고립화가 두드러지면서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사회 전반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보다 앞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일본의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를 노인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생협이 노인복지사업을 실천하게 된 배경, 지역생협과 의료생협의 노인복지사업의 현황과 사례를 살펴본다. 또한 일본 생협의 복지가 한국 협동조합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일본 협동조합의 복지

일본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은 구매생활협동조합(구매생협), 공제생활협동조합, 직장생활협동조합, 의료복지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등이 있다. 그 생협들이 대부분 가입해 있는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에는 2015년 현재 568개 생협 2,819만 명의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다(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지). 일본 생협 중 노인을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는 의료생협과 구매생협인 지역생협이 있다. 직접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생협도 있으며 지역생협을 모체로 해서 사회복지법인 등을 만들어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생협의 복지사업 규모는 지

역생협 201억 엔(2015년), 지역생협을 모체로 한 사회복지법인 약 177억 엔(2014년), 의료생협 648억 엔(2015년)으로 약 1,000억 엔(한화 약 1조 원) 이상이다(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 제66회 통상총회의안서 참고자료, 일본의료복지생활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작성).

생협 외에도 복지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은 농협을 모체로 하는 후생농업협동조합연합회가 있다. 워커즈콜렉티브(워커즈), 워커즈코프¹ 등도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둘은 아직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2-1. 일본 지역생협의 복지사업

1) 일본 지역생협의 복지사업 시작 배경

한국의 지역생협이 친환경 농산물의 산지직거래 사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다면 일본의 지역생협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저렴한 가격으로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생협이 많다.

이렇게 먹을거리 구매사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일본의 지역생협이 왜 복지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일본 지역사회 변화와 고령화, 둘째, 사회·경제 변화에 따른 생협의 운동과 사업의 대응, 셋째, 개호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본격적인 복지 참여라고 볼 수 있겠다(李香淑, 2013).

① 지역사회 변화와 고령화

2015년 일본 가구당 인원은 2.33명,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1인 가구는

1 워커즈콜렉티브와 워커즈코프는 노동자협동조합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일본에서의 워커즈콜렉티브의 시작은 1982년에 출발한 생활클럽생협의 난징(人人)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워커즈코프는 자신들을 '협동노동의 협동조합'이라고 표현하는데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일자리를 잃은 중장년 실업자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려고 병원 청소, 공원 녹화 등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워커즈코프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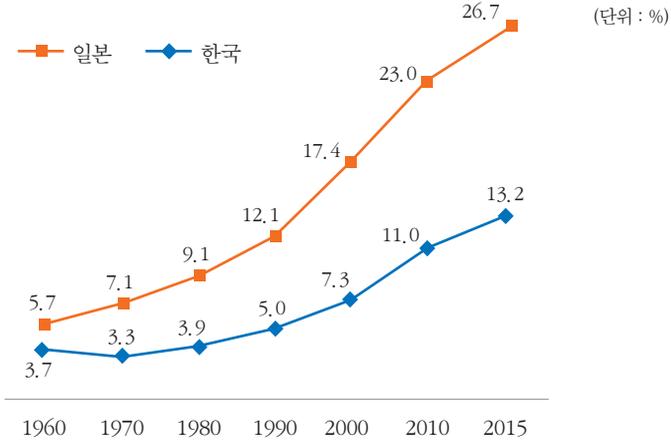
34.5%를 보이고 있어서 지역사회의 공동체 해체와 함께 개인의 고립화 현상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統計局 2015年 国勢調査).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고령화사회(7% 이상), 고령사회(14% 이상), 초고령사회(20% 이상)로 분류하는데 2015년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13.2%, 일본은 26.7%로 나타난다(〈표1〉, 〈그림1〉). 이에 따르면 한국은 고령화사회, 일본은 초고령화사회라 할 수 있다. UN과 한국 통계청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60년에는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일본을 제치고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의 부양비는 2010년 현재 일본, 프랑스, 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2060년에는 일본과 함께 부양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² 기대수명은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2025~2030년에는 일본 85.5세(남자 82.3세, 여자 88.7세), 한국 84.6세(남자 81.5세, 여자 87.7세)로 세계 73.7세(남자 71.5세, 여자 75.9세)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³ 또한 합계 출산율⁴은 한국이 2015년 현재 1.24명으로 일본의 1.46명보다 낮아서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은 고령화에 따른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정부, 공적기관만이 아닌 다양한 영역에서의 참여와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협동조합이다.

〈표1〉 한국과 일본의 연령대별 구성비 추이

(단위 : %)

구분	한국			일본		
	0~14세	15~64세	65세 이상	0~14세	15~64세	65세 이상
1960	40.6	55.6	3.7	30.2	64.1	5.7
1970	42.1	54.6	3.3	24.0	68.9	7.1
1980	33.8	62.3	3.9	23.5	67.4	9.1
1990	25.7	69.4	5.0	18.2	69.7	12.1
2000	21.0	71.7	7.3	14.6	68.1	17.4
2010	16.2	72.8	11.0	13.2	63.8	23.0
2015	13.9	72.9	13.2	12.7	60.6	26.7

〈그림1〉 한국과 일본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 추이



출처 :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년도, 総務省統計局, 「国勢調査」 각 년도

② 사회·경제 변화에 따른 생협의 운동과 사업 대응

일본의 경우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를 고도경제성장기라 할 수 있다. 고도경제성장은 일본 국민의 소득과 생활 향상에 기여했으나 다양한 모순을 발생시켰다. 도시인구 급증으로 주택단지 등이 조성되었지만 생활 인프라는 이에 쫓아가지 못했고 물가 상승, 환경, 교육 문제, 식품첨가물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회 배경과 함께 우유값 인상 반대운동에서 생겨난 우유 공동구입, 산지직거래 운동 전개, 첨가물을 적게 사용한 식품 취급 등 지역 주민의 요구 실현 운동과 직결된 ‘시

- 2 부양비는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의 합. UN(2010).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10 Revision ;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 2010-2060」, p.44.
- 3 중위(medium) 자료임. 자료 : 통계청(2016). 국제통계연감, UN <<http://esa.un.org/unpd/wpp>,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2015. 7.
- 4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

민형 지역생협이 1970년대에 급증하게 된다. 이들 생협은 도시 지역의 핵 가족화, 전업주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성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주부들이 모여서 만든 ‘반^班’에 상품이 공급되면 그것을 나누어 갖는 반별 공동구입이 이루어졌으며 소비자운동, 평화운동 등을 전개해 나갔다(齋藤嘉璋, 2007, 76~88).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서는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생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일본 생협은 시대에 따른 생활 문제,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온 것을 알 수 있다. 복지사업의 시작도 현재 일본 사회가 직면한 과제인 고령화에 대응한 생협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의 영향으로 조합원 생활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이것은 생협 경영에 큰 영향을 미쳤다. 경영 부진으로 도산하는 생협이 속출했고 경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생협 간의 연대, 합병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반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던 공동구입은 전업주부였던 조합원의 사회 진출, 개인화 진행 등으로 개인공급 방식으로 전환되어갔다. 그 결과 조합원의 활동이 해체되고 지역사회와의 유대가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齋藤嘉璋, 2007). 또한 고령사회에 돌입하면서 조합원의 감소, 사업 성장의 침체가 현저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대형 유통기업이 설립되면서 생협이 내세우던 안전하고 저렴한 식품 판매는 더 이상 생협만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협의 정체성과 가치를 생각하고 생협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할 때, 고령화에 대응한 사업과 운동은 필수였다고 하겠다. 본격적으로 복지사업을 시작한 생협이 생겨났고 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송, 쇼핑 서비스 대행 등, 복지와 연계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③ 개호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복지사업

朝倉美江(2002, 6)은 생활복지란 ‘공적 영역(=정부), 시장 어느 쪽과도 다른, 생활자=시민 생활의 공동 관계 속에서 주체적·자발적으로 생겨난

생활 문제 해결 방안을 총칭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생활복지를 실천하는 공동조직으로 생협을 들면서 조합원끼리 서로 돕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京極高宣(2002, 1~2)은 생협의 복지를 세 시기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부터 고도성장기를 거쳐서 안정 성장에 들어설 때까지 조합원의 상부상조 활동이나 보육원 만들기 운동이 활발했던 시기이다. 두 번째 시기는 1980년대 전반에 코프고베가 '구라시노타스케아이카이(くらしの助け合い会, 생활 속에서 서로 돕는 모임)'를 조직하고 몸이 불편한 조합원이 이용하기 편한 매장 만들기, 복지 기구나 용품 공급을 시작하는 등 다양한 실천이 생협에 확대된 1990년대까지를 포함한다. 세 번째 시기는 개호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생협이 사업자로서 참여한 2000년 4월 이후를 가리킨다.

위와 같이 꾸준한 복지 활동을 바탕으로 한 성과가 복지사업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본격적인 복지사업 시작은 개호보험제도 시행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개호보험제도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2008년 7월 시행)과 비교될 수 있겠는데 이 제도는 2000년 4월에 시행되었고 거의 3년마다 개정되어왔다. 한국에서는 재가급여 서비스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복지용구 서비스가 있으며 시설급여 서비스로는 노인요양 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다. 일본에서는 재가급여 서비스, 시설급여 서비스 외에 돌봄 계획을 작성하고 관계 기관에 연락, 조정하는 케어매니지먼트, 지역밀착형 서비스, 예방 서비스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여기에서는 한국의 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대치하고 상이한 것은 일본 명칭 그대로 사용하고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다.

2000년 4월 개호보험 시행 당시, 41개 지역생협이 개호보험제도상의 지정사업자로서 참여했다. 케어매니지먼트, 방문 요양, 복지용구 대여사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복지사업을 시작했다. 2011에 개정된 개호보험법(介護保険法, 2012년 4월 시행)에는 '지역포괄 케어시스템(Integrated community care

system 구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이란 노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 생활권에서의 의료, 돌봄, 예방, 주거, 생활지원 서비스를 일체형으로 제공하는 체제를 가리킨다.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단카이세대(1947년부터 1949년생까지)'가 모두 75세를 맞이하는 2025년까지 10년 정도 남았다. 나이가 들어 병에 걸리거나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할 때 우리는 흔히 요양시설에서 받는 돌봄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요양시설은 본인이 살던 지역이나 가족과 떨어져서 낯선 지역에 있는 시설이 많고 그곳에서 받는 돌봄의 질에 대해서도 안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요양 등을 집에서 받고 싶어 하는 일본 국민의 희망이 높아지면서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이 나오게 되었다. 이 시스템은 의료, 돌봄, 예방, 주거, 생활지원 서비스를 일체형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조(公助), 공조(共助), 자조(自助), 호조(互助) 체제를 강조하고 있다(日本総合研究所, 2014, 11). 이것은 정부, 지자체, 공공단체만이 아니라 돌봄을 실천하는 NPO, 협동조합 등의 연대와 협력, 주민 조직, 자원봉사 활용 등, 노인을 둘러싼 지역사회 전반의 의료, 복지 네트워크를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도시 지역 노인 대책으로 검토된 것이라는 점, 지자체 격차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 의료·돌봄·생활 지원의 인력 확보 대책이 애매하다는 점, 의료·돌봄 사업자의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 공정 재정부담의 경감책이라는 측면을 갖고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江本淳, 2015).

2) 일본 지역생협과 복지사업 현황

2015년도 지역생협을 살펴보면 일본생협연합회에 회원으로 가입된 생협이 130개 생협, 조합원 수 약 2,100만 명이며, 이중 지역생협이 직접 참여하는 복지사업은 200억 엔(한화 약 2,000억 원) 정도로 나타났다(〈표2〉). 2015년 복지사업을 살펴보면 지역생협은 방문 요양, 주간 보호, 케어매니지먼트를

중심으로 복지사업을 하고 있다. 2015년도 43개 지역생협이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日本生活協同組合連合会, 2016a). 이외에도 먹을 거리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 생협만의 강점을 이용해서 지역사회 돌봄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동판매차 운영,⁵ 도시락 배송사업, 푸드뱅크 활동, 미마모리見守り, 저킴이 활동⁶ 등이다.

〈표2〉 일본 지역생협 현황

항목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추계
조사 생협 수	134	131	130
조합원 수(천 명)	20,122	20,583	20,583
세대 가입률(%)	36.0	36.5	37.0
총 사업액(백만 엔)	2,685,337	2,704,121	2,773,142
공제사업 수입(백만 엔)	261	263	256
복지사업 수입(백만 엔)	18,469	19,261	20,107
공급액(백만 엔)	2,580,129	2,598,550	2,665,336
(매장사업 공급액)	880,918	873,577	902,405
(공급사업 공급액)	1,671,390	1,696,738	1,732,779
(개인공급 공급액)	1,076,891	1,119,922	1,175,077

자료 : 日本生活協同組合連合会(2016b), 第66回通常總會議案書參考資料에서 작성

지역생협의 복지사업을 수도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도쿄東京에서는 코프 미라이와 팔시스템 도쿄 두 곳이 복지사업을 하는데 코프 미라이는

- 5 이동판매차는 매장을 거점으로 냉동·냉장 케이스를 설치한 차에 신선 식품에서 일상용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채워서 지자체나 자치회와 협력해서 쇼핑이 불편한 지역을 도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6년 3월말 현재, 전국 30개 생협에서 150대의 이동판매차가 도입되었다(日本生活協同組合連合会, 2016).
- 6 ‘미마모리 활동’은 생협의 공급자가 조합원인 노인·장애인 등의 신변 이상을 알게 되면 행정기관에 연락하는 활동이다. 2016년 4월 현재 지역생협 88개, 직장생협 4개가 888개 시구정촌(市区町村), 28개 도도부현(都道府県), 40개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日本生活協同組合連合会, 2016).

2013년도에 치바 코프, 사이타마 코프, 코프 도쿄의 합병으로 탄생한 곳이라 복지 사업의 시작과 그 특징을 살펴보기 어려운 관계로 팔시스템 도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또 다른 사례로 지역생협에 있어서 복지사업 선구자로 알려진 생활클럽생협·가나가와의 복지사업을 살펴보겠다.

① 생활협동조합 팔시스템 도쿄의 복지사업

생활협동조합 팔시스템 도쿄(이하 팔시스템 도쿄)⁷는 행정의 수탁사업으로 복지사업을 시작했다.

팔시스템 도쿄는 1970년대 도쿄 다츠미^{辰巳} 지역을 중심으로 생겨난 생협들의 합병과 연대를 통해 생겨났다. 도쿄 지역을 사업 영역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 3월 현재 본부 사무소 외, 배송센터 17개소, 복지사업소 26개소, 보육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합원 수 450,710명, 사업액 726억 6,860만 엔을 나타내고 있다(パルシステム東京, 2016). 사업으로는 공급, 복지, 공제, 장례 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활동으로는 식품 안전, 농업과 환경 보호, 평화운동, 지진피해 복구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소 명칭을 ‘히다마리’로 하고 주간 보호, 방문 요양, 케어매니지먼트, 치매대응형 주간보호, 한국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과 유사한 그룹 홈, 복지용구 대여사업을 하고 있다.

1990년대 다츠미^{辰巳}, 야시오^{八潮} 지역도 오래된 단지가 많아지고 고령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8년 10월 시나가와 구品川区의 수탁 사업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시작하게 되었다. 팔시스템의 점포가 있던 빌딩 3층 공간에 주간보호센터를 시작했다. 또한 노인을 위한 점심 도시락의 배식도 의뢰받았다. 도시락 배식과 주간보호센터에서 제공되는 도시락은

7 상품이나 환경정책 등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는 9개 생협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팔시스템 그룹을 구성하고 있는데 전체 조합원 수는 2016년 3월, 193만 세대이다. 팔시스템 도쿄는 그룹에서도 사업액과 조합원수 모두 최대 규모이다(パルシステム東京, 2016).

조합원이 만든 위커즈가 담당했다. 2000년 4월에 개호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복지 사업을 확대했다. 2015년 복지사업소 26개소의 수입은 9억 6,600만 엔(약 100억 원) 전년대비 101.6%로 총 사업액에 비하면 작은 수치이지만 매년 조금씩 그 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3〉).

서비스의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 2003년 4월에 전무이사 자문기관으로 ‘히다마리시민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 평가를 통해 서비스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은 연구자, 시민 공모, NPO, 조합원 등이 참여해서 10명으로 시작했다. 방문요양을 하고 있는 3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2013년도 이용자·가족의 이용만족도 조사’ 조사를 실시했는데 요양보호사의 대응력에 개인차가 있다는 점이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도는 각 사업소에서 매월 진행되는 전체 회의에서 사례 검토, 외부 강사를 초대해서 실기研习회를 개최했다. 이후 모든 방문요양 사업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가 서비스의 개선과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パルシステム東京, 2015).

〈표3〉 팔시스템 도쿄 복지 사업액 추이

항목	2012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5년도
총 사업액(천 엔)	67,605,361	69,085,453	70,666,387	72,668,609
복지사업 수입(천 엔)	780,046	829,391	951,396	966,313
복지사업 비용(천 엔)	661,434	777,147	881,261	895,416
복지사업 잉여금(천 엔)	118,611	52,243	70,135	70,897

자료 : 팔시스템 도쿄 홈페이지 '손익계산서 추이', 『2016 TSUNAGU 生協・環境・社会活動報告書』에서 작성

또한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미마모리 활동에 협력하고 있다. 생협이 공급자가 조합원인 노인·장애인 등의 신변 이상을 알게 되면 행정기관에 연락하는 활동이다. 노인이 혼자 사는 집의 우편함에 우편물이 쌓이는 등, 조합원의 이변을 알게 되면 배송센터에 연락하거나 긴급할 때는 공급 담당

자가 긴급 연락 등을 할 수 있다. 그 후 지자체의 관계기관이 대응하게 된다. 매일 같은 요일과 시간대에 같은 공급 담당자가 방문하는 생협 사업의 특징을 살린 활동으로 이 활동은 2016년 3월 현재 도쿄도 내 34개의 행정구와 체결하고 있다(パルシステム東京, 2016).

② 생활클럽생협·가나가와 복지사업

복지사업을 추진할 당시인 1980년대는 개호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으로 주택가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한 노인요양기관이 많았다. 따라서 한번 부모님을 입실시키고 나면 어떻게 운영되고 생활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조합원의 부모님들이 고령화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되었다. 자택에서 돌보고 싶지만 24시간 돌봄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낮 시간 동안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조합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주간보호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다.

1987년, 데포⁸가 있었던 가와사키 북부川崎北部의 아사오麻生 센터를 개조해서 1층에 주간보호센터를 시작했다. 당시 생협에 있어서 처음으로 시도된 주간보호센터였다. 개설 초기에는 직원이 서비스를 담당했지만 점차 워커즈가 담당하게 되었다. 아사오의 실천을 발판으로 삼아 1990년, 1991년, 1995년 연달아 개설해서 2003년에는 5개소가 되었다. 그러나 순조롭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처음부터 영리 목적은 아니었으나 적자가 계속된 탓에 조합원 사이에서는 주간보호센터 존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 열린 복지시설이 필요하다는 점, 그 시설을 지역에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조합원들이 이해하고 동의하면서 계속할 수 있었다. 2000년에 시행된 개호보험제도에 의해 그 적

8 데포(depot)의 뜻이 정거장, 저장소인 것처럼 생활재를 각 가정으로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모아두고 조합원이 와서 찾간다는 개념이다. 우리의 매장과 같은 곳이지만 개념은 사뭇 다르다. (편집자 주)

자도 점차 해소되었다(生活クラブ生活協同組合神奈川, 2000, 2011).

1987년 생활클럽생협·가나가와 대의원총회에서 복지생협 설립이 제안되었고 1989년 요코하마 시에 일본 최초 복지 전문 생협인 복지클럽생협이 설립되었다. 1991년 생활클럽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복지, 환경, 문화’를 테마로 20주년 기념사업을 실시했다. 복지 부문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 요양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1인당 1,500엔을 목표로 한 모금활동을 시작했다. ‘왜 생활클럽생협이 노인요양기관을 만드는가’, ‘생활클럽이 왜 복지문제를 중시하는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후 ‘참가형 복지’의 구체화를 향해 다양한 운동이 전개되었다. 3년이 지난 1994년 1억 엔이 달성되어, 사회복지법인 ‘이키이키복지회’가 인정받아, 후지사와 시(藤沢市)에 토지를 확보, 1994년 4월, 일본 생협 최초 노인요양시설을 개소했다. 생활클럽생협·가나가와는 생협을 모체로 하여 워커즈클럽티브, 복지클럽생협, 사회복지법인 등 다양한 복지 관련 단체를 만들고 그것을 다시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크하면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生活クラブ生活協同組合神奈川, 2000, 2011).

생활클럽생협·가나가와⁹는 수도권인 가나가와 현^{神奈川県} 요코하마 시^{横浜市}에 본부를 두고 있다. 1971년 미도리생협으로 시작해서 1970년대 합성세제 추방을 위한 서명운동, 1980년대에는 워커즈, 대리인운동, 1980년대 후반부터 복지사업을 했다. 매장인 ‘데포’는 조합원이 만든 워커즈가 중심이 되어 운영했다. 대리인운동은 1980년 ‘합성세제추방 직접청구운동’이 계기가 되었는데 합성세제 추방을 위해 22만 명의 서명을 모았지만 7개의 시 어느 곳에서도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1982년 대의원총회에서 생활클럽생협 관계자를 대리인으로 의회에 내보내, 생활 속의 과제를 스스로 해결해가자는 방침을 세웠다. 이후,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 조직을 설립해서

9 獵ヶ 都道府현(都道府県)에 32개의 생활클럽이 각각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생활클럽생협·가나가와라고 하겠다(생활클럽사업연합회생활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지).

운동으로 확대되었다(生活クラブ20年史編集委員会, 1991). 생활클럽생협·가나가와는 2016년 5월 말 현재, 조합원 수 73,039명, 2015년도 사업액 2,005,778만 엔이며 종합센터 1개소, 우유센터 1개소, 얼터너티브 생활관 1개소, 테포 22개소, 복지사업으로는 6개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의 복지, 의료, 생활 전반을 위한 상담 창구인 지역포괄 지원센터를 수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복지사업소 안에는 케어매니지먼트, 방문 요양, 주간 보호 3개 사업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스텝은 모두 워커즈 멤버이다(생활클럽생협·가나가와 홈페이지).

2-2. 일본 의료복지생활협동조합과 복지사업

일본 의료생협의 시작은 1932년 도쿄 나카노^{中野}에서 만들어진 의료 이용 조합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료복지생활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5년 현재 회원 생협은 110단체, 조합원 수 292만 명으로 나타났다. 의료생협이 하는 노인 복지시설 종류를 살펴보면 의료, 복지, 생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입소 시설인 ‘개호 노인 보건시설’, 통원하면서 일상 생활 지원이나 재활훈련 등을 받을 수 있는 ‘데이케어센터’, 정기적인 방문과 수시로 대응해서 방문하는 서비스를 합친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 요양간호’, 치매가 있는 사람이 일상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치매 대응형 주간보호’, 상황과 선택에 따라 방문과 숙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다기능형 요양’ 등, 방문요양, 주간보호 외에도 다양한 사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4〉).

의료생협은 2015년도 통상 총회에서 의료생협의 지역포괄케어를 구체화할 것을 확인하고 ‘연결 지도 만들기’, ‘이바쇼즈쿠리^{居場所づくり}, 있을 곳 만들기’, ‘생활권역에서의 지부활동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다.

‘연결 지도 만들기’는 의료생협이 지역에서 어떠한 조직이며 어떠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지도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표4〉 일본 의료복지생협 현황

		2013년	2014년	2015년
조직 현황	회원생협 수	111	109	110
	조합원 수(천명)	2,848	2,886	2,928
	출자금액(백만 엔)	75,874	79,587	83,213
사업 수익*	총 사업액(백만 엔)	319,557	325,640	329,637
	의료사업(백만 엔)	257,182	261,786	263,500
	복지사업(백만 엔)	60,918	62,489	64,850
의료시설 수	병원	77	76	75
	병상	12,468	12,382	12,113
	진료소	342	344	337
	치과시설	70	70	70
	방문간호 스테이션	199	198	187
복지시설 수	개호 노인 보건시설	25	25	28
	방문요양	185	185	210
	수데이케어센터	164	174	169
	주간보호센터	190	188	193
	케어매니지먼트	302	292	293
	지역포괄 지원센터	28	31	29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요양간호	4	6	10
	치매대응형 주간보호	32	32	33
	소규모 다기능형 요양	33	34	42
	그룹 홈	45	47	52
	복합형 서비스	3	6	5
	서비스 추가 노인주택	8	9	16
	그 외 주택	11	12	13

* 사업 수익은 2015년도 상반기 실적에 근거한 수치임.

자료 : 일본의료복지생활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hew.coop/>

지역에 어떠한 자원이 있으며 무엇이 부족한가를 살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생협이 사업화할 수 없는지 혹은 다른 조직과 협력해서 할 수 없는지 등을 생각하고 구체화해 나간다. ‘이바쇼즈쿠리’는 빈 집이나 조합

원의 집을 이용해서 노인이나 어린이가 안심하고 들를 수 있고 누구나 마음 편하게 모일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이다. 또 다른 실천으로는 일상생활권을 중심으로 조합원이 모여서 지부를 만드는 것이다. 이 지부는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을 위해 자원봉사 활동을 하거나, 혼자 사는 노인을 찾아가서 안부를 확인하는 활동을 한다. 2011년도 525개소, 2012년도 552개소, 2013년도 581개소, 2014년도 776개소로 매년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江本淳, 2015 : 22).

의료생협 중에서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의 구축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곳이 미나미의료생협¹⁰이다. 2015년 4월 현재, 미나미의료생협은 종합병원 1개소, 의료진료소 7개소, 치과진료소 3개소, 방문간호 5개소, 방문요양 7개소, 데이케어 7개소, 주간보호 1개소, 단기보호 1개소, 그룹 홈 4개소 등 다양하다. 이외에도 지역교류시설, 노인주택, 육아지원 등, 총 64개 의료, 복지 관련 사업소가 지역에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미나미의료생협 홈페이지). 미나미의료생협에서는 반의 활동이 눈에 띈다. 2015년 2월 현재, 조합원 수 75,183명, 85개 지부, 1,078개 반이 활동하고 있다. 반은 조합원 활동의 기초 조직으로 반 모임에서는 ‘건강 체크’, ‘건강 만들기’, ‘그림을 곁들인 편지’를 쓰거나 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휴식의 장이 되기도 하고 조합원이 서로 의견을 내기도 한다. ‘반’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역조합원이 3명 이상 모일 것, 1년에 2회 이상 반 모임을 개최할 것, 반장을 정해서 ‘반 모임 보고서’를 제출할 것 등이 요건이다. 이러한 반이 모여서 ‘지부’를 만들고 ‘지부’가 모여서 ‘블록’을 형성한다. 중요한 조합원 활동의 하나로 매월 발행되는 기관지의 배포 활동을 들 수 있겠다. 기관지 ‘건강의 친구’는 3,349개의 배포 루트를 통해 4만 부 이상이 조합원을 통해 배포된다.

10 미나미의료생협은 1959년, 이세만(伊勢灣) 태풍 피해를 받은 아이치 현(愛知県) 나고야 시(名古屋市) 남부 피해지에서 구원활동에 참가한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되었다. 피해로부터 2년 후인 1961년에 308명의 조합원에 의해 미나미의료생협이 설립되었으며 미나미진료소가 오픈했다.

이 활동은 조합원의 가입이나 탈퇴 변동도 파악하고 조합원과의 유대를 확인하는 장이 되기도 한다(미나미의료생협홈페이지, 大野京子, 2015, 34~35).

3. 일본 생협의 복지사업이 주는 시사점

일본 생협의 복지사업에서 한국의 노인복지정책과 협동조합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겠다. 우선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첫째, 노인복지에 대한 관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을 제안하고 추진하고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의료, 돌봄, 예방, 주거, 생활지원 서비스를 일체형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이다. 노인복지를 개인이나 공적 기관만이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한 복지, 의료 관련 단체, 지역 단체 등의 연대를 활용한 시스템은 이후,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을 세워나가는 데 참고가 될 만하다.

둘째, 지역 내의 의료, 복지 단체의 네트워크 형성이다. 복지정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지역에 기반을 둔 의료, 돌봄을 위해서는 지역 내의 의료, 복지 단체의 네트워크와 연대가 중요한데 이러한 관점을 시야에 넣고 정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한국의 협동조합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첫째, 일본 생협의 사례를 통해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주체이자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일본 의료생협에서는 기초 조직인 반 모임을 기반으로 예방 활동, 안부확인 활동 등 일상적인 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생활클럽생협·가나가와는 조합원이 워커즈를 만들어서 운영의 주체가 되었다.

둘째, 생협의 사업과 연계된 복지이다. 일본의 의료생협에서는 의료와 복지를 연계하고 있으며 지역생협에서도 도시락 배송, 공급 시 안부 확인 등 구매사업과 연계된 복지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셋째, 정부의 제도를 이용한 복지사업 추진이다. 개호보험제도 시행을 계기로 복지사업을 시작한 지역생협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제도 아래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반드시 경영 안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개호보험제도에 대응한 인재 관리, 경영 개혁, 개선을 적절하게 도모한 결과, 안정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일본 생협은 개호보험제도가 개정될 때마다 생협 전체가 하나가 되어 개정을 위한 개호보험 개정에 대한 제언, 연구회 등의 마련을 통해서 개호보험제도에 준비해왔다(李香淑, 2013).

넷째, 지역을 기반으로 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돌봄과 요양을 받고 싶어하는 조합원의 욕구에 대응해서 시작한 복지사업이었는데 이후에는 지역 주민에게도 열린 사업으로 발전되어 지역사회 기여로도 연결되고 있다.

다섯째,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생협이다. 고령화에 대응하는 생협을 보면 생협을 둘러싼 내·외부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지역생협의 경우, 식품안전운동, 평화운동, 산지직거래운동 등 조합원의 생활과 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사업과 운동으로 해결해왔다. 복지활동과 사업 역시 일본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에 대응한 생협 운동과 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4. 맺으면서

한국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두 나라의 제도에서 다양한 차이를 살펴볼 수 있지만 이용자의 본인 부담금을 보면 일본의 경우, 일괄적으로 10%였던 것이 2015년 8월 이후 기본으로 10%는 가져가면서 일정액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20%로 인상했다. 한국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로, 경제적 부담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지역

생협의 경우, 지금까지 상품공급사업과 매장을 주된 사업으로 해서 추진해온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후 복지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그에 앞서서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일본의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를 노인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본 생협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를 통해 일본생협의 복지사업이 한국 협동조합에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보고자 노력했다.

여기에서는 지면 관계상, 일본과 대응해서 한국 생협의 복지 현황은 어떠한지, 일본 의료생협과 지역생협의 복지사업 연대와 같은 이중 협동조합간의 연대, 복지사업의 실패 사례 등을 통한 시사점 등을 다루지 못했다. 조합원과 이용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생협의 복지사업 등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들은 다음 과제로 삼고자 한다.

- 참고문헌**
- UN(2010).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10 Revision.
 -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 2010-2060」
 -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2016).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016 통합 15차 정기총회』
 - 朝倉美江(2002). 『生活福祉と生活協同組合福祉』, 東洋大学大学院 社会学研究科.
 - 大野京子(2015). 「南医療生協の組合員活動 : 市民の協同でつくる事務所づくりまちづくり」, 『生活協同組合研究』2015. 10. Vol. 477.
 - 江本淳(2015). 「医療福祉生協をとりまく環境と事業戦略 : 医療福祉生協の地域包括ケアをめざして-」, 『生活協同組合研究』2015. 10. Vol. 477.
 - 川口清史(1999). 『ヨーロッパの福祉ミックスと非営利・協同組織』, 大月書店.
 - 京極高宣(2002). 『生協福祉の挑戦』, コープ出版.
 - 厚生省老健局(2011). 「介護保険制度改正の概要及び地域包括ケアの理念」, 『平成23年度地域包括ケア推進指導者養成研修(中央研修)』
 - 厚生省老健局総務課(2015). 『公的介護保険制度の現状と今後の役割』
 - 斉藤嘉璋(2007). 『<改訂新版>現代日本生協運動小史』, コープ出版.
 - 生活協同組合パルシステム東京(2015). 『2015 TSUNAGU 生協・環境・社会活動報告書』
 - 生活協同組合パルシステム東京(2016). 『2016 TSUNAGU 生協・環境・社会活動報告書』
 - 生活クラブ20年史編集委員会(1991). 『生き生きオルタナティブ 生活クラブ神奈川20年のあゆみ』, 生活クラブ生活協同組合神奈川.
 - 生活クラブ生活協同組合神奈川(2000). 『神奈川創立30周年記念誌きらきら光るあなたがすき』, 生活クラブ生協神奈川.
 - 生活クラブ生活協同組合神奈川(2011). 『神奈川創立40周年記念誌 未来へつなく私たちのメッセージ』, 生活クラブ生協神奈川.
 - 高山一夫(2015). 「日本の医療制度の現状と課題」, 『生活協同組合研究』2015. 10. Vol. 477.
 - 日本総合研究所(2014). 『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事例集成』
 - 日本生活協同組合連合会(2016a). 『生協の社会的取り組み報告書』
 - 日本生活協同組合連合会(2016b). 『第66回通常総会議案書参考資料』
 - 李香淑(2013). 「持続可能な地域コミュニティを創る担い手としての生協-日韓生協の福祉事業を中心に-」, 立教大学 博士後期課程論文.

- 참고 사이트**
- 미나미의료생활협동조합 홈페이지 <https://www.minami.or.jp/>
 - 복지클럽생활협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fukushi-club.net/>
 - 생활협동조합 팔시스템도쿄 홈페이지 <http://www.palsystem-tokyo.coop/>
 - 생활클럽사업연합회생활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seikatsuclub.coop/>
 - 생활클럽생협·가나가와 홈페이지 <http://kanagawa.seikatsuclub.coop/>
 -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지 <http://jccu.coop/>
 - 일본의료복지생활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지 <http://hew.coop/>
 - 일본 워커즈코프 홈페이지 <http://www.roukyou.gr.jp/>

박봉희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교육연구센터 소장

의료협동조합이 만들어가는 ‘노인이 행복한 세상’

“ 바람직한 보건의료와 복지는
사회적 신분, 인종, 국적, 재산, 종교,
성별, 장애, 연령에 따른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공공의료 부문이 하지 못하는 것을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내고,
이윤보다는 공공의 이익과
주민 건강 증진에 힘쓰고,
이를 위해 주민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상시적인
주민 조직, 마을공동체가
필요하다. ”

1. 노년, 그 이름

고령사회. 어느새 한국 사회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다. 나이 들어서도 외롭지 않고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일,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다가 존엄케어를 받으며 온전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일은 너무 허황된 꿈인가. 노인이 된다는 것은 어느새 공포가 되어버렸다.

과거 지혜와 존경의 대상이었던 ‘노인’이라는 단어가 노쇠^{老衰}, 노병^{老病}, 노물^{老物}, 노약^{老弱}, 모두 반갑지 않은 말들이 되었다. 본인의 노후에 대해 자녀가 부양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열 명 중 한 명(10.9%)밖에 불과하다. 2009년 4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이다. 한편에선 노인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 발달심리학적으로 노년기는 최후 단계에 있지만, 삶을 온전하게 마치지 못하고 자살로 삶을 마감하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움을 넘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201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2060년)에 따르면 65세 인구는 2010년 11%(545만 명)에서 2030년 24.3%(1,269만 명), 2060년 40.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건강보험의료비가운데 고령자 비중이 2009년 30%를 돌파했다. 이 비중은 1999년 17.0%에 그쳤으나 2009년 30.5%로 10년 만에 13.5% 포인트 급증한 것이다. 독거노인 수는 2013년 120만 명에서 2035년엔 343만 명으로 3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통계수치로 나타난 위협뿐 아니라, 실제로 홀로 살고 있는 노인이 며칠씩 주검으로 방치되고, 현대판 고려장처럼 노부모를 택시에 버리고, 폭행이나 성 문제와 같은 노인들의 사회문제가 현실에서 수없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듯 고령화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면 사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력 저하, 생활의 질 저하가 사회 부담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는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역 사회 공동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¹

지역 주민과 의료인이 협동하여 민주적 의료기관, 건강 생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의료생활협동조합²은 1990년 초반부터 시도되었던 보건의료 시스템의 새로운 실험이었다. 특히 고령사회에 대비해 자발적인 노인돌봄사업을 진행해왔으며 2004년부터 재가요양사업³을 추진해왔다. 노인장기요양보험(2008) 제도가 설계되기 전부터 노인 건강 문제를 선도적으로 풀어나가는 역할을 해왔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어떤 비전을 준비하고 있는지 필자의 경험을 포함하여 소개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제안하고 여타 협동조합과 함께 답을 찾아보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2. 행복의 조건

행복한 사회를 원한다면 사회 참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로버트 D. 퍼트남

행복(Happiness)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모든 감정 상태’를 뜻한다. 심리학자 리처드 스티븐슨은 “좋은 느낌과 긍정적인 마음, 활기 넘치는 생활, 의미부여,

1 임중한 외(2015). 『참 좋은 의료공동체를 소개합니다』, 스토리플래너.

2 의료협동조합은 역사와 시기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1998)에 근거한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활협), 협동조합기본법(2012)에 의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회협)으로 구분하고 큰 틀에서는 의료협동조합운동으로 명명한다.

3 의료생활협동조합의 사회적일자리사업인 재가장기요양사업, ‘길동무’.

즉 인생에서 가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을 좀 더 안전하게 느끼며 더 쉽게 결정을 내리고 더 친화적이고 더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영위한다. 행복하면 건강하다는 사실은 이제 놀라운 일이 아니다.⁴

나이가 들어도 활력 있게, 병 없이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가 바라는 가장 큰 소망이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삶은 어떤가. 평균수명이 늘고 건강 수준은 좋아졌지만, 더 많은 질병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건강 정보가 넘쳐나고 있는 한편 건강 정보를 가지고 불안을 조장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의료시장이나 보험시장에서는 노화를 늦추기 위한 다종다양한 건강보조식품, 값비싼 웰빙 상품, 개인 차원의 건강관리에 초점을 맞춘 건강 프로그램들로 우리를 유혹한다. 행복의 절대적 조건인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생활 터전의 총체적인 변화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야 한다.

결국 공동체다.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도 우리 대부분은 예전보다 지역사회나 공동체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가족 구조가 변화하면서 1인 가구가 점점 늘고 있다. 게다가 도시가 확대되면서 이웃거리 잘 알고 지내던 전통적인 풍습이 사라진 지 오래다. OECD에서 회원국들의 행복도를 측정한 결과, 한국은 ‘조사 대상 34개국 중 27위를 기록할 정도로 낮았다. 삶의 영역별 행복도를 주거, 소득, 고용, 공동체, 교육 등의 세부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그중 공동체 부문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송양민, 우재룡, 2014).’⁵ 사회적 관계망, 공동체 복원은 어떻게 가능한가. 삶의 기쁨과 애환을 나누고, 아플 때 조건 없이 상호 지원을 나눌 수 있는 일상적인 건강 공동체, 건강 마을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4 리즈 호가드(2006). 『영국 BBC 다큐멘터리 행복』, 예담.

5 송양민·우재룡(2014). 『100세 시대 은퇴대사전』, 21세기북스.

3. 의료협동조합의 고령화 준비

(1) 의료협동조합의 출발

1987년 연세의대 기독교학생회가 안성 농촌주말진료를 시작하고, 1994년 농민회와 의료인이 주축이 된 안성농민한의원을 개원하면서 한국 의료협동운동이 태동했다. 1989년 인천평화의원(40여 명의 기독교청년의료인회 회원이 공동 출현하여 만든 산재, 직업병 전문)은 1996년 평화의료협동조합으로 재창립되고, 2000년 동의학민방연구회를 중심으로 안산의료협동조합이 창립되었다.

2002년 원주, 서울, 대전 지역에서 다양한 협동운동, 영등포산업선교회 노동자 활동, 지역화폐 운동이 결합하며 의료협동조합운동은 새로운 활로를 찾아나갔다. 새로이 서울시 노원구 함께걸음, 전주, 청주 3곳의 준비 단위가 결합하면서 조직적인 연대 활동을 펼치기 위해 의료협동조합연합회(2003, 이하 연합회)⁶가 창립되었다. 마침 KBS <일요스페셜>에 보도되면서 의료협동조합운동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의료협동조합운동은 22년 활동 속에서 몇 가지 성과를 보여주었다. 믿을 수 있는 좋은 의료 서비스 제공,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회 자본과 민주주의, 비영리성 등 주민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건의료 분야에서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윤리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모델을 보여주었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법적 틀이 마련되면서 대부분의 회원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했다.⁷

6 2013년 10월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전환되었다.

7 박봉희(2014), 『건강도시』, 한울.

(2) 고령화 준비를 위한 돌봄사업

연합회의 재가장기요양사업, ‘길동무’

반듯반듯 올라가 있는 콘크리트 아파트, 그 뒤에 가려진 스텔트 집들. “담벼락에서 냄새 나는 집을 찾으면 되요” 처음으로 가정방문을 따라나선 나에게 간호사가 들려준 말이다. 대문이라고 할 수 없는 문을 열고 들어서니 부엌을 지나 방문 바로 옆에 할머니가 누워 계신다.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악취... 집 전체에 냄새가 배어 있고 할머니는 옷을 입으신 채로 오줌을 싸서 방치되어 있다. 머리맡에는 며칠씩 된 것 같은 전기밥솥에 누렇게 눌러 붙어 있는 밥알, 한쪽엔 뚜껑도 덮이지 않은 김치찌개 달랑 하나... 연탄가스 사고로 지능이 약간 떨어진 아들과 함께 살고 있으나 낮에는 주로 혼자 계셨다. 71세의 이 할머니는 대퇴골 수술 후 거의 거동을 못하고, 혼자서 조금씩 기어 다니는 정도. 손가락이 문지방에 끼어 골절되기도 하고, 기어 다니다 이마를 부딪쳐 온 얼굴까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기도 하고, 어느 때는 바지에다 똥, 오줌을 싸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1996년, 인천평화의료협동조합에서 진행한 가정방문 사례이다. 도시 한편에 이런 곳이 있을까, 당시 충격이 생생하다. 초기 지역사회에서 만난 의료취약계층의 대부분은 노인, 장애인이었다. 현장의 요구는 급박했다.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방문진료, 가정간호사업소, 재가장기요양 운영 및 시범적인 주간보호(안성 ‘해바라기’, 인천평화 ‘등대’), 자원봉사(인천 ‘무지개’, 안산 ‘감초’) 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스스로의 재원으로 돌봄 체계를 만드는 것을 우선했던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2008)가 설계되기 전, 지역사회 필요에 의해 출발했던 ‘집으로 찾아가는 자원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료협동조합이 조금씩 지역사회에 알려지던 시점, 1997년에 IMF를 맞았다. 실업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어려워졌다. 자발적 돌봄 영역을 담당하던 자원활동가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 2003년 연합회 초기에 참여정부가 시도한 ‘필요한 서비스이지만,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 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사업’과 만났다. 연합회가 시범사업(2004.6.1.~2009.4.2.)에 참여하게 되었다. 장애인, 노인 가정을 찾아가 가사, 간병, 목욕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러한 의료협동조합 활동은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아 2007년 12월 노동부로부터 ‘사회적일자리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포상도 받았다.

사회적일자리사업의 성과는 ① 수혜자의 의료, 보건, 복지 연계서비스 모델을 제시한 점 ② 여성의 일자리 창출 분야 자리 매김-돌봄 서비스의 사회화 ③ 생계형/ 생계보조형 참여자 일자리 창출 ④ 중년층 여성의 사회 역할 부여 ⑤ 고령화사회 대비-보건복지 통합 모델 시도 ⑥ 사회적협동조합 모색 등이었다.

이러한 사회적일자리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법 제도와 과정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의한 협동조합(법 8조, 시행령 제8조)이 기술되도록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의료협동조합의 사회적 임무가 보다 확실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모범적인 사회적기업의 전형이 되었다. 공동 소유, 민주적 운영,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 등 정부의 인증을 받기 이전에 의료협동조합은 존재 자체만으로 이미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였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체제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유형을 탄생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후 연합회가 총괄하던 사회적일자리사업은 노인장기요양이 제도화되면서 지역의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이관되어 관리되었다. 연합회 소속 회원 조합의 돌봄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1〉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소속 현황(2016년 8월 말)

*** 돌봄사업소 운영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시범사업 : 장애인주치의 사업, 노인건강 돌봄사업(안산, 대전)

비교 기준	안성 ***	인천평화 ***	안산 ***	원주 ***	서울 ***	민들레 ***	전주 ***	함계걸음 ***
주소	경기도 안성시	인천시 부평구	안산시 상록구	강원도 원주시	서울 영등포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북 전주시	서울 노원구
운영 사업소	의원3, 한의원2, 치과, 검진센터2	의원, 한의원, 치과, 검진센터	의원2, 한의원, 치과, 검진센터	의원, 한의원	한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2, 치과2	한의원, 치과 (준비중)	한의원, 치과
돌봄 사업소	재가장기 요양센터, 요양보호사 교육원, 해바라기 주간보호	가정간호 사업소, 재가장기 요양센터, 등대 주간 보호	요양원, 재가장기 요양센터, 가정간호 사업소, 장애인 주치의 사업단, 365노인 건강 (시범)	재가장기 요양센터	재가장기 요양센터	재가장기 요양센터, 검진센터, 가정간호 센터, 노인건강 돌봄사업 (시범)	재가장기 요양센터, 장애인 주치의 사업단	재가장기 요양센터, 장애인 주치의 사업단
비교 기준	해바라기	성남의료 생협	수원	시흥희망 ***	살림	대구시민 의료생협	마포	
주소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시흥시	서울 은평구	경북 대구시	서울 마포구	
운영 사업소	한의원, 치과	한의원	한의원, 치과 (준비중)	한의원, 치과	의원, 검진센터, 치과, '다짐'운동 센터	의원2	의원, 검진센터	
돌봄 사업소	장애인 주치의 사업단		장애인 주치의 사업단	재가장기 요양센터, 장애인활동 보조사업 장애인주치의 사업단		재가장기 요양센터 (준비중)		
비교 기준	수원한두레 의료생협	행복한 마을	순천의료생협 ***	건강한	느티나무	홍성우리마을 의료생협		
주소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 안양시	전남 순천시	서울시 성동구	경기도 구리시	충남 홍성군		
운영 사업소		한의원	의원, 치과, 검진센터, 생협건강센터	치과	의원, 검진센터	의원		
돌봄 사업소		장애인주치의 사업단	요양병원, 주간보호장애인 주치의 사업단호 준비		장애인주치의 사업단			

안산의 '꿈꾸는 집' 요양원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현장 적용은 혼란스러웠다. 사회보험 방식의 정부 정책이 경쟁과 시장 논리로 접근했을 때 존엄케어를 받는 존재가 아닌 서비스 구매자로 전락하고 있는 돌봄 시장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런 문제의식을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현장 연구 결과가 2014년 11월 5일 발표되었다. 사회적경제 현장 활동가와 연구자가 함께 작성한 『지역의 사회적경제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이하 돌봄서비스 기초연구)이다.⁸

돌봄서비스는 사회적 연대성, 즉 사회적 돌봄에 필요한 취약한 이용자들을 포괄하기 때문에 사회 연대 가치에 기초해야 한다. 보편성 즉 공공재, 가치재로의 속성을 지니므로 구매 능력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일반적 시장재화와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직접적인 대인서비스를 통해서 제공되기 때문에 높은 노동집약성과 비표준적 특징을 지닌다. 결국 돌봄서비스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초과이윤을 획득하기 어려운 사업영역이다.

이와 같이 돌봄 문제는 이윤을 발생시키기 어려운 보편적 복지, 곧 국가 지원이 더없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돌봄서비스 기초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돌봄서비스가 더 이상 가족이나 민간시장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 공급해야 하는,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분야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간 한국 사회에서 바우처voucher 제도를 비롯하여 사회서비스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라 전 국민에게 보장하여야 할 사회보장의 중요한 영역이 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어

8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새로운사회연구원(2014), 『지역의 사회적경제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편가.

“외할머니는 요양병원 가면 끝이라고 생각하셨다.” 우리나라에서 시설에 대한 어르신들의 반감은 매우 강하다. 여전히 자녀가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우세하다. 자녀 역시 아프신 부모를 남에게 맡기는 데 대해 커다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버려졌다’는 심리적 느낌은 신체에도 작용하여 질환을 악화시키고 회복 의욕을 꺾고 있다. ‘버렸다’는 느낌은 자녀들 사이에서도 서로 책임을 둘러싼 불화로 작용하고 있다. 돌봄서비스 기초연구 FGI⁹focus group interview에서도 일관되게 나온 이야기들이었다.

이제는 시장의 논리가 아닌 존엄케어가 실현되는 성공적인 모델을 발굴, 확산해야 할 때다. 공동체에 기반한 돌봄서비스 시설,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부모를 모실 안전하고 믿을만한 공간, 존엄케어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어떤 운영 주체와 시설, 서비스여야 하는가.

10년 전 친정아버지가 고혈압으로 쓰러지신 뒤 5년 동안 간병하시던 어머니가 손을 들어버리셨다. 가족회의를 거쳐 마침 2011년 조합원 힘으로 만들어진 안산의료사협 ‘꿈꾸는 집’ 요양원에 모셨다. 추석 명절 방문한 딸, 사위 후식 식사 제대로 못했을까봐 휠체어로 달려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라면 끓여내라 소리치시던 아버님의 활력, “우리 딸이야!” 엄지손가락 들어 자랑스러워하시며 활짝 웃던 모습, 마치 딸처럼 재롱 피우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건강한 관계… 아버지는 또 하나의 가족, 또 하나의 집⁹으로 인식하던 안산의료사협 ‘꿈꾸는 집’ 요양원에서 2016년 4월 임종하셨다. 마지막 생을 활력 있게 살다 가실 수 있었고, 시설에 계신 분의 몸 상태가 너무 청결하다며 상조회사 직원도 감동하던 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은 가족에게도 많은 위로가 되었다.¹⁰

9 오마이뉴스(2014.7.7). 「〈병원 문턱은 낮추고, 건강은 올리고〉⑨ 믿을 수 있는 노인요양원, 이렇게 하면 가능.」,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09673

10 임종한 외(2015). 『참 좋은 의료공동체를 소개합니다』, 스토리플래너.

〈표2〉 사회적경제 의료요양 서비스의 성공 요인과 발전 과제

핵심 성공 요인	발전 과제
① 협동조합 원칙이 살아 있는 설립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확장에 따른 요양원의 체계적 운영구조 및 시스템 마련이 요구됨. → 규모의 경제 논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40인 이상 시설이 필요하나 경제성을 우선하는 규모화와 인간적이고 따뜻한 균형을 위한 적정 규모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임. 적정 규모의 지표 개발이 필요함.
② 서비스 질 향상 : 통합적인 노인 돌봄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화 욕구와 표준화된 서비스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함. 개별적인 욕구, 예를 들어 고향 방문, 매일 외출, 음악회 등을 충족 시키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 → 돌봄노동에 대한 제도적 보장 확대와 보다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자 연계 모색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요구됨.
③ 지역공동체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료협동조합의 경우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건강마을만들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등 돌봄서비스는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요구를 포괄함. 예를 들어, 아픈아이돌봄 사업과 같은 생애주기에 따른 돌봄사업을 폭넓게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함. → 지역 내 생애주기별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돌봄조직·이용자 연대체의 필요성이 제기됨.
④ 돌봄노동자 : 요양보 호사의 주체적 참여와 정규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중심의 운영 철학과 직원 노동과의 관계 문제. ● 저수가 문제로 인한 돌봄 종사자 복지 한계. ● 노동자, 가족, 지역사회 모두 노인 돌봄 문제의 중요성과 원칙에 대해 공감하고 실천하는 비영리법인의 돌봄공동체 철학과 문화가 필요함. →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질에 대한 추가적 보상 등과 같은 수가 문제의 해결과 이용자-제공자 간 상호적 관계맺음이 가능한 거버넌스 구조, 가족과 지역공동체까지 확대되는 돌봄문화의 확산이 요구됨.
⑤ 연대를 통한 운영/교육의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다기능 그룹홈까지 서비스는 연계되고 있으나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현실적 조건이 있으며 노인 돌봄에서 의료서비스와의 연계는 필수적임. → 노인 돌봄 one-stop 사업을 위한 거점으로 노인요양병원을 비롯한 사업다각화 모색이 필요.

안산의료사협은 고령사회 ONE-STOP 서비스를 위하여 2009년부터 준비하여 2013년 40인(노인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이 공동 생활할 수 있는 ‘꿈

꾸는 집'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고 존엄케어가 실현되기 위한 전제는 무얼까. '부모님 전상서'와 같은 요양원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조합원 참여 조직화 사례, 존엄케어가 실현된 사례, 돌봄서비스 기초연구에서 제안한 몇 가지 시사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의료복지 통합 돌봄의 필요성

“큰 기대는 안 했는데, 깜짝 놀랐다.” “3년 만에 이런 정도의 요양병원을 설립하다니 실체를 보니 놀랍다.” “요양병원을 설립하는 계기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 “순천시로부터 807억 기금을 지원받을 수는 없는가.” “포괄케어 시스템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80여 명의 청중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되는 질문을 쏟아내는 뜨거운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2016년 12~13일, 순천생협요양병원에서 '고령사회의료복지 돌봄 심포지엄'이 열렸다. 보건, 의료, 복지의 종합적 접근으로 통합 돌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이 행사는 순천시가 후원하고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순천의료생활협동조합이 함께 주관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종환 회장(의료사협)은 “우리나라가 2026년이면 초고령국가로 진입한다. 치매노인은 100만 명에 이르고 치료비용 20조에 이를 것이다”고 포문을 열었다. 일본, 미국, 캐나다 선진 사례의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서 건강과 돌봄 통합 관리가 이뤄지는 제도적 변화가 모색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사협의 사회적 목표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제는 보건, 의료, 복지, 돌봄의 통합적인 시범사업을 지자체와 함께 구체적 실행 계획을 짜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인근 원장(순천생협요양병원)은 '고령화사회의 노인 의료돌봄 체계'라는 제목으로 순천생협요양병원의 현황과 운영 사례

를 발표했다. 박 원장은 15년차 순천의료원 출신 의사다. 아직 초보적 수준인 ‘사전임종제’, ‘사전의료의향서’, ‘윤리위원회 구성’을 발표에 포함시킬 것인지 고민했다고 한다. 인간에 대한 존엄케어를 어떻게 진료 현장에 적용할 것인지, 일반 요양병원과의 차별화를 어떻게 꾀할 것인지 의료복지 현장의 고민을 열정적으로 발표하여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어 토론에 나선 김종성 교수(한려대 사회복지학과)는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구축 방안’에서 의료, 요양, 복지, 주거 제반 생활지원 서비스를 안전, 안심, 건강을 위한 지역사회 체계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의료사협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젠다 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장애인 분야(2년간 의료사협 지원, 예산 10억), 노인돌봄(3년간 대전·안산의료사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첫 번째는 배영미 팀장(민들레의료사협)이 오래 사는 게 걱정인 세상을 넘어서는 노후의 재구성, 지역사회 주도형 노인건강돌봄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완생 학교, 어르신 건강리더 양성 등 돌봄의 주체인 당사자를 조직화한 현장 사례였다. 이어 지역사회 장애인 통합 돌봄 현황을 오춘희 실장(의료사협 장애인추진의사업단)이 소개했다. 주치의와 건강코디네이터가 케어플랜을 짜고 찾아가는 방문진료,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두는 11개 실천 단위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례였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2015년 12월)’이 통과되었다. 연합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이후 세부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끝으로 10월 10~14일 ‘생활클럽 바람의 마을, 도쿄의료생협 연수’를 다녀온 민앵 이사장(살림의료사협)이 “일본은 고령인구 14%인 시점에 특별양호홈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며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의료와 복지 통합적인 모델을 시도할 수 있는 적기일 수 있다는 제안을 던졌다.

“일본유학시절 ‘구매생협이 왜 돌봄사업을 시작했는가?’라는 질문으로 일본 사회를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고령화는 전쟁터다. 지역사회포괄케어

연대 전략이 나와야 한다. 돌봄의 대응은 한 단위에서 시도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 모든 발표가 끝나고, iCOOP협동조합연구소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했다.

심포지엄 기획 과정에 참여했던 연합회는 순천 지역사회 돌봄기관, 복지관의 참여를 기대했는데 적합한 토론자를 찾지 못했다. 고령사회 돌봄 관련해서 의료사협만큼 고민하고 실천하는 그룹이 없는 것이 현주소다. 현장에서 나왔던 주장이기도 하다.

커뮤니티 기반의 건강 조직

의료사협은 생활협동조합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서 건강 정의의 개념을 재정리했다. “건강이란 ‘아픔을 중심에 두고 자기를 극복하는 힘’이며, 몸, 마음, 세상의 안녕과 더불어 영적, 생태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발현해가는 과정이다.”

당장 아파서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을 이용한다. 건강한 노인들은 다양한 건강 소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건강수다 모임들이 한창이다. 2016년 초, 안산의료사협 건강리더 양성 과정에 참여한 60~70대 어르신들과 자신의 건강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는 ‘건강생애시계’를 함께 그려보았다. 그림 도식이 의외로 간단하다. 건강 이슈가 이렇게 없느냐고 물으니, “당뇨, 고혈압, 관절염 등 몇 가지 질환이 있긴 하지. 그게 뭐 중요해? 나 건강한 사람이야”라고 말씀하신다. 어느 분은 건강 수다에 참여하며 우울증이 해소되었다고 했다.

인천평화의료사협에선 60~80대 어르신들이 10년을 넘게 매일 체조교실에서 1시간씩 운동하고, 음식을 나누고 함께 나이 들어가고 있다. ‘봄날청춘, 노년’ 인문학 강좌에 참여하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분들이었다.

‘흰머리 휘날리며’는 살림의원과 연계된 노년 특화 운동수업이다. 만 55세 이상의 어르신들과 함께 본격적인 근력운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파

킨슨병, 소아마비, 중풍(뇌경색, 뇌출혈) 등으로 움직임이 불편하신 분들이 다. 자신이 가능한 동작들을 천천히 따라하면서 점점 할 수 있는 동작들이 많아지고, 예전에는 누군가 보조해주지 않으면 서 있는 것조차 버거웠던 분들이 이제는 스스로 서게 되는 등 지역사회에서 재활운동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커뮤니티 기반의 자발적인 건강 조직이 아플 때도, 아프지 않을 때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구조’¹¹라고 얘기했다. 이와 같이 요즘 의료협동조합에서 만나는 작은 소모임이나 회의, 교육이 있을 때면 서로 마음의 안부를 묻는다. 건강 수다를 통해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생활 조건과 보건 수준이 향상되면서 사람들은 더 오래 살게 되었고, 노인으로 사는 시간이 전체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오래전에 ‘성공적인 노화’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다. 성공적 노화에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즉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높은 육체적·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고, 사회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사는 것이다.

성공적인 노화의 삶을 보여주었던 경영학 창시자인 피터 드러커 교수는 95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현역으로 활동을 했던 인물이다. 그가 93세 때 신문기자로부터 “당신은 평생 7개가 넘는 직업을 가졌고, 교수로만 40년을 일했는데 언제가 인생의 전성기였나?”라는 질문에 “나의 전성기는 열심히 저술활동을 하던 60대 후반이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¹²

성공적인 노화란 건강한 노인, 아픈 노인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단지 준비되지 않는 노년이 재앙일 뿐. 그래서 은퇴 후의 설계가 필요하다. 은퇴 후의 인간관계가 노후 행복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하버드대 성인발달 연구’에서 드러난 바 있다. 814명에 이르는 성인 남녀의 삶을 70여 년간 추적 조사한 이 연구 책임자인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한 사람

11 임중환 외(2015). 『참 좋은 의료공동체를 소개합니다』, 스토리플래너.

12 송양민·우재룡(2014). 『100세 시대 은퇴대사전』, 21세기북스.

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을 결정짓는 것은 지적인 뛰어난이 나 계급이 아니라 사회적 인간관계”¹³라고 강조했다.

4. 고령사회를 위한 지역공동체의 모색과 준비

“국가에서도 시장에서도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동안 의료사협 고령화 준비는 지역사회 요구로 출발했다. 돌봄과 복지를 위한 재가장기요양사업인 ‘길동무’는 안산의 요양원으로, 안성의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우리 사회와 조합원에게 필요한 요구에 맞추어 변화 발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후 전략은 무엇인가. 순천 ‘고령사회 의료복지 돌봄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지역포괄케어를 위한 지역사회 연대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다.

의료사협연합회는 최근 다양한 노인 관련 시범사업과 지자체에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 중이다. 몇 가지 의료사협의 정책 제안을 소개하면서 사회적경제와 어떻게 연대 전략을 모색할지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1) 경기도 거점의 통합 돌봄 운영 모델 추진¹⁴

협동조합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을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총 747기관 중 부산시가 120기관, 경기도가 125기관, 전북이 55기관 등 특정 지자체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¹⁵ 전체 의료기관 중 양방의원 51.1%, 한의원 21.9%에 이어 요양병원은 17.6%순으로 개설하고 있는데 협동조합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중에서 요양병원을 개설하는 데가 한

13 앞의 책.

14 경기연구원(2015). 「경기도 부문별 협동조합 사업모형 및 개선방안」, 『정책연구』 2015-09.

15 의료정책연구소(2014). 「의료생활 협동조합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2014-9.

곳도 없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¹⁶ 공익적인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민을 수 있는 요양병원의 성공적 모델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사회적협동조합이니 만큼 지자체의 위탁운영 또한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의료사협에서는 지역사회 요구에 의해¹⁷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부터 다기능 그룹홈까지 설치 운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존엄케어가 실현되는 노인요양병원의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다. 재가서비스-방문간호-요양원-노인요양병원-호스피스 등 돌봄 전달 체계의 구축과 완결적인 서비스 연계는 필수적이다. 노인돌봄 one-stop 서비스 거점으로 의료사협이 운영하는 모범적인 경기도권 노인요양병원 설립이 필요하다. 김기태 소장(한국협동조합연구소)은 “특히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협동조합의 경우, 지역사회 연대를 통한 공동사업의 경우는 지방행정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가 중요하다”¹⁸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미 선행된 사회적경제 의료요양서비스 성공 요인¹⁹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 미나미의료생협의 치매환자를 위한 ‘나모’와 같은 지역 중심의 거점 만들기를 위한 전략적 제휴 사업(공동주택, 요양원, 요양병원)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활동적인 노화를 위한 ‘노인친화도시’ 체크리스트 활용

건강, 참여, 안전의 기회를 최적화하고 ‘활동적인 노화’를 돕도록 세계보건기구^{WHO}는 『노인친화도시 안내서』를 발간했다. 33개 도시에서 생활하는 노인 포커스 집단을 대상으로 완성한 체크리스트다. 이 자료는 의료협동

16 의료정책연구소(2014), 「의료생활 협동조합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2014-9.

17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새로운사회연구원(2014), 『지역의 사회적경제 돌봄서비스 활성화 위한 기초연구』,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8 김기태(2011), 「의료협동조합과 지역사회연대전략」, 의료협동조합연합회 정책토론회.

조합의 정책적 지원을 위해 기독교청년의료인회²⁰가 번역, 제작했다. 이 안내서는 정부, 자원단체, 민간부문,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도시를 더 노인 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진 개인과 단체가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다. 안내서를 잠깐 소개하면 노인 친화적인 주택 체크리스트 항목에 ‘살던 곳에 계속 살기’, ‘노인이 다닐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하기’가 포함되어 있다. 너무 당연하다 싶지만 생활 시설로 지역사회 가까운 곳에 노인 시설을 만들 때 염두에 두고 설계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교통수단, 사회참여와 고용, 의사소통과 정보, 지역사회와 의료서비스 등 앞으로 고령화 준비를 위한 제반 시설을 설계할 때 반드시 읽어야 할 안내서이다. 고령화 준비 연구모임 등에서도 반드시 학습해야 할 내용이다.

(3) 존엄하게 죽을 권리의 사회 문화 창조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무언가요?” 동두천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머니의 임종을 준비하고 있는 후배가 최근 전화로 물었다. 88세 노모의 죽음 앞에서 가족과의 관계, 재산 문제, 죽음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하소연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죽음의 맨얼굴을 애써 보지 않으려 하다가 부모나 배우자, 자식처럼 가까운 사람을 잃고 나서야 허둥지둥 죽음에 관해 생각한다. 그 한 번을 ‘잘’ 죽기 위해서는 죽음을 배워야 한다.²¹ 그래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애플 창립자 스티브 잡스는 2005년 췌장암 치료를 받고 나서 미국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유명한 연설을 했다. “곧 죽게 된다는 생각은 인생

19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새로운사회연구원(2014), 『지역의 사회적경제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 평화의료사협의 전신 평화의원 설립의 기초를 만들었으며 의료협동조합 발전기금 운영, 인력 지원을 펼치고 있다.

21 김여환(2012),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청림출판.

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큰 도움이 된다. 사람들의 기대, 자존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거의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무의미해지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이다.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무언가 잃을 게 있다는 생각의 함정을 피할 수 있다. 당신은 잃을 게 없으니 가슴이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을 이유도 없다”²²

죽음을 배우면 죽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달라진다. 자신의 마지막을 정면으로 응시하면 들쭉날쭉하던 삶에 일관성이 생기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²³ 시간이 날 때 나의 묘비명을 직접 한번 써보고, 신문에 실리는 나의 사망 기사를 적어보는 것도 좋다. 민들레의료사협에서 진행한 ‘완생학교’, 순천의료협동조합에서 시도하고 있는 ‘사전임종제’ 등을 프로그램으로 운영해보도 좋을 것이다. 살아 있는 장례식과 같은 새로운 장례 문화, 엔딩노트와 자서전을 미리 써보고 ‘사전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하는 등 존엄하게 죽을 권리의 사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경제와 공동 기획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4) 지역사회 고령화 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의료사협연합회가 총괄하던 ‘찾아가는 길동무 사업’은 2009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화가 되면서 단위조합이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원 운영의 주체가 되었다. 최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많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역거점 어르신 사랑방: 사회복지관 모형, 의료사협 모형’을 운영하는 ‘안산 365 노인 건강복지돌봄네트워크’, 민들레의 ‘지역사회주도형 노인건강돌봄’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연합회가 지원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이상 개별 단위조합차원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 의료사

22 송양민·우재룡(2014). 『100세 시대 은퇴대사전』, 21세기북스.

23 김여환(2012).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청림출판.

협연합회에서도 장기요양위원회를 뛰어넘어 보건, 의료, 복지 통합 돌봄 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순천 심포지엄에서도 제기되었던 사안이다. 특위 주관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고령화 주제로 연구모임을 만들고, 지자체,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지역 순회 심포지엄을 계획해도 좋겠다. 의료사협뿐 아니라 2014년 한살림서울에서 돌봄 관련 정책간담회가 개최되었듯, 사회적경제 진영에 고령화 준비 돌봄 연구모임, 정책토론회를 제안하는 바이다.

이제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 돌봄의 문제는 누구 한 개인이나 단체만의 위기의식이 아니다. 돌봄의 건강 안전망을 위해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고령사회 준비로 반드시 거론되는 완화케어센터, 환자 치유센터, 힐링 공간에 대한 요구, 아픈아이돌봄²⁴ 시설 등은 의료사협만으로 이룰 수 없다. 돌봄의 질 관리에 있어 중요한 감성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정 설계, 폭넓은 다기능 돌봄 통합 시설의 현장 적용 사례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생협평론』 기획은 연대 전략의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다.

바람직한 보건의료와 복지는 사회적 신분, 인종, 국적, 재산, 종교, 성별, 장애, 연령에 따른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건강 불평등의 문제는 지역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공공의료 부문이 하지 못하는 것을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내고, 이윤보다는 공공의 이익과 주민 건강 증진에 힘쓰고, 이를 위해 주민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상시적인 주민 조직(마을공동체)이 필요하다. 고령사회 준비,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건인의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들 간의 협동, 민관 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24 (가)아픈아이 돌봄협동조합 · (가)해든상담협동조합(2014). 『서울시보건의료분야 협동조합 설립지원 최종보고회 자료』

여민동락공동체의 일상

“ 나눔과 배려를 통해
복지와 마을이 만나고
공동체 복지와 공동체 문화,
나아가 공동체 경제와 교육이 이어지는
‘마을공화국’의 완성,
그것은 지금까지 제대로
시도해본 적이 없는
복지와 자치의 새로운 접근이자
집단적 지향이다.
마을 안에서 자립과 자치
그리고 직접민주주의의 싹을 틔우는
마을공화국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공동체 복지’의 미래다. ”

1. 여민동락공동체

농촌의 현실은 암울하다. 수입 개방의 파고와 해마다 널뛰기하는 농축산물 가격 등은 농민들을 절망케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공동체’ 운동이 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당수가 실패로 돌아갔다. 지역민과 호흡하지 못하는 공동체의 폐쇄성이 큰 원인이었다. 전남 영광군 묘량면의 ‘여민동락(與民同樂)공동체’가 지역사회와 주민 중심의 자주, 자립, 자치의 마을공동체를 목표로 삼은 이유다.

여민동락공동체는 작고 가난한 비영리단체다. 소박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동행하고 있다. 폐교 위기의 시골 학교를 살리려 애쓰면서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농촌의 교육과 문화, 복지와 경제의 부흥을 위해 힘쓰는 일터 공동체다. 특히 지역 주민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복지 너머의 복지’를 꿈꾼다. 농민들과 더불어 농사를 짓고 밥을 먹으며 작은 시골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농촌의 삶터를 새롭게 살리는 지역 일체형 공동체를 지향한다.

2. ‘할매손 모싯잎송편 공장’ 부터 ‘동락점빵’ 까지

2009년 ‘여민동락 할매손 모싯잎송편 공장’을 설립했다. 마을 어르신 13분이 참여해 떡을 만들었고, 40여 분은 작목반을 꾸려 모싯잎을 생산했다. 지역이 쌀 중심이다 보니 일자리가 거의 없었다. 모싯잎송편을 지역 특산품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모싯잎 재배를 고민했다. 지천에 모싯잎이 널려 있었고, 재배도 비교적 쉬웠다. 농협에서 대출 받아 모싯잎송편 공장을 세웠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차 판로가 확대됐다. 처음에는 여민동락 후원자를 대상으로 판매했지만 쇼핑몰을 만들고 지역 축제에 참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불특정 고객을 확보했다. 현재 3억 원 규모의 매출

을 올리고 있다. 무엇보다 몸이 허락하는 만큼의 노동으로 어르신들의 사회적 관계가 복원됐고, 삶이 풍성해졌다.

마을 가게도 만들었다. 사람과 사랑을 잇는 마을 가게 ‘동락점빵’이다. 묘량면은 낙후되어 있어 구멍가게도 없었다. 구멍가게는 주민들의 염원이었다. 먼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구매 난민’을 위해 탑차를 이용해 이동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사회서비스형 유통사업단을 만든 셈이다. 다양한 생필품을 공급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구매하고 수익은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구조다. 2014년 동락점빵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했다. 전남 지역 1호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지역 주민들이 이사진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경제든 복지든 지역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여민동락의 철학이 담겨 있다. 동락점빵 이동장터는 여민동락공동체 마을 살이의 꽃이다. 1톤 트럭에 생필품을 싣고 차량 방송을 하며 마을과 들녘을 돌아다닌다. 매주 장터에서 만난 주민들이 300여 명 정도다. 그만큼 사연도 많고 눈물도 깊다.

한 어르신은 소화가 안 된다며 ‘사이다(페트병)’ 한 병을 달라신다. 집까지 가져다 드리며 “자꾸 소화가 안 되시면, 사이다 대신 ‘약’을 드셔야 헌디” 하고 당부까지 하고 나온다. 일주일 뒤 다시 만난 어르신, 다짜고짜 집으로 끌고 가신다. “아니 당최 안 된당께. 한번 봐주소잉.” 그때까지도 텔레비전 리모컨이 안 된다든가, 가전도구가 안 되나보다 했다. 그런데 아뿔싸! 어르신께서 내민 것은 지난주에 사셨던, 그 사이다였다. 사이다 뚜껑을 못 열어서 아직까지 못 드셨다는 말씀. 며칠 전에는 망고주스를 사셨다. 이번에는 바로 뚜껑을 딴 다음 다시 잠가 드렸다. “어르신! 망고주스 제가 따왔으니까, 이렇게 흔들어서 따라 드세요~” 이렇게 산다. 동락점빵은 단순한 이동장터가 아니다. 협동조합 경제사업처럼 보이지만, 집집마다 주민들의 살림을 살피고 안부를 확인하는 농촌 복지의 과정이기도 하다. 어르신들의 마지막 삶과 동행하며 우애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평생을 농부로 살다가 이제 가장 작고 힘없고 가난한 생의 끝에 와 있는 분들

이다. 충만한 삶을 기대할 순 없다 해도, 생의 끝자락에 외롭지 않게 기댈 어깨 정도는 옆에 있어야 마땅하다.

3. 협동조합과 농민 그리고 ‘공동방아’

올해 수매가 폭락에 대한 대책회의 때 있었던 일이다. “부모가 물려주신 땅으로는 네 명 식구 입에 풀칠도 하기 어려웠어라우. 농사 양을 늘려야 살 것 같아서 땅 사고 임대하고 인자 논농사 120마지기요. 사람이 없으니까 기계 사고 창고 짓고 하다가 도시에서 번 돈 다 바닥났지라우. 7년 지나 남은 건 빚뿐인데 쌀값마저 이라고 툇값잉께 앞이 캄캄하당께요.” 농사만큼 보람된 일이 없다며 30년 가까운 도시 생활을 접고 귀향한 지 7년차인 이장님의 하소연이다. 결국 도시녀인 아내가 농사 외 다른 일로 생계를 돕는 단다. 더불어 행복한 농촌이 오기는 올까. 농촌에서 농사로 밥걱정 않고 사는 게 가능하거나 할까. 그래서다. 2015년부터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 삶’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농민 조합원들이 주인이 되어 쌀 수매부터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공동방아’라는 이름으로 마을 농가의 쌀을 도시의 회원들에게 연결하고 있다. 쌀 주문을 받아 매월 적당한 날에 방아를 찧어서 택배로 공급하는 일이다. 공공기관 몇 곳이 쌀 구입에 참여하면서 공동방아 수량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나락 매입에 대한 협의와 결정은 ‘동락점빵’ 사회적협동조합 이사님들의 몫이다. 대부분 이장님들의 이사로 계셔서 가격 결정이나 품질 보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생태주의니 자연주의 농법이니, 소농과 고령농도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농촌이니 하면서 안간힘을 써왔지만, 좋은 말만큼 현실은 호락호락하질 않다. 당장 농촌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농민들의 전투가 가혹하리만치 처절한 다탄다.

협동조합 회의 도중 이장님 휴대전화가 울린다. 인근 마을에 사시는 고

령 농민인데 쌀값 걱정, 판로 걱정엔 한탄을 하시는 모양이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쇼이잉. 내가 지금 어르신 께 3,000원 더 쳐서 내줄라고 이야기 중인께잉”, “오매오매 고맙네야. 뭘 일이당가. 그럼 자네만 믿네잉” 하고 끊으신다. 대화가 짠하다 짠하다.

4. 비닐하우스 ‘마을 보따리전’

‘장암골 마을 보따리전’은 추수 끝나고 김장철 준비하는 딱 그 사이 열린다. 절기로 보면 입동^{立冬}과 소설^{小雪} 사이다. 벌써 몇 해째 이어지고 있다. 서양식으로 치면 추수감사절이라 해야겠다. “형편이 그렇게 간단히 준비하드라고잉.” 처음엔 그러셨다. 허나 마을마다 분주하다. 간단히 준비해서 조촐하게 잔치를 열자는 소박함(?)은 늘 온데간데없다. 보태다 보면 그때마다 판이 커지고 만다. 새로 김치를 담가 떡국 한 그릇 나눠먹자 했지만, 김치 담그는 일부터 예사롭지 않다.

며칠 전부터 부녀회장님 차 트렁크에 이집 저집 배추가 모인다. 흰 무도 보이고 빨간 무도 보인다. 누가 봐도 한 집 채소가 아니다. 이장님은 감도 한 포대 내놓으셨다. 재미난다. 하루 전 계란지단 부치고 가늘게 썰어서 담아놓았다. 파도 미리 송송 썰어놓으시고, 김 가루도 빼놓지 않고, 소고기도 삶아서 얇게 찢어놓았다. 떡국 고명용으로 모두 손색없다. ‘항꾸네’ 모이려면 마을회관으로는 턱도 없다. 그간 품앗이학교에서 그린 그림도 전시하고 광주에서 초청한 공연팀의 전통춤과 판소리 공연도 봐야 한다. 밖은 추워서 엄두도 못 낸다. 그렇다고 그럴싸한 실내 공간도 없다. 그래서 택한 게 비닐하우스다. 안성맞춤이다. 탁월했다. 늘 보던 곳이라 만만하고, 난방기 없어도 따뜻하다. 비닐하우스는 농부들에게 안방만큼이나 소중한 또 하나의 집이다. 다용도 전천후 공간 말이다.

마을보따리 문화난장 행사로 곡식을 말리고 보관하는 농사 전용 공간

이 이제 미술과 음악이 공존하는 공연장으로 탈바꿈했다. 손을 뻗어보니 춤사위를 방해하지 않을 만큼 공간도 제격이다. 품앗이학교 미술시간에 그린 그림도 걸고, 뼈뿔뼈뿔 쓴 보따리전 축하 글도 걸었다. 한글 실력이 일취월장한 어르신들의 시 한 편도 떡하니 전시했다. 여기저기 화기에애하다. “아따 월암댁 참 잘 그렸소잉”, “우리 선상이 잘 갈쳐서 그라요” 하며 대거리도 주고받는다. 배우와 관객이 따로 없이 마당극으로 이어진 판소리 공연은 비닐하우스를 최고의 절정으로 뜨겁게 달구고 만다. 누가 봐도 재미난 전시관이자 미소 절로 나는 공연장이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이렇게 산다. 농촌식으로 말이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다. 세련되지 않아도 좋다. 그 안에 꾸밈없는 삶이 그대로 있으면 그만 아닌가.

5. 마을학교

여민동락공동체는 속칭 ‘복지재벌(?)’이다. 마을 곳곳마다 문어발처럼 마을복지센터를 두고 있다. 23개나 되는 전남 영광군 묘량면 마을회관이 ‘여민동락 출장소’인 덕분이다. 마을마다 있는 마을회관을 마을복지문화센터로 만들어 마을공동체 안에서 주민들 스스로 우애와 협동의 복지를 이루도록 신명을 돋우는 일, 그게 바로 지역공동체가 여민동락에게 내린 마을복지 심부름이다. 그래서 시작한 게 일명 ‘장암산 마을학교’다. 여민동락 정면에 482m의 검은높이로 병풍처럼 펼쳐진 산, 정상 일대가 평평해서 앞마당처럼 다정하고, 산세가 마치 물위를 떠가는 조각배처럼 생겨 주변의 다른 산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산, 그 산이 바로 마을의 정신과 기운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장암산^{場岩山}이다.

농한기 때 농촌마을은 마을회관이 시끌벅적하다. 주민들이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한동안 병원에 다니시느라 못 나오시던 동네 어르신들까지

지 모두 모이니 마을잔치가 따로 없다. 건강 체크와 건강 체조를 한 뒤에는 민요교실까지 이어진다. 진도아리랑과 뱃노래를 배우고, 동네 누구누구 맥 자녀 이야기가 줄줄 이어진다. 특별한 차림이 아니라도, 김자반, 동치미, 그리고 김치 없어서 함께 준비한 점심밥상에 더불어 둘러앉으니, 더 이상 즐거울 수 없다.

궁극적 목표는 따로 있다. 이런 공감과 연대의 과정을 거쳐 장암산 마을학교의 꿈은 단연 '마을공동체'의 복원과 완성이다. 이른바 마을회관을 싹틔줄 거점으로 삼아 마을별 대동회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과거 촌락 사회의 운영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자치적인 집회 조직인 대동회다. 과거 대동회에서는 마을의 임원 선출, 예산과 결산 보고, 공유재산의 관리 대책, 규칙 제정, 공부^{공부}의 대책, 임원의 보수 결정, 수리시설과 농로 등 마을 공동의 개발 대책 등을 비롯한 마을 생활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공동이익과 공동행위, 사회적 협동에 관한 문제가 토의, 결정되었다. 의사 진행은 촌락의 공식적 지도자인 이장이 주관하지만, 중요한 일은 유지로 불리는 비공식적인 지도자들과 미리 상의해서 대동회의 공론에 부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대동회를 바탕으로 대동경제, 요새 표현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새로운 농촌 경제의 모델을 발굴, 발전시켜가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을학교는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이러한 상호부조 정신을 강조하여 사회적 협동을 강화하는 조력자의 역할이자 농촌마을의 희망을 설계하는 공동체의 학습장이다. 돈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물질적 지원 못지않게 공동체적 인간관계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중시한다. 장암산 마을학교는 여민동락공동체가 제시하는 공동체 중심, 마을 복지의 아주 작은 시도다.

6. 행복한 퇴임식

송편 만드는 어르신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이 80세다. 73세부터 시작했으니 횡수로 8년차다. 가장 젊은 분은 69세, 대부분이 70대 중반이거나 그 이상이다. 농사는 이제 거의 짓지 않는다. 논농사야 동네 젊은 청년이 기계로 다 해주니, 쌀 사 먹는다 생각하고 기계값을 주신다. 그런데 어르신들과 하는 일이 늘 그렇다. 시간이 지날수록 숙련 기능이 느는 게 아니라, 병원 갈 일이 늘다. 자연스럽게 후임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다들 아직은 정정하다고 하시지만, 본인들이 느끼기에도 생산량이 많이 떨어졌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른 떡집에선 하루 만에 끝낼 일을 우리는 이틀사흘 걸린다. 만드는 속도가 느려진 거다. 하루에 얼마나 생산하느냐가 제조 단가를 결정짓는데, 굳이 이야기하자면 떡 공장 경영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얘기다. “우리는 할 만큼 했제잉. 벌써 7년이 넘었는디. 인자는 좀 젊은 것들(?) 바꿀 때가 되었어. 빠릿빠릿한 젊은 새댁(?)들로 말이여.” 그레봐야 60대다. 후임자를 찾는 일은 어르신들이 하시기로 했다. 그런데 후임자 구성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아직은 본인들 만한 사람들이 없단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하하.

10년차 세월이 가니 동락원 농장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 중에도 퇴임(?)하실 분들이 여럿이다. 다들 여민동락 일자리가 생길 때부터 함께했던 어르신들이다. 평생 농사만 짓다 각종 만성질환을 안고 사시는 어르신들. 이제 어쩔 수 없이 세대교체가 필요해졌다. “월급 받아서 손주헌티 봉투를 줬당께.” “지난번 설 때도 세뱃돈을 10만 원이나 담았어라우.” “어른 노릇 함께 좋습디다.” 그런 말씀들이 떠나질 않는다. 달인들을 위한 ‘행복한 퇴임식’이란 뭘까, 그게 고민이다.

7. 여민동락공동체의 헌법

여민동락공동체는 처음부터 자립과 자치의 원칙과 취지에 맞게 설립됐고, 지금도 그 헌법대로 활동하고 있다. 첫째, 노동과 생산을 통하지 않은 모든 외부의 기부와 후원은 반드시 그 십 분의 일을 쪼개, 더 가난하고 후미진 지역과 단체와 시설에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국가의 보조금과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되, 다만 국가의 보조금과 인건비는 재정적 독립과 경제적 자립을 완벽하게 이룬 뒤에,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의 감당 가능한 자금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아이들을 도시로 유학 보내지 않는다. 마을공동체 활동의 기본은 지역에 '사는' 것이다. 지역 사회의 작은 시골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주민들과 함께 교육과 문화를 살려가야 온전히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다. 넷째, 농촌 주민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밥을 먹으며 농부로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을활동가 혹은 지역운동가라 자칭하면서 주민들 속에서 '헌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웃으로 함께 살며 주민들의 살림 모양을 닮아가고 농민들에게 여쭙고 의논하고 부탁하면서 온전히 마을구성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처럼 여민동락은 농촌의 경제, 복지, 교육, 문화의 융합·복합적 접근과 사회적경제의 원칙에 의거해 마을공동체를 살려가고 있다. 여민동락 설립 과정에서도 돈 있는 사람은 돈을, 관계가 풍부한 사람은 관계를, 행정력이 있는 사람은 행정력을 출자하면서 시작했다. 여민동락공동체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구성원 간의 절대적인 '신뢰'이자 끊임없는 '학습'이다. 여러 난관도 있고, 일탈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관계의 축적을 통한 신뢰의 확인 없이 공동체는 성공할 수 없다. 지속 가능한 신뢰의 확장은 끊임없는 학습에 기반하지 않고는 오래갈 수 없다. 여민동락공동체는 '월요학당'을 통해 학습하고 성찰하는 걸 게을리 하지 않는다. 공동체는 늘 갈등과 반목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평범한 살림살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조절 통제하고 신뢰로 승화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학습과 성찰의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여민동락공동체는 지금 ‘동락점빵’, ‘할매손송편’, ‘행복일자리 영농협동조합’을 운영한다. ‘노인주간보호센터’나 ‘학교살리기’ 같은 복지와 교육 활동 외에도 다양한 협동조합 유형의 사회적경제를 실천해간다. 협동조합은 한마디로 동업이다. 동업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규모가 크고 사람이 늘어갈수록 그 실패의 가능성은 그만큼 더 커진다. 그래서다. 여민동락이 만드는 협동조합은 지극히 가난한 협동조합이다. 작고 소박하게, 마을에서 사는 주민들이 그 마을에 거점을 두고 만들어가는 구조다. 사람 중심, 마을 중심이라고 해야겠다. 큰돈을 벌 수는 없다. 그러나 큰 위험 없이 큰 행복을 추구하는 걸 목표로 한다. 행여 수익이 생기면 마을기금 혹은 지역사회 공유자금으로 축적한다. 뜻이 좋아야 그 과정이나 결과에 따라 분열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당장의 성과보다 오래도록 길게 궁리하고 신뢰를 축적하는 관계망을 우선시한다. 그래야 온전히 사회적경제 혹은 협동조합이 ‘좋은 사람들과 좋은 뜻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 기업이 된다. ‘사업’이 아니라 ‘살림’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좋은 뜻만 있고 ‘경영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 영리기업 이상의 수고와 노동이 필요하고, 부단히 제도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전문가들과 상의하는 부지런함을 보여야 한다. 워크숍이든 강연회든 아니면 관련 저서와 자료, 논문들을 접하고, 선진지 견학과 선구자들과 자주 어울려야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공부와 경험과 신뢰, 나아가 마을 속에서의 관계가 깊어지고 쌓이다보면, 새로운 상상력을 통해 또 다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그것이 바로 협동의 힘이고 협동조합의 긍정성이라고 생각한다.

8. 지방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첫째, 공동체 생태계에 대한 '관점과 인식'의 제고다. 현장 주체는 분명 민간이다. 민간의 결사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율적인 운동이 중요하다. 그래서 민간의 참여로 이뤄가는 공공성의 확장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이 옳다. 민간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의 바탕이 없이 지방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의한 공동체 활성화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지금까지 일부 지방정부가 실적과 과속에 의해 공동체 생태계를 교란시킨 측면도 있어온 바, 민간을 행정 행위의 하위 체제로 인식하는 편파적 관점을 개선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지방정부가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 자원을 배분하고 인력 배치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늘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지방정부의 공동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민간의 공익적 사회적경제 활동을 거들어주고, 관행에 의한 저해 요인을 제거해주는 일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둘째, 작고 강한 모범 사례를 만들어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일이 중요하다. 기초지자체는 현장형 모범 사례를 만들어내고, 이를 광역지자체가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점진적 단계를 거치는 게 맞다. 광주 광산구는 복지관 어르신들이 중심이 된 노인협동조합이 있고, 청소 환경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청소협동조합이 있는데, 이를 모델로 전국적 영향력을 갖는 튼실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마을 속에서 협동조합과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널리 확산하는 기회를 만들기도 했다.

셋째, 민관 협력과 학습 조직의 구축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했듯이 사회적경제의 수준은 그 부서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 공무원들이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필요에 대한 신념이 있고, 그 분야에 탁월한 전문적 역량을 갖춰야만 정책과 제도의 지원에 있어 다양한 민원 대응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건 상식에 해당한다.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전문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사회적경제 행정 동아리도 만들어서 두루 탐색

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민간의 학습조직도 마찬가지다. 학습 없이 진화 없고, 기록 없이 축적 없다. 행정은 민간의 학습 조직을 지원하고, 민관이 함께 공부해가면서 지역 특성과 환경을 분석하고, 장차 중기 지역 단위 사회경제적 종합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9. 우리의 이상은 마을공화국

마하트마 간디는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라는 책에서 “인도를 살리기 위해선 70만 개의 마을공화국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마을을 살려야 나라가 산다는 수준이 아니라, 마을이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현장이라는 뜻이다. 나눔과 배려를 통해 복지와 마을이 만나고 공동체 복지와 공동체 문화, 나아가 공동체 경제와 교육이 이어지는 ‘마을공화국’의 완성, 그것은 지금까지 제대로 시도해본 적이 없는 복지와 자치의 새로운 접근이자 집단적 지향이다. 마을 안에서 자립과 자치 그리고 직접민주주의의 싹을 틔우는 마을공화국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공동체 복지’의 미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보다는 물질이 최상의 가치로 대접받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줄고, 이웃과 나누는 우애와 협동의 여유는 찾을 수 없는 위험사회에 처해 있다. 노동은 더욱 불안정해졌고, 생태환경의 위기는 보다 심화됐으며, 살림의 격차는 극도로 벌어졌다. 오직 ‘잘살아보세’를 외치며 맹렬하게 달리면서 개발과 성장에 몰두하는 동안 여럿이 함께 잘 사는 방법, 공동체 정신은 점점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 다들 행복한가? 우리 이웃들은 안녕한가? 우리 사회는 건강한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많은 이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오래도록 궁리하고 실천해오고 있다. 사람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서게 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생의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지혜를 모으고 있다. 남녀노소 빈부 강약이 제 마당 제 삶터에서 누구라도 차별당하지 않고 서로 돕고 나누는 마을과 일터를 만드는 일로 어울리고 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철학으로 보육과 교육을 바라보고, ‘마을에서 어린 한 명을 잃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소신으로 복지 접근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단순히 골목길만 고치는 게 아니라 쓰레기, 범죄, 거짓은 사라지고, 사라진 마을잔치와 웃음과 놀이를 살려가며 변화된 마을과 지역, 그리고 그 바탕을 튼튼히 하는 방향에서 문화와 환경에 관심을 두는 추세다. 그 중심에 주민을 세우고 마을리더를 키워가며 풀뿌리 자치의 자연력과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하여 사람, 삶, 살림의 근본을 제대로 뿌리내리는 일을 우선시하는 지역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희망적이다. 이제 다양한 범주에서 활동해온 개별들의 실천력을 모아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 확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협동과 연대의 살림살이, 즉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주민 조직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사람이 사람답고 사회가 사회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데 보다 광범위한 힘을 모아야 가능한 일이다.

우선 민과 관이 협력하여 사람과 사회의 변화를 일궈갈 태세를 갖추는 일부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선구적인 모범을 착실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바람직하고 다행스럽다. 한 축으로는 협동조합을 통해 우리가 사는 마을의 자연과 인적, 문화적 자원들을 조사하고 체계화해 이를 바탕으로 마을을 위해 일할 사람을 키우고 도와야 한다.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삶터와 일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중심에 둔 공익적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다른 한 축으로는 마을 안팎에서 주민과 주민을 잇고, 시민사회단체, 기업, 자치단체를 연결하면서 여러 생각과 자원들이 어울릴 수 있는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 나아가 자립과 협동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주민들 속에 본래부터 존재하던 ‘더 깊은 선의 뿌리’를 낙관하고, 좋은 사람

과 좋은 체제의 선순환을 이뤄가려는 모양새를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다. 우리는 더불어 살고 싶다. 우리에겐 옹기종기 마을을 이뤄 온 동네가 떠나없이 잔치를 열고 마음을 여는 소박한 꿈이 있다. 자치를 통해 복지를 완성하고 협동조합과 마을민주주의를 통해 사람의 사람다움을 키워가고 싶다. 가족·세대 간에 할 얘기가 많아지고, 이웃의 삶이 궁금하고, 우리 아이들을 같이 키우는 넉넉한 사람의 숲, 마을의 숲을 이루고 싶다. 그 마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다. 모이고 수다 떨고 꿈을 꾸는 사람들, 세상을 바꾸기 위해 ‘바짝 옅드려’ 바닥에서 마을을 살려가고 있는 이들 안에 이미 그 꿈은 현실로 다가와 있다. 그것이 바로 ‘마을공화국’이다. 그래서 바로 ‘마을공화국’이다.

장지연

한살림서울

돌봄기획팀 차장

고령화의 도전과 한살림의 대응

“ 한살림돌봄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지향한다. 돌봄을 매개로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건강한 이웃들이 돌봄을 제공하고, 나이가 들면 젊은 세대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돌봄을 통한 선순환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 삶의 자립 활동이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 ”

10년 후, 인구 5명 중 1명은 노인

2016년 서울지역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2.6%이며 10년 후인 2026년에는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자다. 서울지역은 2005년 고령인구 비중이 7.1%(고령화사회)를 넘어선 후 2019년에 고령인구 비중이 14.3%(고령사회)를 넘어섰고, 2026년에 20.0%(초고령사회)에 접어든다. 고령 가구 중 혼자 살고 있는 가구는 2016년 현재 전체 가구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나 2030년에는 9.1%로 2016년보다 약 2배 증가할 전망이다. 2015년 서울지역 65세 이상 고령자의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53.1명으로 2000년(25.4명) 대비 2.1배 증가했다.¹

부모를 모시는 자식들이 있어도 그리 안심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장기요양보호 시부모를 돌보는 며느리들은 불균등한 부양 부담으로 인한 긴장과 갈등, 과거로부터 지속된 고난과 시련, 홀로 책임져야 하는 부양 부담, 가족의 평화를 위한 희생, 그리고 두려운 미래 등을 경험한다. 부양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며느리들도 고령이 되어 건강과 경제력이 나빠진다.² 아픈 부모를 돌보라, 결혼한 자식의 아이까지 봐줘야 하는 부모의 삶은 참으로 고달프다.

한살림 조합원 역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고 고령화로 인한 문제 인식도 함께하고 있다. 고령화의 문제, 돌봄의 필요를 협동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가? 2016년 11월 11일 서울 aT센터에서는 “성장을 넘어 성숙 사회로: 살림운동의 새로운 모색”이란 주제로 한살림 30주년 기념 대화마당이 열렸다. 대화마당은 한살림의 첫 마음으로 돌아가 급변하는 시대 상황을 진단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모색하는 자리로, 세 가지 세션별 주제 중 하나는 ‘돌봄과 지역 커뮤니티’였다. 그만큼 ‘돌봄’이 한살림에서 중요한 시대

1 경인지방통계청(2016). 「2016년 서울지역 고령자 통계」

2 한국노인복지학회(2014). 「장기요양보호 시부모를 돌보는 며느리의 경험」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과제라고 볼 수 있다.

한살림돌봄의 지향

한살림은 1986년 12월 4일 사람과 자연,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공동체 사회를 꿈꾸며 출범했다. 한살림의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이라는 사명은 조합원의 참여와 변화가 곧 세상의 변화로 이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생협 조합원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객체이면서 동시에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인 것이다.

지난 30년간 한살림은 조합원과 지역의 필요를 협동으로 해결해왔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협동을 통해 건강한 먹을거리를 나누었고 한국의 유기농업이 성장하는 데 이바지했다. 그러나 조합원은 생활자로서 먹을거리 이외에 많은 필요를 가지고 있다. 조합원들도 우리 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의제로 돌봄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돌봄은 누가 누구를 돌보는 일방적인 것이 아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웃과 이웃이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한살림서울의 돌봄은 이러한 관계 맺음을 통해 먹을거리를 함께 해결하는 생협을 넘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삶의 자립을 이루는 것을 지향한다.³

한살림서울이 돌봄에 대해 이야기를 꺼낸 것은 2012년이었고, 돌봄에 대한 조합원의 의향 조사를 기초로 제4차 중기계획(2013~2015)에 돌봄을 주요 의제로 선정하여 201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돌봄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사회의 세미나, 학습회를 거쳐 2014년 조합원 돌봄 설문조

³ 박혜숙(한살림서울 이사장, 2016). 『한살림돌봄, 새롭게 삶의 자립을 꿈꾸다』, 한살림 30주년 기념 대화마당 자료집, 『성장을 넘어 성숙 사회로, 살림운동의 새로운 모색』.

사(5,902명 참여)를 바탕으로 돌봄정책을 마련했다.⁴

2014년 한살림서울 조합원 돌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고령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 관심도는 상당히 높았다. 고령자 돌봄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조합원들이 ‘취미활동, 자아개발, 봉사활동’을 하며 살고 있는 동네, 살고 있는 집에서 필요 시 ‘개인 전문 인력’을 통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한살림에서 고령자 관련 서비스를 시작한다면 ‘고령자 맞춤 식단의 도시락 서비스’와 ‘재가돌봄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결과를 토대로 2015년 한살림서울은 어르신아카데미를 열어 60세 이상의 조합원들을 만나는 활동을 시작했고 기존의 먹을거리 공동 구입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 조합원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2016년에는 아이방문돌봄사업과 더불어 6월부터 어르신방문돌봄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현재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지역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한살림돌봄

돌봄은 스스로를 돌보고 이웃을 돌보는 것이다. 마을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다. 그 속에서 사람의 관계가 생긴다.

한살림돌봄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지향한다. 돌봄을 매개로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건강한 이웃들이 돌봄을 제공하고, 나이가 들면 젊은 세대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돌봄을 통한 선순환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

4 앞의 자료집

고령으로 혼자 사는 이웃의 안부를 묻고, 산책을 함께하고, 식사를 챙겨주고 가까운 생협 매장에서 장보기를 하며 고령자 모임을 할 수도 있다. 때론 활기찬 노후를 위한 교육을 받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돌봄 활동과 일을 찾을 수도 있다. 이런 삶의 자립 활동이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

노화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때 집에서 머물며 이용할 있다면 기존의 사회적 관계도 유지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데이케어센터 등의 이용시설과 요양원 등의 생활시설도 폐쇄적이지 않은 돌봄 환경을 구성하고 지역과 소통한다면 고독감과 상실감은 감소할 것이다.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도록 돕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그 가치에 비해 매우 낮다. 고용 불안정과 낮은 임금도 돌봄 노동을 지속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 주체적으로 돌봄 운영에 참여하고 활동하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 중심, 생명 가치의 따뜻한 한살림어르신방문돌봄사업

한살림서울은 지역에서 서로 돕는 어르신돌봄을 고민하면서 방문돌봄을 준비 중이다. 누구나 노화와 질병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시기를 맞이한다. 그 시기는 '나'에게 천천히 혹은 갑자기 다가올 수 있다. 막상 돌봄을 받아야 할 때, 생활 시설에 바로 입소한다면 기존의 삶이 급격히 변화될 것이다. 어르신돌봄은 내가 돌보아야 하는 부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곧 다가올 '나'의 문제이다. 집으로 방문해서 돌봄을 제공한다면 기존의 '나'의 생활은 유지되고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한살림어르신방문돌봄사업은 한살림 돌봄의 비전과 이념을 바탕으로

운영한다. 조합원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고령 조합원과 지역 주민에게 참여와 협동,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방문돌봄을 제공하여 기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살림어르신방문돌봄사업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기존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자존감과 신체 기능이 떨어지지 않게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거나 자원 활동과 연계해서 사회·문화 활동을 지속할 있도록 한다. 방문돌봄은 자신의 생활공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상생활과 추억으로부터 단절되는 낯선 환경이 아니라, 추억이 가득한 물건들이 가득한 정든 집에서, 어르신 본인이 원하는 돌봄 욕구를 잘 경청하고 서로 소통하여 따뜻하고 안전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존중받는 돌봄이 이루어진다면, 본인의 만족도도 매우 높아지고 생활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한살림어르신방문돌봄사업은 어르신이 필요로 하는 방문돌봄을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나이가 들어 살고 있는 마을에서 가벼운 돌봄이 필요하거나, 부모님을 돌보기 어려운 환경에 있을 경우 양질의 방문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등급을 받은 어르신부터 대상자에 속하지 않으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까지 한살림어르신방문돌봄이 찾아가고자 한다. 또한 지역 연계, 자원 활동 등으로 요양 외에 생활의 돌봄 필요를 해결하고자 한다.

한살림어르신방문돌봄사업은 조합원의 참여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살림에는 30년의 세월을 함께해온 조합원들이 있다. 아이를 기르던 시절, 먹거리 활동으로 한살림을 만났다면 조합원들은 이제 서로 돌보는 활동으로 한살림을 만난다. 돌봄의 이용자와 제공자로 참여하여 생활을 함께 돌보고 나누며, 살고 있는 지역에서 오래도록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지지한다. 돌봄 제공자로 참여한 조합원은 나이가 들어 이용자가 되어 돕고 순환하는 조합원 참여 방식을 만들어간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과 돌봄 제공자는 서로 간의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한다. 한살림어르신방문돌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려면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관계 형성과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돌봄 제공자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하며 비밀보장을 통해 사생활 보호를 해야 한다.

방문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 신뢰와 더불어 돌봄 제공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 일반 요양 현장의 낮은 임금, 노동 불안정, 낮은 사회적 인식은 돌봄의 질을 저평가하게 만든다. 때문에 돌봄을 제공하는 조합원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한살림어르신방문돌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살림은 생명살림의 가치로 안전한 맞춤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조합원의 성장 로드맵을 구축하고 지원한다. 협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영역과의 연대를 통해 방문돌봄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한살림돌봄의 향후 방향

한살림돌봄은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 시작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의식과 고민들을 확인하고 방안을 마련해가면서 ‘협동의 힘’이 지역에서의 서로 돕는 돌봄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첫째, 조합원이 이용자와 제공자로서 돌봄의 사업과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돌봄의 주제를 제공하고 활동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 둘째, 조합원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방문돌봄을 시작한 것처럼 조합원의 생애주기에 따라 돌봄의 영역과 범위를 확인하고 차츰 넓히고자 한다. 셋째, 이를 토대로 지역에서 돌봄의 관계망을 만들어 생협의 새로운 돌봄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30년 전, 한살림이 먹을거리 위기를 자립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것처럼,

10년 후에는 지금의 저평가되고 상품화된 돌봄을 서로 돕는 관계망으로
만드는 그날을 기대해본다.

특 집

협동조합과함께하는

행복한 노후

좌담

- 참석 **김미선** 전 양천아이쿱생협 이사장
김종희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¹
밝음의원 의사
우미숙 전 한살림성남옹인 이사장
추경숙 환경연합 에코생협 부이사장
마을기업 정지&마루 대표이사

사회·정리

김형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조합원의 눈으로 노후를 꿈꿔보다

때 2016년 11월 8일(화)

곳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3층 꿈꾸락 회의실

¹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는 원주를 포함하여 전국에 22개 주민참여형 지역건강공동체를 추구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의료협동조합'으로 통일하여 지칭한다.

사회 ‘협동조합과 행복한 노후’라는 주제로 네 분을 모셨습니다. 각자의 소개와 함께 협동조합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협동조합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편안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미숙 1997년 한살림에 가입하고 소비자조합원으로 한살림을 이용했습니다. 40대에 접어들면서 사회활동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특히 제게 익숙한 한살림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출판사 등 편집 홍보 관련된 경력을 갖고 있었던 터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소식지 작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죠. 직접 참여 의사를 밝히는 조합원이 드물었는지, 조직에서도 반겨주더라고요. (웃음) 당시 분당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우연하게 시기가 맞물려 ‘한살림성남 용인’ 창립 멤버로 참여했고 소식지 발간 업무를 전담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활동이 이사장까지 이어졌지요. 이후 지역 내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관련 활동에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공부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에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생협 활동은 참 재밌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엮어주고 그렇게 관계로부터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즐겁습니다. 때로는 그런 일이 버겁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제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생협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제 인생에 활력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하게 되네요.

추경숙 환경연합 실무자로 재직하고 있던 2002년 당시 생활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역의 시민 후보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녹색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환경 친화적인 정책과 의정 활동을 적극 펼칠 수 있는 당사자라는 주위 권유로 서울시 도봉구 기초의원예에 나가게 됐습니다. ‘행복중심 서울동북생협’(당시 동북여성민우

회생협)의 활동가를 비롯한 지역 활동가들의 도움으로 2002년부터 4년간 기초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은 제가 속한 단체 내 활동에 집중했기 때문에 마을에서의 관계를 많이 쌓지는 못했습니다. 의원 활동을 하면서 생협의 활동가, 동네 주민들을 알게 됐고 그분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제가 2살, 5살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동네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죠. 개인적인 생활의 도움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서도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쌓이면서 생협과 인연을 맺게 됐고, 생협을 비롯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힘을 느꼈습니다. 저는 일반조합원만이 아닌 의원의 경험으로 생협과 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시각에서 생협을 겪고 체험하며 생협을 이해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성들의 힘, 지역사회에서 여성들의 역할 등을 고민하게 된 것이죠.

사회 행복중심생협을 비롯한 생협 활동가들이 추경숙 대표님 삶에 있어서는 소중한 사람들이겠네요.

추경숙 그렇죠. 그분들을 만나고 난 뒤 제 인생의 화두가 바뀐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여성들의 자립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커졌으니까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과천으로 이주한 뒤 다른 무엇보다 생협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연합의 에코생협 매장을 과천에 만드는 일도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도봉에서 생협 활동가들과 부대끼 그 경험에서부터 시작해서 에코생협, 그리고 현재의 친환경 음식점 운영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회 대부분의 생협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추경숙 환경연합 에코생협 부이사장
마을기업 정지&마루 대표이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생협의 존재 이유를 갖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생활에서의 협동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다루어야 합니다.
특히 생협을 이끌어왔던 현재의
50대 조합원들의 필요에
귀 기울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가온
노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에 대한 고민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활동하다가 깊어졌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김미선 1998년 양천아이쿱생협(당시 강서양천생협)에 가입하면서 자연스럽게 생협 활동에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마을지기, 운영위원장, 그리고 이사장까지 차근차근 활동의 깊이를 더했죠. 지금은 양천구 마을생태계조성사업단과 양천경제사회적협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웃의 권유로 생협에 가입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생협을 종종 이용하는 수준이었는데 자주 생협을 마주하다 보니 실무자의 어려움이 크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품의 공급에서 조합원 조직 활동까지 전방위에서 고군분투하는 실무자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지요. 그러던 중 아이들과 생산지 견학을 가보라는 권유도 받고 직접 참여해서 어울리다 보니 생협 활동이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점점 생협 활동에 빠져들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생협이 개인이 아닌 생산자, 직원, 조합원이 함께 공동으로 운

영하는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생협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초기에는 생협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 운영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한층 더 성장하는 생협의 모습을 보면서 협동의 힘이 크다는 것과 협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 활동의 원동력도 얻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희 저는 30대 이후, 의사가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여행 중 전염병을 석 달 정도 앓았던 때가 있는데요. 배수 시설, 화장실 시설, 깨끗한 식수의 부족 등으로 전염병이 급격하게 확산되었습니다. 옴에 걸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온몸을 긁고, 아침에는 눈꺼풀을 덮을 정도로 화농성 결막염을 앓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의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 직장 일을 중단하고, 새로 진로를 찾아가던 중이었고, 몸이 아프니 마음도 자연스럽게 의학에 이끌렸던 거 같습니다. 의료협동조합과 인연을 맺은 것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7년 정도일까요? 병원에서



김미선 전 양천아이룸생협 이사장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할 때 생협이 이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조합원들의
호응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 우리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사업화해서 풀어갈 수 있는
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사업 중 하나가
돌봄의 영역일 것입니다.
돌봄은 생협의 확장성을
가져다줄 수 있는 영역입니다.



김종희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밝음의원 의사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협동조합이 공적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당사자들이 지역 중심의
 건강돌봄 체계를 준비하는 만큼,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내 여러 협동조합들과 함께
 공동의 아젠다를 설정하고,
 공동의 행동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턴, 레지던트 생활을 하면서 병원에서의 의료행위에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환자의 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환자가 왜 아픈지를 환자와 함께 이해하고, 어떻게 건강해질지를 함께 모색해볼 수 있을 텐데, 현대의학은 신체기관 중심의 질병 패러다임으로 치우쳐 생활세계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빈곤했습니다. 사람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 현재 병원의 역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의료협동조합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현대의학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해소하려던 갈증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에서 우연하게 주민과 함께 지역에서 공동출자를 통해 적정의료와 주민들의 건강공동체 활동을 추구하는 의료협동조합에 대한 기사를 접하고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원주에서 일하게 된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일을 하면서 환자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매주 농촌건강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지역의 어르신 방문을 합니다. 도농복합도시인 원주는 차로 10~15분 내 농촌으로 이동이 쉽습니다. 한번은 90세가 넘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감동을 느꼈습니다. 대화는 가능하지만 거의 외상 상태로 지내는 노모를 모시면서 보름이 넘게 시어머니가 변을 보지 못하는 문

제로 막막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변비치료제 좌약, 알약, 물약 등을 다 사용해봤지만 마땅히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젊은 여성들이 먹는 장 다이어트 팩에다 사과를 갈아서 드렸더니, 달콤하고 유동식이라 흡수도 잘되어 시어머니가 편하게 드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배변 활동도 용이하고요. 시어머니의 변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관찰하며, 해결 가능한 방법을 찾아가는 이 분이야말로 진정한 의사라고 느꼈습니다. 의학 교과서는 참고서일 뿐이지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돌보는 생활인들의 건강 자치력을 키우고 적정의료가 함께 연결될 때 함께 건강할 수 있는 가족, 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협동조합도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사회 가족, 또 본인이 아플 때 믿고 의지하고 싶은 의사를 만나고 싶은데 막상 병원에 가면 그런 안도감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참 기다린 후 겨우 자기 차례가 돌아와도 궁금한 것, 확인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결하지 못해 속상한 마음으로 진료실을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김종희 이윤추구 경쟁사회 구조가 심화될수록 아픈 사람 중심의 병원 운영이 제한됩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충분히 상담하고 돌보려는 마음을 내더라도 실천하기 쉽지 않습니다. 환자와 의사 모두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의사들 역시 이윤경쟁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거지요. 의료협동조합은 주민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의사가 의사답게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아직 어렵습니다.

사회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30대 후반, 40대 무렵 생협과 활동 집



우미숙 전 한살림성남용인 이사장

마을은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 함께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기능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르신들이 돌보고, 중장년층이
어르신들을 돌보고 하는 것이죠.
어르신들 역시 아이들에게
한자, 바느질을 가르치는 등
각자의 역할을 하실 수 있고요.
마을이 자신의 역할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의 든든한 돌봄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점이 생기고 현재까지 빠르게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김종희 선생님은 아직이지만, 저를 포함해 참석한 분들이 현재 50대 초중반으로 접어들었죠. 50대도 참 힘든 세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로는 봉양할 부모님이, 아래로는 아직 자립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퇴직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2의 인생, 인생 이모작에 대한 고민도 함께 갖게 됩니다.

앞으로 더 나이가 들게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협동조합이 50대 이후의 세대에 어떤 역할, 어떤 힘을 줄 수 있을까요?

우미숙 매장, 또 사무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시점이 40대 중후반입니다. 남편이 퇴직해서 현재 활동만으로는 가게 운영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대형마트의 캐셔로 취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생협보다 보수가 높지 않지만 근무시간이 길기 때문에 수입이 더 많죠. 마트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생협으로 돌아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인간관계가 생협과 많이 다르잖아요.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생협 활동이라는 것이 사치스럽다는 이야

기를 종종 듣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급이기 때문에 임원 활동을 하려는 조합원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해서 활동을 접는 경우가 생깁니다. 조합원들이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생협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요? 실상 생협에서 진행하는 여러 활동, 사업은 여성들에게 또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만들어내기에 용이합니다. 실제 그렇게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를 사회적경제 관점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생협 안에서는 여전히 가치 실현을 위한 자원 활동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민망할 정도로 가치를 과도하게 부여하다 보니 활동가 스스로 자신의 일은 돈이 아닌 가치를 위해 하는 일이고 생계가 어려워 돈을 벌어야 하게 되면 그 일을 그만두고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생협 내에 이러한 문화,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이 확장되어 여러 일을 생협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언제까지 무보수 자원 활동만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한편, 개인적으로 노후를 생각해보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더는 하지 못하게 될까봐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몸도 머리도 따라가지 못하는 때가 올 텐데요. 나이와 상관없이 생협에서 어떻게 활동들을 이어갈 수 있을지, 생산적인 일을 어떻게 계속해서 할 수 있을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은 관계의 단절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자신의 좁은 사고에 갇혀 편협적인 사람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풍성한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이 현재의 바람입니다.

김미선 이사장 임기가 끝날 무렵 몸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건강에 이상 신호를 느끼며 내가 나이 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몸의 변화를 느

끼면서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을 더욱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건강 문제가 크죠. 일본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흔히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또 다른 고민, 고통의 시간이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생협이 조합원들의 이러한 건강에 대한 고민에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주위 지인들을 보면 모두 부모님의 돌봄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가정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요양원, 노인병원 등을 찾지만 가격 부담의 문제와 신뢰의 문제가 겹쳐서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생협이나 협동조합이 돌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 생각합니다. 2002년 일본 니가타 소고생협으로 연수를 갔었습니다. 이곳 생협에서 노인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좋은 시설에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생협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생협 활동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경제적인 고민입니다. 도시에서는 소비를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 느리고 소박하게 살아보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쿱에서 준비하고 있는 과산 클러스터도 그러한 고민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조합원 주택 분양이 진행 중이니까요. 지방에 내려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은 되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 건강과 경제적 자립, 이 두 가지가 중요한 화두군요. 국가의 사회 보장제도를 통해 상당 부분 해결이 된다면 다행인데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고스란히 개인에게 전가되는 것 같습니다.

추경숙 저는 3년 전 과천에서 친환경 음식점을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코생협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서는 자기 생협의 경계를 넘어서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한 개 생협이 아니라 여러 생협의 조합원으로 각 생협의 물품을 모두 사용합니다. 아이쿱, 한살림, 두레 등 생협의 입장보다는 지역에서 생협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지역사회와 생협이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과천에서는 가장 먼저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함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역별 생협에서 식생활에 관심 있고 이와 관련된 교육 활동을 진행한 조합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개별 생협에서 식생활 강사 과정을 운영할 경우 해당 생협의 귀속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구매를 받지 않기 위해 지역 단위 단체를 세워 독립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식생활 강사 양성, 발굴을 통해 지역에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운영 중인 친환경 음식점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됐습니다. 지역의 필요와 참여자들의 관심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해보겠다는 도전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식당 운영은 그동안의 활동과 다르더라고요! 전문적인 사업 경험 없이 식재료 구입, 메뉴 개발, 손님 접대 등을 활동가들이 모두 담당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신뢰를 얻게 되면서 아이를 둔 젊은 엄마들, 혼밥족, 50대 이상의 부부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당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협을 이용할 미래 세대가 식당을 찾아오는 것이죠. 식당을 운영하면서 점점 먹는 일이 돌보는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생협이 먹거리 운동을 통해 지역 내에서 탄탄하게 쌓아온 신뢰와 믿음이 있기에 현재와 같이 친환경 음식점 운영도 가능했다고 봅니다. 우리 세대는 노후의 일자리 문제가 중요하고, 젊은 세대에게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문제가 중요합니다. 이를 지역에서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생협이 찾아야 합니다.

저는 생협을 비롯한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도심에서 일자리



김형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

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먹거리와 돌봄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협을 위한 문제입니다.

사회 “먹는 일이 돌보는 일”이라는 말씀이 인상 깊네요. 홀로 사는 세대가 500만 가구를 넘었다는 데요, 일인 가구의 가장 큰 문제가 먹는 일입니다. 대부분 편의점의 도시락, 분식집 등에서 한 끼를 때웁니다. 누구나 편하게 또 안심하고 먹고 싶은 동네 밥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숙 최근에 아이돌봄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협동화사업의 지원을 받아 에코생협과 함께 타 지역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했어요. 생협 내부의 신뢰 자산(지역사회와의 연대, 조합원들과의 관계망, 조합원)을 기반으로 한다면 더 빠르게 안정적인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느낀 것은 비즈니스의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치만큼이나 사업적으로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생협 내부에서는 돌봄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즈니스 차원에서 고민이 깊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나이 또래인 50대는 돌봄의 영역에서 충분히 일자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돌봄의 경우 이미 노하우를 충분히 갖고 있는 조합원들이 있기에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합원의 경제적인 문제를 생협이 지역 내에서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미숙 50대는 기존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업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생협에서 그동안 경험했던 노하우를 잘 살리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충분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추경숙 50대의 경우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이 있고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기반을 갖고 일을 시작하면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때 생협이 기반이 되면 유·무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먹거리와 관련된 일에 관심이 높은 생협, 생협 조합원이기에 먹는 일, 그리고 최근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돌봄의 영역에서 충분히 사업화 아이디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선 양천구의 경우 여러 생협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약 2만 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먹거리 의제와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사업화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있는데 아직 사업으로 확장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조합원을 대상으로만 사업을 진행해도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일반 사업체보다 훨씬 유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식당이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런 사업체를 만들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김종희 노인돌봄의 영역은 거의 무방비 상태인 것 같아요. 가족돌봄이 힘든 경우에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셔야 하는 것 외에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의 모든 협동조합 활동가들도 마주하는 문제입니다. 어쩔 수 없이 몸을 의탁한 요양원에서의 삶은 수용된 삶과 같아요. 자신만의 공간을 잃은 상황에서 자기 생활이 없어지게 됩니다. 요양원에서 촉탁의사 활동을 할 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배회'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노인시설의 67.5% 노인들이 배회행동²을 보인다고 합니다. 저녁에 잠들지 못하고 요양원 이곳저곳을 배회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그곳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 불안감의 신호입니다. 이를 의학 용어로 행동장애, 불안장애, 인지장애 등으로 표현하지만, 사실 내가 살고 싶지 않은 시설에 갇혀 있기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절대 다수의 어르신들의 몸부림을 고스란히 우리들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고령화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실천 전략 없이 협동조합이 지속 가능하기 힘들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평범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집을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원주에는 ‘봉산동 할머니 집’³이라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70~80대 어르신 5~6명이 작은 크기의 집이지만 서로 의지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집입니다. 낮에는 각자 폐지 수거 등 자신의 일을 하고 저녁에는 따뜻한 집에서 지냅니다. 각자의 방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공동 공간에서 함께 밥을 짓거나 담소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각자의 여건에 맞춰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집의 형태를 협동조합들이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온 동네에서 생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본 연수로 치마현 바람의 마을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생활클럽생협에서 마을 단위의 돌봄 체계를 수립했는데, 그 중에서 특별양호 노인홈의 설립 과정에서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핵심은 전문가들이 어르신을 ‘위한’ 집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아마추어 조합원들이 본인 스스로 노후에 ‘살고 싶은’ 집을 구상하고 만든 것이었습니다. 문패가 달려 있는 개인 방, 사계절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복도로 난 창문 밖 풍경, 용

2 송준아 외(2008). 「요양시설 치매노인의 배회행동」, 대한간호학회지 38(1).

3 갈거리사랑촌 광명은 원장이 독거노인 주거지원사업을 위해 사재를 털어 구입한 주택으로 70여㎡의 작은 크기이지만, 노인 1명당 방 하나 부엌 하나씩 나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변 후 최대한 스스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설치한 거치대, 식사할 때에는 휠체어에서 내려와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높낮이를 달리한 의자, 밥 짓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공동 거실 등 등 돌봄의 생활세계를 탐구한 흔적이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추경숙 생협이 현재와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중심 역할을 했던 세대가 50대입니다. 우리 세대가 돌봄의 영역에서 새로운 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생협의 초창기 세대가 도심의 중산층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중심으로 여기에 서부터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과 연결되어 사업이 시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생협에서는 이러한 확장에 대한 고민이 깊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는 굳이 생협이 아니더라도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해결책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세대도 여전히 아이돌봄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김종희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협동조합이 공적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당사자들이 지역 중심의 건강돌봄 체계를 준비하는 만큼,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내 여러 협동조합들과 함께 공동의 아젠다를 설정하고, 공동의 행동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실천 경험이 축적될수록 협동조합 간의 협동이 갖는 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추경숙 생협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할 때 누가 당사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한 개 생협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터이고 여러 생협들이 함께 논의를 해야 할 필요

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 역시 식자재를 여러 생협에서 구입합니다. 결국 생협에 기반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 생협이 함께 공동출자로 마을 식당을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회 양천구에서는 사례가 있지 않나요? 생협이 지역사회의 다른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미선 양천구에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조직된 양천경제사회적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양천경제사회적협동조합은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양천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의 사업을 통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간의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있고 의제별 모임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양천은 생협 조합원이 많다 보니 먹거리 관련 의제로 사업을 풀어보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마을식당이나 돌봄사업 등을 추후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친환경에너지 발전을 위한 강서양천햇빛발전협동조합의 결성, 사회적경제 기업을 홍보하는 나누리 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구립 어린이집을 생협에서 위탁 받은 성과도 있습니다. 의료협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디지만 조금씩 진전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회 노후에도 가능한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살아야 합니다. 즉, 작은 하나라도 본인이 행하는 자유를 존중하는 돌봄, 특히 당사자의 주체성, 의지를 반영하는 돌봄이 중요한데요, 일본에서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커즈 콜렉티브(일 공동체)에 고령자가 집을 기부하고 기증자 본인을 포함해 5~6명이 그 공간에서 그룹 홈 생활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더라도 집 안에서 배식은 물론 정

원 관리도 구성원들이 직접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실천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때 생협에서 조합원 리더였던 분들이 그동안의 역량과 의지를 바탕으로 보다 원활하게 돌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생협을 비롯한 협동조합들은 돌봄 사업체에 적극적으로 출자하고 조합원들에게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겠지요.

우미숙 은 마을이 한 명의 아이를 키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마을은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 함께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기능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르신들이 돌보고, 중장년층이 어르신들을 돌보고 하는 것이죠. 어르신들 역시 아이들에게 한자, 바느질을 가르치는 등 각자의 역할을 하실 수 있고요. 마을이 자신의 역할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의 든든한 돌봄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일종의 마을 협동조합일까요?

북유럽에서는 시니어 코하우징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요양원이 아니라 각자의 공간이 있는 하나의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집이면서 동시에 공동의 집인 것이죠. 저도 그런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있다면 든든할 것 같습니다.

김종희 시니어 코하우징을 다양한 층위에서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력이 있어 자기 부담이 가능한 분들의 경우 실버타운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현재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모델을 차용해 볼 수 있지요. 예를 들어, LH에서 공동주택을 매입해 수급권자 어르신이 그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어르신들은 지자체에서 주택 수당을 받아 월세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더해 의료협동조합이나 생협에서 건강, 먹거리 코디네이팅 역할을 수행한다면, 공동주택에

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생산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기존 사회복지 시스템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모델이라 협동조합이 공공사업 아젠다로 제안해볼 만합니다.

고령화시대 일본에서는 의료 재정난으로 지역 중심, 재택 중심의 지역 포괄 케어시스템으로 정책을 전환해왔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시설 중심의 우리나라에서도 5년 안에 이러한 변화를 겪게 되지 않을까요? 협동조합이 주민의 힘으로 일구는 지역 중심 돌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작은 실천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우미숙 퇴직자의 경우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나서 공허함이 큼니다. 최근 시니어들의 협동조합이 늘고 있습니다. 과학 교사를 하셨던 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과학 교육을 하고, 회계나 법률, 경영 컨설팅을 하셨던 분들이 큰돈을 받지 않고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돈이 아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기 때문이겠지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은퇴 이후를 대비하는 ‘현대차은퇴자협동조합’을 만들어 귀농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운동과 협동조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데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장년들의 노후도 협동조합과 연관하여 풀어볼 수는 없을까요? 노후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생협이 이를 어떻게 뒷받침해줄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생협은 여성 중심이라 남성에 대한 배려가 많지 않습니다. 남성들과의 네트워크도 필요합니다. 한살림에서는 최근 당뇨, 고혈압이 있는 남성 대상으로 자연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바빠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남성들과 생협의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한 사례였습니다.

김미선 저도 최근 남편에게 생협 안에서 장년층 남성들의 모임을 만들어

보라 권한하게 됐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모임, 혹은 책을 읽고 토론할 수 있는 모임, 그리고 요리교실 등 남성들이 생협과 접점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사회 생협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데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생협, 협동조합에 기대하는 바를 말씀해주십시오.

추경숙 이전에는 생협에서 물건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생협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생활협동조합’이 되어야 합니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생협의 존재이유를 갖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생활에서의 협동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다루어야 합니다. 특히 생협을 이끌어왔던 현재의 50대 조합원들의 필요에 귀 기울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가온 노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또 구체적인 일거리가 있는 노후이길 희망합니다.

우미숙 생협의 자산은 사람들의 그물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협은 그 그물망이 끊어지지 않게 잘 엮어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30대, 40대, 50대 각 세대별로 갖고 있는 특성들이 생협의 성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가치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고, 바뀌어야 합니다. 관계의 그물망을 소중히 잘 엮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김종희 의료협동조합의 힘은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장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리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의지를 표방하여도, 조합원의 참여가 없으면 진정으로 협동조합이라 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는 이제 더 근본적인 ‘돌봄’에 대한 관심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돌봄의 자치 능력이 커지는 만큼, 우리

는 건강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돌봄의 문제를 조합원들의 협동으로 해결해가야 합니다. 조합원 내부에 이미 많은 자원이 있고, 또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의 돌봄 자원과 돌봄 욕구를 잘 엮어 서로 돌봄의 조합원 건강 지도-돌봄 지도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김미선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할 때 생협이 이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조합원들의 호응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 우리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사업화해서 풀어갈 수 있는 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사업 중 하나가 돌봄의 영역일 것입니다. 돌봄은 생협의 확장성을 가져다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생협에 대해 좋은 먹거리를 자신들만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제 우리 조합원은 물론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생협에서 만들어가야 하고, 그 사례를 기대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수익만이 아닌 공공성을 갖춘 사례를 보여줄 수 있으면 합니다.

사회 곳곳에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돌봄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민간단체에 위탁을 했지만 부실하다고 의심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시민자산, 공공자산에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협동의 힘이 필요합니다. 노인/아동 돌봄 공간의 마련, 동네 밥집의 운영 등 다양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상력이 실행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원일 것입니다. 생협은 관계라는 중요한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또 조합원 스스로 자신의 선한 의지로 출자한 자본 역시 중요한 자산이지요. 생협을 일궈낸 초창기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노후의 필요를 그 세대가 향후 5년 이내에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웃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또 함께 이야기하다 보니 즐거

운 상상을 하게 되네요.

오랜 시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협동조합의 공익성을 말하다



협동조합 역시 상행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인 것은 맞지만, 기본법에서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훈련, 협동조합 간 협력,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등을 기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법45조), 30% 이내로 1인 출자를 제한하며(법22조), 출자배당은 10% 이내로 규정함으로써(법51조) 영리법인과의 근본적 차이를 아예 조문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문은 협동조합이 설립부터 자본 중심의 의사결정과 이익 배분을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기업과는 달라야 함을 선언한 것이다. 동시에 그 자체가 기업 이윤의 무한 추구와 일부 구성원의 독점을 예방하는 장치로 작동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자산'으로서 협동조합의 공익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 협동조합¹을 바라보는 몇 가지 시각

협동조합은 사업체이자 결사체이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이은, 기존의 민법과 상법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새로운 법인격이라고 말한다.

결사체는 쉽게 말해 ‘뜻을 같이하는 개인들의 모임’이다. 뜻을 같이해 그 간 자본이 장악해 온 소비에 대한 통제권, 노동(생산)에 대한 통제권, 분배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외부에서 규정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스스로 규정을 만들려는 것이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개방적이어야 한다. 소수만이 통제권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을 피고용인, 비조합원이라는 이름으로 타자화한다면 또 다른 이익집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협동조합의 원칙과 기본법에서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가입, 1인 1표, 자율과 독립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통제의 회복이 경제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사업체이다. 한편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개별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善을 추구하는 비영리단체도 아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원칙과 기본법에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의무 출자와 출자 및 배당 한도의 제한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에 비추어 협동조합을 구태여 다른 말로 규정한다면 ‘공익적 사업체’, 그리고 협동조합의 이러한 성격을 ‘협동조합의 공익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기본 원칙과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바로 협동조합이 지켜야 할 공익성의 최저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12년 12월 1일을 기해 우후죽순처럼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협

1 여기서 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을 가리킨다. 본고의 주제가 그렇기도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의 문제는 법적 규정뿐 아니라 인가 프로세스, 타 비영리법인과의 차이 및 정부 정책에서 별도의 많은 논의의 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회에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동조합이 가진 복합적 성격² 때문에 이들을 보는 시각에도 현저한 격차가 발생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자본주의 초기에 발생해 자본주의와 나란히 성장해온 유럽의 협동조합들과 달리 이미 고도의 자본주의사회에 접어들어 있으며 법제도와 정책 지원 역시 영리와 비영리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협동조합 당사자들 역시 자신의 복합적 성격을 그저 ‘협동조합’이라는 말 외에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더구나 기본법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구분하고 업무 지침에서 협동조합을 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명시함으로써, 외부로 하여금 협동조합=중소기업, 사회적협동조합≒(그러므로 원칙적으로 공익적인) 비영리단체로 단순화시켜 보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했다.

“협동조합이 중소기업과 다를 게 뭐가 있는가”, “1인 1표, 공동출자라고 하지만 형식에 불과하지 않은가”, “사회적기업 등은 인증을 받은 공인된 조직이지만 협동조합은 신고만 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따라서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인데 공공시장에서 왜 우대를 해주어야 하는가” 등이 일부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대한 시각이다.³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 아니니까 당연히 영리기업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을 못하니까 비영리법인이다”, “하지만 우리는 개인 기업이나 주식회사와 다른 분명히 가치 있는 조직인데(무엇이 다른지는 명확히 표현이 안 되지만) 왜 공공시장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가(왜 아무런 지원도 못 받는가)” 등이 협동조합에 대한 대체적인 시각이다.

2 어쩌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낯선 경제조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간 경제활동은 기업을 통해서, 공익 활동은 시민단체를 통해서라는 이분법이 통용되었고, 기존에 존재했던 신용협동조합은 다른 은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유기농 먹거리 가게로만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리)기업이나 (비영리)NGO나 하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협동조합의 실체를 포착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3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에서 일반협동조합은 최근 등장한 조직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협동조합의 원칙이 사업 활동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기존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의 이해가 낮은 이유로 시각의 차이를 불러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영미 외(2015),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를 참조하라.

아래에서는 협동조합을 영리법인으로 규정하는 원칙적 문제점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협동조합의 공익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인가

협동조합을 자본주의 기업과 다를 바 없는 영리법인=기업으로 보는 시각에 발미를 제공한 것은 일차적으로 2012년 12월 1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1차 ‘협동조합 업무지침’이다. 본문에서는 협동조합은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수요가 반영된 상법상의 회사, 민법상의 법인과 다른 대안적 기업 모델이라는 점, 그리고 협동조합이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고 영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상법상 회사와 공통점이 있으나,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인 운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기본법에 의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기술했다. 하지만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비교한 표에서 ‘협동조합=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이라고 못 박음으로써 예기치 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말았다.

문제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영리법인을 자본주의 기업과 똑같은 그냥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리성’이란 ‘상행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영리법인이란 ‘취득한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등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구성원(사원)에게 귀속’시키는 법인회사를 말한다.

협동조합 역시 상행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인 것은 맞지만, 기본법에서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훈련, 협동조합 간 협력,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등을 기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법45조), 30% 이내로 1인 출자를 제한하며(법22조), 출자배당은 10% 이내로 규정함으로써(법51조) 영리법인과 의 근본적 차이를 아예 조문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문은 협동조합이 설립부터 자본 중심의 의사결정과 이익 배분을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기업과는 달라야 함을 선언한 것이다. 동시에 그 자체가 기업 이윤의 무한 추구와 일부 구성원의 독점을 예방하는 장치로 작동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자산’으로서 협동조합의 공익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잉여의 내부적(구성원 및 지역사회) 환원, 민주성, 공동체성 등 협동조합이 가진 구조적 공익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지침에서부터 각종 교육 자료에 쓰이고 있는 ‘협동조합=영리법인’이라는 규정을 없애고 상법상 법인과 다른 ‘협동조합법인’이라는 용어를 일반화시켜야 한다.

3.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협동조합의 공익성

협동조합 설립 교육 등을 다녀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드러난다. 가장 크게는 연령과 성별, 경력에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에서 경력단절 여성, 퇴직한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에서부터 개인사업자, 대기업 퇴직자에 이르기까지, 봉제업에서 당구장 경영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이템을 구상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종다양한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알고자 한다.

그리고 협동조합에 대한 이들의 관심사는 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지금 하는 사업을 좀 더 발전시키고 싶은데, 혹은 지금 하는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협동조합을 하면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 일(사업)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데 혼자 하기에는 자신이 없고 돈도 부족한데 여럿이 같이하면 무언가 좋지 않겠는가, 정부가 소상공인이나 퇴직자들한테 협동조합을 만들면 좋다고 얘기하는데 지원이 무엇이 있는가 등으로 말이다.

다양한 사람들의 서로 다른 관심사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공통점은 하

나이다. 지금의 시장에서 혼자 무엇을 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 돈도 사람도 모이는 것이 힘이 된다는 점, 나아가 지금의 승자독식형 사회구조와 경제질서에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피부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 협동조합을 설립하느냐 마느냐에 상관없이 협동조합의 원칙과 역사(사상)가 비정상적인 사회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 많은 공감을 표시한다.

그리고 만들어진 협동조합들은 기본 원칙에 충실하면 할수록 근본적인 사회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이 가진 사회적 가치는 조합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도 제공하고 있다.

먼저 경기침체 및 대자본에 의한 골목상권의 해체, 영세 자영업자 및 소기업의 위기에서 협동조합이 어떠한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보자.⁴

옥외광고 분야의 시장은 세분화되고 규모화가 이루어지면서 영세업체는 어려워지고 규모화를 이룬 사업체들로 시장이 재편되어 영세업체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영세업체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하니) 무기력함 이런 데서 희망을 가지고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구요, 우리에게 공동작업장이나 설비가 있어서 원가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고, 각자 장점, 전문기술을 보유하는 업체들이 모이니 공동구매나 큰일도 수주할 수 있어서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있고, 자주 보니까 서로 신뢰관계도 형성되고...

—광고 분야 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 목적은 경기가 어려워져 공동구매, 생산, 판매를 해보자는 것이지요. 정육점들의 단체인 축산기업중앙회가 있는데 거기서는 잘 안되고 그러면 우

4 이하의 사례는 최영미 외(2015)에서 발췌, 요약하고 일부 첨언한 것이다.

리라도 모여서 해보자... 공동생산은 계획 중에 있고 공동구매를 통해서 조합원들이 조금의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각 매장마다 덜 팔리는 게 있는데 재고 처리를 서로 공유하면서 부담을 줄이고요. 또 우리나라는 전공자 아니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외엔 식문화 교육을 받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하려고 하고, 안전한 식육을 공급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동네장사는 지역사회에 봉사해야 해요. 경로당 어르신 식사 대접하는 거, 학교 밖 청소년들 야학에 고기반찬 지원하는 거. 그게 사회적 기여지 뭐. 돈 많이 벌었을 때 하기보다는, 우리가 매장을 만들었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니깐, 먼저 하자는 거지요.

— 축산업 협동조합

자동차 부품은 신차종이 늘어나기 때문에 특성상 재고가 계속 증가하고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지요. 따라서 부품을 모아 믿을 수 있는 정비업체에 공급하고 소비자를 소개하면 부품업체는 재고 부담을 덜고 정비업체는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부품을 구매하고 믿을 수 있는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할 수 있지요. 부품 창고를 통합하면서 직원도 한 곳에 모였는데 전에 비해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인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취업 규칙도 새로 만들고, 근로계약서도 다시 쓰고. 전에는 5인 미만이어서 신경 안 썼는데 협동조합으로 하고나니 인원도 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해서 법 규정에 맞게끔 신고 안하던 부분도 정리를 했지요. 급여도 일괄적으로 나이와 경력을 고려해서 낮은 사람을 높은 쪽으로 맞춰주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협동조합을 하다보니까—개인사업 할 때는 겪을 수 없었던 부분인데—사회적 기여도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고 차후에 실천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리플릿도 다른 협동조합에 비치해서 도움을 받고 있고요. 매출이 늘어나면 일부 정산해서 사회에 공헌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데 다들 수긍했지요. 조합에서 전화 받는 것이나 간단히 부품 찾는 일은 장애인도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런 방법도 생각하고 있어요.

— 자동차 부품 판매 협동조합

임노동 관계와 다단계 하청으로 이루어진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바꾸려는 시도도 있다.

건설업은 원청을 중심으로 다단계 하청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노동자들은 제대로 급여조차 못 받아가는 게 현실이지요.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직접 해서 건설업 전체가 노동자 협동조합에 의해서 굴러가는 것이 꿈이고, 토목, 목수, 미장, 조적 등 모든 공정에 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가 공사 전체를 따내는 게 목적이지요.

— 건설 분야 노동자협동조합

작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노동의 자기결정권, 노동시간, 임금, 노동환경에 관한 자기 결정 구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노동시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루 6시간 근무제를 하고 싶지만 아직은 현실적인 여건상... 시장이 만만치 않고 커피 분야가 레드오션이라 언제쯤 구현될지는 몰라도 꼭 해보고 싶어요.

— 커피 분야 노동자협동조합

우리나라에는 임노동 관계도 아닌, 그렇다고 자영업자도 아닌 특수한 고용 관계 속에서 만성적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불안정노동자’들이 많이 있다. 이들에게도 협동조합은 하나의 희망이다.

IT 분야에서 프리랜서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기 어렵고, 일을 하다 불이익을 당할시 대응할 힘이 약하고, 자기 계발과 자기 로드맵을 해서 경력을 관리하기도 어렵지요. 대기업에 뽑힐 만한 사람들은 알아서 살아가지만 특히 무경력 신입, 시니어(40세 이상!)들은 일거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경력도 관리하고 신입과 시니어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도 만들자는 거지요.

— IT 분야 협동조합

퀵서비스 기사들은 하루 일해 하루 먹고사는 거지. 사고를 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런데 우리 협동조합은 산재보험 다 들고 애경사도 챙겨주고 그거 하나 좋지. 다른 업체는 산재보험을 낼 수가 없어요. 협동조합은 고용주와 고용 관계가 돼서 반반씩 부담하는데 우리 조합원은 다 가입돼 있어. 그거 하나는 좋은 거지.

— 퀵서비스 분야 협동조합

시대적 화두인 돌봄서비스는 만성적 저임금과 고용 불안, 낮은 사회적 대우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분야이다.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협동조합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가정집에서 일하는 돌봄노동자들은 보통 직업소개소를 이용하고 가사도우미, 파출부 이런 식으로 불리고 있듯이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해요. 하지만 협동조합을 설립하니까 조합원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어디 가서 나 협동조합에서 일한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고요.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가 있어 도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었어요. 운영이 투명하게 공개되니까 우리 일자리는 우리가 만들자는 공동체의식도 높아지고, 개인이 아니라 협동조합이 서비스를 관리하니까 서비스 질도 높아지고요.

— 가정 내 돌봄 분야 협동조합

노인요양은 경쟁이 치열해서 불법행위도 많아요. 자부담을 깎아준다거나 여기 저기 로비를 해야 한다거나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그게 모두 요양보호사들한테는 피해로 가는 거지요. 정직하게 사업해서는 큰돈을 벌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요양보호사들과 같이 협동조합으로 회사를 꾸려가보자 했던 거지요. 처음에는 요양보호사들이 얼떨떨했었지만 지금은 같은 운영자로서 소속감이 강해져서 이동도 줄어들고 재정을 모두 공개하니까 본인들이 나서서 홍보를 해서 고객도 모집하고 서비스도 열심히 하고,

책임감이 커졌지요. 교육에 회의였다가 일은 혼자 사업할 때보다 많아졌지만 마음도 편하고 사업도 커지고 있어요.

—노인요양 분야 협동조합

단편적이지만 위의 사례에서 본 협동조합들은 모두 절실한 ‘내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고 당사자들이 모두 조합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협동조합의 원칙과 운영 원리를 체득해 가고 있다. 스스로 근무조건을 정하고 운영과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점, 처음에는 내적 필요가 중심이었지만 협동조합 간 협력을 통해 사회 공헌에 눈을 뜨게 되었다는 점, 조합원 교육과 회의 등 기본에 충실하면 조합원들이 책임감과 소속감이 강화되고 결국 사업이 발전한다는 점 등이 그러하다. 그밖에도 많은 협동조합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특성은 결국 당사자 스스로의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임노동 관계를 새로운 협동노동 관계로 바꾸며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축적할 수 있는 가능성, 사회 전반의 공익에 이바지하는 협동조합의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4. 협동조합의 공익성을 발전시키려면

위의 사례는 사례일 뿐이다. 사례로 따지자면 문제 사례, 실패 사례도 끝이 없다.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능성을 구체화하여 후발 협동조합들로 하여금 자기 활동의 나침반으로 삼게 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변화를 확대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2013년 ICA가 발표한 <협동조합 10년을 위한 청사진>을 되새기며 몇 가지 제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협동조합은 자신의 성과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현재 협동조합들이 보여주고 있는 공익성, 사회 변화의 가능성을 데이터로 축적하고 지표화하여 지속적으로 사회에 알려야 한다.

둘째, 그러기 위해서는 사례를 모아야 한다. 각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어떠한 성과를 올리고 있고, 그러한 성과는 협동조합의 본질적 속성(가치와 원칙)과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

셋째, 협동조합의 공익성, 곧 사회문제 해결에는 다양한 차원이 존재한다. 조합원의 내적 필요를 성실하게 충족시킴으로써 사회문제 해결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례와 사회문제 해결에 좀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례 등을 구분하고 거기에 맞는 제도적 지원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이를 위해서 현장의 협동조합과 지원 조직, 연구기관들 간 협업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은 너무나 다양한 분야에서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맞닥뜨리는 해결 과제도 수없이 많다. 협동조합을 구속하고 역차별을 불러오는 법제도의 문제, 유형별 사업별로 협동조합의 역량을 강화하는 문제 등 현장의 이야기가 좀 더 많이 파악되어 정책으로 집약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의 원칙은 책상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선구자들의 땀과 노력과 실패의 축적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조합원 참여는 민주적 운영 원리로서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공을 가져오는 차별성이기도 하며,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제를 바꾸는 단초이기도 하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역사와 사상, 협동조합 방식의 사업 운영을 종합적으로 교육 훈련하는 과정이 모든 협동조합들에게 배치되어야 한다. 이럴 때 비로소 협동조합들부터 나의 활동이 사회적이며 공익적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며, 좀 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원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른바 ‘일반협동조합’의 공익성에 관한 법이론적 소고

변철환

한국기업·노동·복지법학회

이사*



공익과 사익의 관계는 신축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로서 공익은 선형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사익의 합 그리고 그 이상의 타협의 산물로서 다차원적인 이해가 필요한 개념이다.

따라서 일반협동조합이 직접적으로는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간접적으로는 주로 사회·경제적으로 약소한 상황인 소규모의 생산자나 소비자 등의 공동의 필요를 해결하고 권익을 향상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등 공익을 창출하며, 또한 현행 협동조합기본법이 이와 같은 직간접적인 사업과 효과를 법적으로 인정하여 국가의 지원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협동조합이 공익성을 가진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업의 비율 기준 등의 요건으로 공익성을 특별히 강화한 유형이라는 점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명시되며 공익성이 더욱 강하게 인식되고 있는 데 대해, 일반협동조합은 공익성을 가지면서도 협동조합기본법이 일반협동조합의 영리성과 비영리성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기형적인 법체계로 인해 오히려 영리조직 즉 사적 영리 추구를 위한 존재로 인식되어 공익성마저 부인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1. 들어가며

최근 국내외적으로 협동조합을 위시한 이른바 제3섹터 경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0세기 후반 기술의 진보를 발판으로 글로벌리즘^{globalism}이 가속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제일의 목표로 탈규제화를 통한 무한경쟁 체제를 빠르게 갖추나갔다. 경제는 시장과 경쟁을 정점^{頂點}으로 하여 더욱 독점화되고 있으며, 사회는 첨단과학과 개인주의를 배경으로 더욱 분절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인간사회의 존속 자체에 내재화되어 있는 협동적 존재로서의 인간관과 근대 자본주의경제 체제에서 극단화되고 있는 이기적 존재로서의 인간관의 괴리로 인한 아노미^{anomic}를 심화시켰으며, 사회의 양극화 및 공동체의 붕괴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맹목적인 자본 중심의 경제사회를 다면적 인간 본성을 고려한 사람 중심의 경제사회로 이동시킬 필요성이 자각되고 있다.

한편 최근 자본주의경제의 고도화된 경쟁 모드는 국가의 역할론에도 영향을 주어 공공서비스 등에 대한 국가 역할의 축소로 이어지며, 이에 대해 많은 국가가 제3섹터 경제를 국민경제로 접합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즉 세계 각국에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이른바 사회적경제 주체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앞다퉈 승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했고, 현재 가칭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제정 논의가 한창이다.

그런데 2012년 제정·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이 지나치게 미시적인 정책 목표에 치중하며 매우 서둘러 입법되면서 협동조합기본법의 체계와 내용

*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전문위원.

이 협동조합의 본질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설계되어 있어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협동조합기본법이 협동조합의 유형을 이른바 ‘일반협동조합등’과 ‘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 대등적·병렬적으로 규정함으로써,¹ 양자의 정체성이 대조적으로 인식되도록 하여 일반협동조합 등이 영리조직으로 취급되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논의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는 「협동조합 업무지침」(이하 ‘업무지침’)을 통해 일반협동조합 등은 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비영리법인으로 명시하여 공식화하고 있으며,² 이와 달리 협동조합 진영은 일반협동조합이 영리법인과는 달리 영리 추구가 아닌 조합원의 편익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나아가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점을 들어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협동조합의 공익성(公益性)을 강조한다.

여기서 협동조합의 성질, 특히 일반협동조합의 성질에 대한 논의를 범이론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런데 비영리성과 공익성이 관념적으로는 관련성이 상당히 높지만, 비영리단체가 모두 공익단체가 되는 것은 아닌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비영리성과 공익성은 필연적인 견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선 밝혀두고자 한다. 다만 협동조합을 둘러싼 현장에서 협동조합의 공익성에 대한 논의는, 특히 일반협동조합이 공익성을 가

1 협동조합등은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하고,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3조 제2항).

2 협동조합기본법은 제4조에서 모든 협동조합이 법인격을 취득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이는 협동조합이 ‘임의성’, ‘자율성’, 특히 협동조합이 결사체와 사업체의 이중적 성격을 가지며 내부적으로는 조합적 성질, 외부적으로는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이른바 협동조합의 ‘이중성’ 등의 특질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이칠란트 등의 경우와 같이 비법인협동조합(미등기협동조합)을 인정하여 당해 협동조합이 법인격 취득의 필요성을 스스로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법 태도를 수정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본질적인 발전에 더욱 부합될 것으로 판단한다. 법인(法人)은 내부적 관계보다 외부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입법정책으로서 인적 단체에 대해 법인격을 일률적으로 강제할 경우 단체의 물화(物化)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문제임을 유의해야 한다.

지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일반협동조합에 대해 일반적인 기업과는 다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한 협동조합의 성질을 논함에 있어 공익성을 중심으로 하되 비영리성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2. 전제적 고찰

(1) 협동조합과 법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경제 체제는 자본과 노동의 계급 분화를 통한 본원적 축적과 노동력의 확보를 기저의 작동 원리로서 요구한다. 그리고 형성된 자본을 중심으로 노동을 결합시키고, 이러한 결합체로서 기업들을 시장에서 경쟁하게 함으로써 사익私益과 동시에 국부國富를 창출하여 경제사회를 유지·운영한다. 한편 자본주의경제론의 효시로 불리는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이러한 자본주의경제가 이른바 자기조정의 원리에 의해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인간의 이기심을 기제mechanism로 하는 자본주의경제는 이기심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힘의 불균형이 나타나면서 자본의 독점과 수탈적 이윤 추구의 자기모순적인 결과로 인한 사회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본주의경제 체제의 구조적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사회에 관한 이론이 등장하며 대^對자본주의운동으로서 노동운동과 보^補자본주의운동으로서 협동조합운동이 전개되어왔다.³ 우리나라의 경우도 원생적 협동 양식으로서 두레나 계 등이 발달했지만 오늘날의 현대적 개념에서의 노동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은 일제강점기의 타발적 산업화와 해방 이후 성장 일변도의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자주적·자조적 경제사회운동으로서 전개되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각 국가들은 노동운동에 대해 자본과 노동의 대등한 교섭을 유도하기 위해 노동단체권을 법인^{法認}하였고, 협동조합운동에 대해 소비자로서의 노동계급의 유지, 소농·소공인의 상업자본주의경제에 대한 지도, 생산수단에서 분리된 소농·소공인의 임노동자로서의 편입 속도 조정 등 자본주의경제 체제를 보완하는 데 있어 협동조합의 보다 구체적인 유용성에 주목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협동조합을 법인^{法認}하게 되었다.

(2) 우리나라 협동조합법제의 상황

협동조합에 대한 입법은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이다. 그런데 자생적인 산업화와 이에 대한 자조적 운동으로서 협동조합운동이 전개되었던 선진자본주의국가의 경우 협동조합법도 당해 경제사회의 문제에 대한 보완운동으로서 협동조합운동의 내용이 투영되어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협동조합운동의 전개 양상과는 관계없이 농업협동조합법 등 기존 8개의 개별 협동조합법이 주로 국가의 산업정책적인 필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입법되었고, 2012년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대중화를 열어가고자 발효된 협동조합기본법마저도 당면한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의 생산을 위한 보조적인 정책 수단으로서 과도하게 치중되어 입법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 협동조합법의 모법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의 체계와 내용을 보면, “제1장 총칙-제2장 협동조합-제3장 협동조합연합회-제4장 사회적협동조합-제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제6장

3 협동조합운동을 보(補)자본주의운동으로 칭함은 노동운동과의 상대적 성격의 차이점을 부각시킨 표현이며, 근대적 협동조합운동을 주도했던 공상적 사회주의자로 불리는 로버트 오언(Robert Owen) 등이 궁극적으로 공동의(共通益)를 바탕으로 하는 이상적 공동체의 건설을 추구했던 것을 도외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보칙-제7장 별칙”으로 구성되어 있어 협동조합등과 사회적협동조합등을 대등적·병렬적 체계로 규정하고 있고, 협동조합기본법 제51조 제2항과 동법 제82조는 협동조합등의 잉여배당을 허용하고 있고 동법 제98조 제2항과 동법 제115조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잉여배당을 불허하고 있으며, 동법 제14조 제1항은 협동조합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제3장의 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동조 제2항은 사회적협동조합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제1편 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마치 대조적 관계인 것처럼 인식되기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협동조합기본법의 체계와 내용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제4조 제1항과 제2항이 협동조합등은 법인으로 하고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해, 협동조합등이 영리법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에 대조하여 협동조합등이 영리법인으로 인식되도록 영향을 주고 있다.

관련하여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위와 같은 인식은 협동조합기본법에 관한 정부의 업무지침에 일반협동조합은 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명시되는 결과로 이어져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이분되고, 이에 기초하여 대중에게 교육·홍보된 결과 우리 사회에 일반협동조합이 영리법인으로 자리매김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 협동조합기본법의 체계와 실무 용어로서

“일반협동조합”의 이해

협동조합기본법이 협동조합등과 사회적협동조합등을 대등적·병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체로서의 협동조합이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양분되는 것으로 인식되도록 하고 있음에 기초하여 정부의 업무지침 등 실무

에서는 협동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일반협동조합”이라고 재명명^{再命名}하여 통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협동조합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논하기 위해서는 전체로서의 협동조합을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양분하고 서로 대조되는 개념으로 상정하여 출발하고 있는 이분법적 인식의 타당성을 전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 취지와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를 보면 협동조합 기본법은 우선 생활계^{生活界}에 실재^{實在}하는 전체로서의 협동조합의 존재를 법인^{法認}하고(2012년 1월 26일자 정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문, 동법 제2조 제1호), 이 중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협동조합의 유형으로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동법 제2조 제3호) 전체 협동조합기본법의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⁴

즉 이분법적 인식체계에서 일반협동조합의 성질을 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조되는 개념으로서의 비^非사회적협동조합을 논

4 협동조합의 본질과 현상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현행 협동조합기본법의 기형적인 체계로 인해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이분법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은 협동조합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본연의 협동조합의 개념과 본질에 부합하도록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참고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당시 의원 발의안이 2개 있었는데(약칭 “손학규 안”과 “김성식 안”) 이들은 모두 현행의 협동조합기본법과 같은 이분법적인 체계가 아닌 본연의 협동조합의 개념과 본질에 부합하도록 전체로서의 협동조합과 이 중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특별한 유형으로서의 사회적협동조합을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생산이라는 정책 목표에 착근하여 협동조합을 2개의 유형으로 양분하는 대안이 가결됨에 따라 오늘의 기형적인 협동조합기본법의 체계가 만들어지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이러한 기형적인 법체계에 따라 협동조합이 영리의 자본기업과 다른 아닌 조직으로 인식되는 현상을 초래하는 등 비합리적인 법률 효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논의에서 현행의 기형적인 법체계를 개선하기보다 동법 제2조 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정의에서 “이 중”의 문구를 삭제하여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이분법적 인식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형식에 중점을 둔 주장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협동조합법은 당해 사회의 상황에 따라 일정한 변형이 기도되기도 하지만 협동조합의 개념과 본질 및 현상의 존재를 도외시하는 경우 협동조합의 본질로부터 파생되는 사회·경제적 효과는 물론 진정한 협동조합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의 개념과 본질 및 현상의 존재에 기초한 입법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본연의 의미에서의 일반의 협동조합의 성질을 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협동조합의 개념을 다시 일반의 협동조합의 개념으로 환원하여 이해해야만 비로소 정확히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반협동조합의 의미를 일반의 협동조합으로 이해하는 전제에서 일반협동조합의 성질을 검토하기로 한다.

3. 공익^{公益}의 개념과 본질

(1) 사전적^{辭典的} 정의

공익^{公益}, public interest은 사전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의미한다.⁵ 즉 “특정 개인의 이익”을 의미하는 사익^{私益}, private interest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공익^{公益}, public interest과 유사한 개념으로 공익^{共益}, common interest을 비교할 수 있는데, 전자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의미하는 데 대해 후자는 사회 일반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국가 차원에서 상정하는 경우 전자는 곧 국가의 이익을 말하며 후자는 곧바로 국가의 이익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공동체적 이익 또는 공중의 이익을 말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공익^{公益}이 국익^{國益}의 개념으로 확장되어 인식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공익^{公益}의 개념을 국가 차원이 아닌 다른 사회 단위의 차원에서 볼 때는 공익^{共益}에 더 가까운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公益}, 공익^{共益}, 국익^{國益}은 서로 구별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하겠다. 다만 현실에서 공익^{公益}과 공익^{共益}의 개념은 유사성과 긴밀한 관계성으로 인해 혼용되거나 혼

5 다음 국어사전.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021365&supid=kku000029707#kku000029707>)

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한편 공익의 개념을 기초로 공익성(公益性)의 개념을 정의하면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이라고 할 수 있겠다.⁶

(2) 본질론

공익과 공익성의 사전적 개념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공익의 개념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과연 무엇이 공익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근·현대의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다. 관련하여 공익의 본질에 대한 주요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익의 본질에 대해서는 사익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관점이 나뉜다. 즉 공익을 사익을 초월하여 실체를 가지고 있는 규범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규범설)과 공익을 사익의 합으로 보는 관점(과정설)이 있다. 전자는 공익의 내용을 도덕, 정의, 자연법(自然法) 등 선험적(先驗的)인 존재로 보는 견해로서 플라톤(Plato),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등이 대표적 주장자이며, 후자는 공익의 내용을 개인이나 집단의 참여와 타협을 통한 산물로 보는 견해로서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 글렌든 슈베르트(Glendon Schubert) 등이 대표적 주장자이다.⁷

규범설은 사람의 가치판단 기준이 다양하고 일률적으로 통일될 수 없기 때문에 규범적 성격을 갖는 공익의 판단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고 자의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과정설은 현실에서의 공익은 사익의 합 이상의 차원에서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 공익이 현실정치에 매몰될 수 있다는

6 다음 국어사전.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021374&q=%EA%B3%B5%EC%9D%B5%EC%84%B1&supid=kku000029717>)

7 김복규(1983.3). 「공익의 개념분석」, 『경영경제』 제15집,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146~148쪽.

문제점이 있다고 보인다.

4. 일반협동조합의 공익성 검토

(1) 단체-공익성에 대한 입법 방식

어떠한 단체에게 공익성을 인정하여 공익법인 또는 공익단체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일정하게 공익성이 있음을 인정하여 여타의 단체와 다른 대우를 할 것인지는 당해 사회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정책적 필요성에 기초한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하겠다. 그리고 공익성에 대한 입법은 공익이 유연한 개념으로서 다차원적인 이해가 필요한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일률적인 기준과 내용을 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목적적이지도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익과 관련하여 헌법 제23조 제2항과 제37조 제2항에서 “공공복리”로 제시되며 헌법의 궁극적 가치로 개념화되어 있고,⁸ 공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제2조 제1항에서 동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간접적으로 개념화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의 “공공복리”는 선험적·현상적·미래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며, 공익법인법의 “사회 일반의 이익”도 본질적으로는 선험적·현상적·미래

⁸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성질의 것이지만 공익법인법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에 대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데 입법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목적사업의 범주와 무상성^{無償性} 등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설립허가 요건을 통해 판단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한편 단체에 대해 공익성을 인정하는 실정법적 유형은 공익법인법의 공익법인과 같이 단체의 전체적인 공익성을 인정하는 입법(제1유형),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사회적기업과 같이 일정하게 부분적으로 공익성을 인정하는 입법(제2유형)⁹, 또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의 소상공인 및 그 연합회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공익적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공익으로 연계되어 궁극에는 공익에 기여함을 인정하는 입법(제3유형)¹⁰ 등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위와 같이 단체의 공익성은 실제 완전한 공익성을 가지는 유형부터 간접적으로 공익과 연계되는 유형까지 넓은 스펙트럼^{spectrum}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입법은 당해 단체의 성질과 사회·경제적 상황 및 정책적 필요성 등에 기초하여 다양한 층위로 파악되어야 한다.

9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은 사회적기업의 영리 추구를 인정하면서(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제2호), 공익적 사업을 일정한 비율(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수혜자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을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8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10 소상공인법은 제1조에서 입법목적을 “...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활동 촉진과 경영 안정 및 성장이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이라는 공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전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일반협동조합의 공익성과 비영리성

단체의 공익성을 다양한 층위로 파악한다는 것으로부터 일반협동조합의 공익성을 검토하는 경우, 공익 창출의 직접성과 그 비중 및 영리 추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즉 기술^{既述}한 바와 같이 공익성과 비영리성이 필연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익성의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이라는 개념에 따라 일반협동조합의 영리성 및 공익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일반협동조합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일반협동조합에 관해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1항은 협동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고 하고 있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모두 가능하도록 개방되어 있다는 점, ② 동법 제51조 제2항과 동법 제82조는 협동조합등의 잉여배당을 허용하고 있으나 일반협동조합은 정관으로서 잉여배당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④ 동법 제51조 제2항과 제3항은 잉여금의 배당도 손실금을 보전과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이용량에 대한 배당을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을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이하로 하도록 하여 영리조직의 투자금에 대한 이윤배당과는 다른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 ⑤ 나아가 일반기업의 이윤배당은 자본의 투자에 대해 이윤을 배당하는 것인 데 대해 협동조합의 잉여금 배당은 공동의 사업을 위해 실비를 조합원이 다소 과^過부담하고 사업 이후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서 일반기업의 이윤배당과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진다는 점 등에서 일반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성격을 가지며, 오히려 예외적으로 영리법인의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⑥ 영리성 여부를 판단하는 통설적 견해는 단지 조직이 이윤 추구에 목적을 둔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이윤을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 등의 형태로 구체적으로 구

성원에게 귀속시킬 때 비로소 영리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¹¹ ⑦ 무엇보다도 영리성 여부는 실질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협동조합을 일률적으로 영리법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협동조합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제3장의 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일반협동조합의 영리성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사업조직이라는 점에서 동 규정과 같이 일정하게 상인성(商人性)이 인정됨은 물론이지만, “준용(準用)”이라는 것은 유사한 성질의 사항에 대해 반복적으로 규정을 두지 않고 규정을 연결시킴으로써 법문을 간소화하는 입법 기술이며 성질의 유사성 유무를 묻지 않는 “적용(適用)”과는 구별된다는 점에서 위 상법상의 모든 규정을 일반협동조합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예를 들면 유한책임회사에 “1인 회사”와 “서면결의”의 제도가 인정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협동조합에 이와 같은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법상의 회사와 일반협동조합을 동일하게 인식하는 기초에서 일반협동조합의 영리성을 주장하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음 일반협동조합이 공익성을 가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협동조합기본법 제1조가 동법의 입법 목적을 “...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의 실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는 점, ② 동법 제2조 제1호는 일반협동조합을 “... 재화 또

11 다음 백과사전(<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15a3878a>)

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여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지역 사회에 공헌함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관련하여 동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을 일반협동조합의 필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설립신고 등을 함에 있어 사업계획서에 필수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사업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 ③ 동법 제10조 제2항과 동법 제10조의 2 및 동법 제10조의 3은 제1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협동조합이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성을 가진다는 전제에서 국가와 공공단체가 일반협동조합을 비롯한 모든 협동조합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고 자금, 경영 및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④ 동법 제8조 제1항이 일반협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협동조합에 대해 협동조합 간 협력의 책무를 규정하고, 동법 제1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가 일반협동조합을 비롯한 모든 협동조합의 행위에 대해 소규모성小規模性 등을 요건으로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시 동법 제1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협동조합의 활성화가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 ⑤ 나아가 동법 제6조 제3항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 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일반협동조합을 비롯한 모든 협동조합이 시가 차이를 통한 극단적인 자본적 수익추구를 금지하고 조합원 일반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협동조합이 자본적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결성된 사람들이 공동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¹² 즉 인본적 편익향상에 목적이 있고 특히 결성의 주체가 주로 소규모의 생산자나 소비자 등이므로 결국 협동조합의 이익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으로 이어

진다는 점 등에서 일반협동조합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과는 달리 본질적으로 공익성을 내재화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5. 맺으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공익과 사익의 관계는 신축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로서 공익은 선형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사익의 합 그리고 그 이상의 타협의 산물로서 다차원적인 이해가 필요한 개념이다. 따라서 일반협동조합이 직접적으로는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간접적으로는 주로 사회·경제적으로 약소한 상황인 소규모의 생산자나 소비자 등의 공동의 필요를 해결하고 권익을 향상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등 공익을 창출하며, 또한 현행 협동조합기본법이 이와 같은 직간접적인 사업과 효과를 법적으로 인정하여 국가의 지원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협동조합이 공익성을 가진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업의 비율 기준 등의 요건으로 공익성을 특별히 강화한 유형이라는 점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명시되며 공익성이 더욱 강하게 인식되고 있는 데 대해, 일반협동조합은 공익성을 가지면서도 협동조

12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1995년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관한 ICA 성명(The ICA 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1995)」에서 “협동조합은 자발적으로 결성된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체를 통해서 자신들의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 필요와 열망을 충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율적 결사체를 말한다.(A co-operative is an autonomous association of persons united voluntarily to meet their comm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needs and aspirations through a jointly-owned and democratically-controlled enterprise.)”고 정의했다.

합기본법이 일반협동조합의 영리성과 비영리성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기형적인 법체계에 의해 오히려 영리조직 즉 사적 영리 추구를 위한 존재로 인식되어 공익성마저 부인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관련하여 일반협동조합의 공익성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반협동조합이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입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협동조합이 본연의 일반의 협동조합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기본법의 기형적인 법체계를 동법 제2조 제1호와 제3호의 관계,¹³ 실재하는 협동조합의 모습 등을 기초로 하여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반협동조합의 영리성과 비영리성을 정관차이에 의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1항을 개정하고, 영리성의 판단기준을 잉여배당 여부 및 방식,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의 방식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정하는 법령을 보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반협동조합의 법정적립금이 경영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공동의 자산 내지 사회적 자산의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비분할적립금의 개념으로 전환하고,¹⁴ 협동조합의 해산 시 비분할적립금이 유사한 목적의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연합회 및 유사한 목적의 관련 기관 등으로 귀속되도록 협동조합기본법 제50조 및 제59조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반협동조합에 관해 협동조합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동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상법의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제3장

13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는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호는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4 비분할적립금은 이탈리아, 프랑스 등 많은 국가들에서 제도화되고 있으며,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1995년 선언한 협동조합의 7원칙에서 제3원칙에 “indivisible”의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의 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협동조합이 상호 자조를 위해 공동 소유와 민주적인 운영을 기초로 한 인본기업¹⁵이라는 협동조합의 본질을 도외시하고 자본기업과 다른 아닌 존재로 법적 성격과 지위를 규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협동조합의 특수성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협동조합기본법 등 협동조합 법제에 추가로 규정하고 상법의 규정은 유사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한해 부분적으로 준용하는 입법 방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공익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제도화가 활발히 추진되며 협동조합 중 공익성을 강화한 특별한 유형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제도화했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협동조합은 반드시 공익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니더라도 본질적으로 공익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협동조합을 일자리 창출의 정책 수단으로서 과도하게 치중하여 설계함으로써 외연의 성장을 통해 정책 목표를 형식적으로 달성해가고 있을 뿐 본연의 협동조합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경제적 효과는 협동조합이 자본기업과는 다른 인본기업으로서의 특질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특질에 기초하여 기존의 자본기업과는 다른 법적 성격과 지위를 충실히 입법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렇지 않은 협동조합에 관한 입법은 결국 입법의 실익을 찾을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협동조합 대중화 시대의 초기에 있어 협동조합이 기본이념과 가치에 기

15 기업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협동조합이 기업 유형의 하나로 정의될 수도 있고, 기업과는 다른 조직으로 정의될 수도 있다. 즉 기업을 광의(廣義)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조직적인 경제단위”라고 파악하는 경우에는 협동조합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 협의(狹義)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재화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이라고 파악하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여기서는 광의의 기업을 가리킨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두산백과 참조).

반하여 건강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가와 각 사회 주체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협동조합 회계기준의 필요성과 신뢰성 확보 방안

1. 들어가며

회계란 기업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정보를 인식, 측정, 기록하여 회계 정보의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영 활동 상황과 재정 상태의 변동 상황을 화폐 단위로 파악하여, 그 결과를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 이용자란 경영자를 비롯하여 주주, 종업원, 채권자, 투자자,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기업에 대한 정보를 통해 그 회사의 장래를 예측함으로써 투자자의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식을 살 것인지, 채권자의 경우에는 그 회사에 돈을 빌려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이용자'는 '조합원'이므로, 협동조합의 회계는 조합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사업자금 및 운영자금을 전적으로 조합원의 출자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사업을 위한 초기 투자금액(고정자산, 원자재, 재고 구매 등) 또는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의 사업 운영자금은 외부로부터 조달해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을 포함해 모든 사업체에서 일반적으로 외부자금 조달형태는 은행 또는 기타 대출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 또는 원재료 구입 등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다. 300대 협동조합 및 공제조합 중 비금융협동조합의 전체 부채와 자기자본의 7%가 단기 은행 대출로 이루어져 있다.¹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금과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협동조합의 주요한 '정보 이용자'는 '조합원'과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협동조합이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가 조합원 또는 금융기관에게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협동조합이 회계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현행 회계기준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 회계기준', '중소기업 회계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회계기준이 협동조합의 정보 이용자인 조합원 및 금융기관에게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협

1 A.마이클 앤드류스 지음, 번역협동조합 옮김(2016). 『협동조합 자본 현황조사』, 필레네연구소, 7~10쪽.

동조합이 현행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가 조합원 및 금융기관에게 유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면 협동조합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회계기준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검토에 앞서 우선 현행 회계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이 현행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토대로 협동조합 회계기준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협동조합 회계기준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협동조합 주체들이 협동조합 회계기준에 따라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정보 이용자인 조합원과 금융기관이 해당 경영 성과 등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협동조합 주체들이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경영성과 등을 작성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협동조합 회계기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이하에서는 현행 회계기준을 살펴보고, 협동조합에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통해 협동조합 회계기준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협동조합 회계기준의 신뢰성 확보 방안 및 협동조합 회계기준 제정 방안에 대해 서술하겠다.

2. 현행 회계기준

우리나라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은 앞서 언급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 회계기준, 중소기업 회계기준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상장기업과 자회사, IPO(기업공개, 주식 시장)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적용해야 한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외부감사 대상 법인²과 코넥스 상장법인³에 적용된다. 중소기업 회계기준은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기준이다.

금융시장 및 기업 경영의 급속한 글로벌화로 인해 세계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 정보의 필요성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영국의 국제 회계기준위원회가 만든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가 국제적인 회계기준으로 등장했다. 우리나라도 기업 회계 정보의 신뢰성 향상과 회계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7년에 도입을 결정했으며, 2011년부터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기업 중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 기업의 회계 처리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의 회계 처리에도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회계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주식회사의 회계 처리에 적용한다. 다만, 이에 해당 하더라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은 복잡하여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 납부를 위해 주로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를 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할 적당한 회계기준이 없어 세법 규정을 토대로 회계 처리함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의 회

- 2 ①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총액(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설립한 경우 설립 시점의 자산 총액)이 12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 총액이 70억 원 이상 또는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 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다른 주권상장법인(기존의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 ④ 당해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
- 3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는 자본시장을 통한 초기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새로이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 신시장이다. 코넥스 시장은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과 마찬가지로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으로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유가증권시장의 상장법인이나 코스닥 시장의 상장법인과 동일하게 주권상장법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

계 처리를 신뢰하지 않고, 동일한 업종의 중소기업 간에 비교가 불가능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 문제의 해결 및 중소기업을 위한 간편한 회계기준 마련을 위해 법무부는 상법 및 동법 시행령⁴을 2012년 4월에 개정하여 비교적 규모가 작은 주식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제정했다.

상장회사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자산 100억 원 이상 등의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회사는 ‘일반기업 회계기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은 선택에 따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를 할 수도 있다.

3. 협동조합 회계기준의 필요성

현행 회계기준은 주로 주식회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식회사의 최대 이해관계자는 투자자(주주)로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회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투자자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현행 회계기준을 그대로 협동조합에 적용하면 몇 가지 모순이 발생한다. 물론 주식회사와 동일한 경제 현상에 대해서는 협동조합도 주식회사가 적용하는 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무리하게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조합원의 의사결정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주식과 조합원 출자금은 경제 현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환급이 불가능하다. 출자자인 주주는 전매를 통해서만

4 상법 제44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가능하고, 주식을 매각하면 주주로서의 권리는 소멸한다. 조합원 출자금은 탈퇴 시 환급에 일부 제한이 있지만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이념과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한다. 일정한 조합원 자격이 요구되며, 출자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합원 권리의 매매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판매를 전제로 한 주식과 이용·참가의 증거인 출자금을 같은 차원에서 논의해도 좋은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즉, 자본의 정의를 새로이 검토할 필요를 갖게 되는 것이다.⁵

‘중소기업 회계기준’에서는 자본을 회사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이며, 회사의 자산에 대한 주주의 잔여청구권으로서 상법 제451조에 따른 자본금으로 정의하고 있다.⁶ 상법 제451조에 따른 회사의 자본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 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현행 회계기준 중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회계기준은 ‘중소기업 회계기준’일 것이다. 협동조합의 경우 아직까지 대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규모 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협동조합이 적용할 회계기준은 ‘중소기업 회계기준’일 것이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금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주식 발행이라는 행위 자체가 있을 수 없다. 결국 ‘중소기업 회계기준’에 따르더라도 협동조합의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된다. 설혹 협동조합의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더라도 이는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위배하는 회계 처리가 된다.

5 아이큐협동조합연구소(2011). 『일본 공익재단법인생협총합연구소 리포트 No.64 : 협동조합의 출자금, 자본 회계 문제』, 44쪽.

6 중소기업회계기준 제6조 제3항 및 동 기준 제19조.

협동조합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기관의 협동조합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 협동조합의 일반적인 대출 기준이나 계약 요건 미흡 등이 걸림돌로 작용한다. 대출기관은 대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흔히 부채비율이나 총 부채비율을 고려하며, 대출 조건으로 총 부채비율 제한을 강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협동조합 출자금의 상환 특성, 즉 조합원 출자금을 부채로 분류하는 특성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대출기관 대다수가 협동조합을 심사할 때 이익잉여금이나 적립금만을 자기 자본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⁷

‘중소기업 회계기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본금의 개념과 협동조합 출자금 개념의 상충, 대출기관에서 출자금을 자본으로 보지 않아 발생하는 협동조합의 초기자금 조달에 대한 대출기관의 차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협동조합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출자금을 자본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다. 현행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토대로 협동조합의 자본금에 대한 정의를 다음의 표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표1〉 협동조합 회계기준 제정 시 자본금의 정의 </div>	
중소기업 회계기준	협동조합 회계기준
<p>제19조(자본금) ‘자본금’이란 상법 제451조에 따른 자본금을 말한다.</p> <p>〈상법 제451조〉</p> <p>①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 총액으로 한다.</p>	<p>‘자본금’이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18조 제4항을 말한다.</p> <p>〈협동조합 기본법 제18조 제4항〉</p> <p>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p>

‘중소기업 회계기준’은 자본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을 자본잉여금이라 하고, 자본 거래에 해당하지만 자본금 또는 자본잉

7 A.마이클 앤드류스 지음, 번역협동조합 옮김(2016). 앞의 책, 10쪽.

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과 당기에 손익으로 인식되지 않는 평가차손의 누계액으로서 자기주식 또는 자기주식 처분손실 등을 자본조정이라고 한다.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크면 자본잉여금이 발생한다. 주식회사가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며,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처분손익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출자금은 잉여금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고,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기⁸ 때문에 자본잉여금 또는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 처분손실 등에 대한 개념은 있을 수 없다.

이와 같이 협동조합의 자본금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중소기업 회계기준’상 자본의 개념을 협동조합에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대한 회계기준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동일한 시장 서비스를 영리회사보다 저렴한, 최선의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시장에 존재하지 않지만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창출한다. 협동조합이 영리회사의 시장 지배력 행사에 대응하여 조합원 실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협동조합의 성과 지표인 ‘조합원 실익’의 규모를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가 재무제표상의 지표일 것이다. 현행 회계기준은 주식회사 위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 정보의 대부분이 주주에게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회계기준을 토대로 작성한 협동조합의 재무제표는 조합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주식회사 거래의 상대방은 제3자가 대부분이다. 일부 주주와의 거래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거래 상대방 대부분은 조합원일 것이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매출과 매출원가라는 하나의 계정으로 수익과 원가를 표시한다. 하지만 협

8 협동조합기본법 제55조.

동조합은 매출과 매출원가를 조합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부분과 조합원 외의 일반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부분을 구분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다. 즉 매출을 일반 매출과 조합원 매출로 구분하고, 매출원가를 일반 매출원가와 조합원 매출원가로 구분하여 조합원과의 거래를 통해 형성된 매출과 매출원가에 대한 재무 정보를 조합원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협동조합에 적용하는 데 있어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 나름대로 이러한 한계를 수정하여 반영할 것이다. 이는 협동조합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적절히 수정하여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회계 처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협동조합이 제각각 회계 처리를 한다면 협동조합 간의 비교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대출기관의 자금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게 되는 신용평가의 어려움과 동일 규모의 협동조합 간 회계 처리 방식 차이에 따라 신용 평가의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협동조합 간 재무 정보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신뢰성 확보 방안

중소기업학회가 중소기업 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가 신용대출 심사 시 활용한 중소기업의 재무제표를 ‘매우 신뢰한다’는 의견은 16.3%에 불과한 반면, 일부만 신뢰한다는 의견이 무려 82.1%를 차지할 만큼 신용대출 심사에서 재무제표를 대부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제출한 재무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유로 74%가 투명성 보장의 어려움을 꼽았다. 회사의 재무 상태 및 경영 성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 정보를 신뢰성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향후 중소기업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금리 할인 등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 결정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금융기관 대출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해 회계 투명성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에 필요한 조건임을 보여주고 있다.⁹

중소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회계기준’이 2012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여 회계 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검토나 기준 위반 시 별다른 제재가 없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중소기업 회계기준에 따른 회계 처리보다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회계 처리 관행으로 인해 실무적으로 대출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하더라도 대출기관이 별도의 제3자 기관(회계법인 등)에 재무제표 작성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한 후에 대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중소기업 회계기준 제정의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이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재무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한다면 장기적으로 자본조달 비용을 낮춰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하기 쉬워질 것이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중소기업 회계기준 제정이 중소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에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¹⁰ 그러나 중소기업 회계기준은 강제 규정이 아닌 자율 규정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당장의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중소기업 대부분이 1인이 주주이면서 대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표의 이해에 따라 중소기업 회계기준의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그래서 여전히 중소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가

9 허광복(2012). 「중소 회계투명성 증대의 이점」, 중소기업뉴스, 2012.03.28.

10 법무부·한국회계기준원(2013). 『중소기업회계기준 해설』, 4쪽.

낮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을 법인세법에 따라 평가하면 낮은 금액이 산출되고, 중소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면 높은 금액이 산출된다면 중소기업은 내부의 필요에 따라 재고자산을 법인세법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중소기업 회계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만약 중소기업이 법인세를 적게 내려는 목적이 있다면 법인세법에 따라 평가된 재고자산으로 반영할 것이고, 법인세가 아닌 대출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목적이라면 중소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산정된 재고자산을 반영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의 금액이 크면 이익도 크고 법인세도 많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통해 중소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 대출기관으로부터 자금 확보의 용이성 달성,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의 제공 등을 이루고자 했으나 중소기업 회계기준이 제정된 현재에도 여전히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를 하는 중소기업은 극히 일부인 상황이다.

협동조합 회계기준을 제정하고, 협동조합 회계기준 적용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앞서 지적한 중소기업 회계기준의 문제점이 협동조합 회계기준에도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 회계기준의 제정 못지않게 협동조합이 협동조합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 회계기준을 적용함과 동시에 협동조합 회계기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일본의 회계참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2005년 회사법의 제정과 함께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회계참여제도를 도입했다. 회계참여란 ①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② 회계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공인회계사, 세무사)로서, ③ 이사와 공동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함과 동시에, ④ 당해 재무제표를 이사와는 별도로 보존하고, ⑤ 이를 주주 및 회사채권자에게 공시하는 것을 주된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임의 기관이다. 회계참여제도의 특징은 재무제표 등의 작성에 회사와 독립된 입장에 있는 제3자인 회계전문가가 이사와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점에 있으며, 제3자인 회계 전문가의 개입을 통한 재무제표 등의 적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족 중심의 경영이 주를 이루는 중소기업은 극히 형식적인 감사제도와 운영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회계감사는 대표이사가 작성한 재무제표 등을 사후적으로 감시하는 것이지만 회계참여제도는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는 시점부터 그 정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전적, 제도적인 장치로써 경영진에 의한 분식회계의 위험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동시에 투명한 회계 및 건전한 재무 구조를 확립할 수 있다.¹¹ 협동조합의 정보 이용자는 조합원이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및 재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회계기준 제정과 동시에 일본의 회계참여제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중간지원기관이 협동조합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자문을 하고 있는 바, 자문을 넘어 회계처리 단계에서부터 회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5. 협동조합 회계기준 제정 방안

협동조합 회계기준의 제정에 있어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협동조합만을 위한 협동조합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협동조합 회계기준을 제정하고 나머지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는 방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이

11 이기욱(2009). 「일본의 회계참여제도와 그 시사점」, 『조세연구』 제9-2집, 2009.8. 7~8쪽.

다. 후자의 경우 회계기준 제정의 간편성은 있을지 몰라도 일반기업 회계기준과 협동조합기업 회계기준 모두를 숙지해야 하기 때문에 더 복잡한 회계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협동조합만을 위한 협동조합 회계기준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6. 결론

주식회사의 회계 처리를 위해 제정된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협동조합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위에서 제시된 자본금의 정의 문제, 재무제표에 대한 대출기관의 신뢰성 문제, 협동조합 간의 비교 가능성 문제 이외에도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협동조합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본 글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협동조합이 그대로 가져가기에는 무리가 있고 협동조합만을 위한 회계기준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협동조합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데 따른 문제제기를 하는 수준이고 협동조합 회계기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의 제시도 매우 기초적인 수준이다. 따라서 추후에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협동조합에 적용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에 대한 세부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협동조합 회계기준 제정의 타당성 및 회계기준에 구체적인 내용을 중장기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아울러 협동조합 재무제표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조합원에게 유익한 재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회계참여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에도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A. 마이클 앤드류스 지음, 번역협동조합 옮김(2016). 『협동조합 자본 현황조사』, 필레네연구소.
 - 법무부 · 한국회계기준원(2013). 『중소기업회계기준 해설』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2011). 『일본 공익재단법인생협총합연구소 리포트 No.64 :협동조합의 출자금, 자본 회계 문제』
 - 이기욱(2009). 『일본의 회계참여제도와 그 시사점』, 『조세연구』 제9-2집, 2009.8.
 - 허광복(2012). 「중소 회계투명성 증대의 이점」, 중소기업뉴스, 2012.03.28.

함께하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따로 또 같이, 아티자^{artisan}들의 발자국

— 랑프랑트 예술인협동조합 la Cooperative l'Empreinte

김푸르매 S. Economy 편집장

사진 손정화 라파엘 인터내셔널



작품을 설명하는 아티자



박유 몽트레알 거리

아르티장은 ‘장인’이라는 의미와 ‘예술가’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

때문에 랑프랑트 부티크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순수한 예술만을 좇지도 않고, 빼어난 기술만을 자랑하지도 않는다.

장신구, 의류, 도자기, 장난감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사용할 만한

수공예품들을 전시·판매하지만, 작품 하나하나에는

아르티장 개개인의 독특한 개성이 묻어난다.

캐나다 제2의 도시 몬트리올. 고풍스러운 석조 건물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조화를 이룬 이곳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프랑스어권 도시로 ‘북미의 파리’라 불린다. 다운타운에는 다양한 박물관과 현대적인 쇼핑센터들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다운타운의 동남쪽, 세인트로렌스 강 연안을 따라 위치한 ‘바이몽트레알Vieux Montréal, 영어로는 Old Montreal, 구시가지’로 가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고전적이면서도 낭만적인 정취로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이곳은 몬트리올의 발상지다.

1642년, 폴 쇼메디 드 메종네브Paul Chomedey de Maisonneuve는 가톨릭 공동체를 이룰 목적으로 이곳에 ‘빌 마리Ville-Marie’라는 작은 도시를 건설했다. 이곳은 이후 모피 교역의 중심지로 성장했지만, 19세기 지금의 몬트리올 신시가지로 경제 중심지가 이동하면서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하지만 1960년대부터 정부의 보호 정책에 의해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고, 지금까지도 18세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바이몽트레알에서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걸어 다니며 노트르담 대성당Notre-Dame Basilica, 구항구Vieux Port,

자크 카르티에 광장Place Jacques Cartier, 몬트리올 시청Hôtel de Ville de Montréal, 몬트리올 고고학 역사박물관Musée Pointe-a-Calliere, 샤토 람제이 박물관le Château Ramezay, 마르셰 봉스쿠르Marche Bonsecours, 노트르담 봉스쿠르 교회Eglise Notre Dome de Bonsecours 등 다양한 명소들을 둘러볼 수 있다.

그리고 유서 깊은 이 지역의 중심부에서 봐유 몽트레알만큼이나 특별한 부티크-갤러리를 만나볼 수 있다. 바로 랑프랑트 예술인협동조합la Cooperative l'Empreinte(이하 랑프랑트)의 퀘벡 공예품 매장이다.



랑프랑트 부티크 입구

흔적, 오고 가고 머물고 남기다

아주 오래전, 퀘벡에서 활동하는 20여 명의 예술가들이 한데 모였다. 도자기, 장신구, 가죽제품, 의류 등 활동하는 영역은 제각각이었지만, 이들은 손으로 작품을 만든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모두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고 판매할 장소를 찾고 있었다. 1974년 4월 27일, 이들은 랑프랑트 예술인협동조합을 만들었고, 뵘유 몽트레알의 생 폴Saint-Paul 구역에 협동조합의 부티크-갤러리(이하 랑프랑트 부티크)를 열었다.

그로부터 40여 년, 475명이 넘는 퀘벡의 예술가들이 랑프랑트에서 활동했고(2014년 기준, 게스트 아티스트 포함), 더 많은 이들이 랑프랑트 부티크에서 그들의 작품을 만났다. 그리고 서너 번의 이동을 거쳐 지금의 위치에 자리를 잡았다.

랑프랑트Empreinte, 여성명사는 프랑스어로 흔적, 발자국을 뜻한다. 장신구 디자이너인 리차드 하지Richard Hajj 랑프랑트 대표는 “이곳은 오는 사람도 많고, 가는 사람도 많다”며 “누구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곳이 랑프랑트 부티크”라고 말했다. 하지 대표의 말처럼 이곳에서는 잠시 스쳐지나가던 행인조차 작품의 주인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는 예술가의 다음 작품 속에 녹아들어가, 협동조합의 이름처럼 랑프랑트에 흔적을 남긴다.

더 많은 이들의 흔적을 더 많은 작품에 남기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부티크를 운영해온 랑프랑트에게 무척 중요한 일이다. 3년여 전 부티크는 같은 뵘유 몽트레알 안에서도 오가는 이들이 훨씬 많은 구역으로 이전했고, 더 많은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인테리어에도 변화를 주었다. 더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은 작품들을 선보이며 더 많은 흔적을 남기기 위함이었다.



랑프랑트 예술입협동조합의 리차드 하지 대표(오른쪽)와 마리안 첼라 조합원(왼쪽)

예술가와 장인 사이, 소통하고 소통하다

랑프랑트 부티크는 엄밀히 말해 아티스트가 아닌 아르티장을 위한 공간이다. 아르티장-artisan은 '장인(匠人)'이라는 의미와 '예술가(artist)'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 때문에 랑프랑트 부티크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순수한 예술만을 좇지도 않고, 빼어난 기술만을 자랑하지도 않는다. 장신구, 의류, 도자기, 장난감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사용할 만한 수공예품들을 전시·판매하지만, 작품 하나하나에는 아르티장 개개인의 독특한 개성이 묻어난다.

하지만 여찌 보면 예술가와 장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아르티장에게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아르티장은 정해진 틀대로 상품을 찍어내는 숙련공도 아니고 실용성과 상관없이 절대적인 미(美)만을 추

구하는 순수예술가도 아니기 때문이다. 수공예품은 아티스트의 손에서 완성되지만, 그 시작은 세상과 소통하는 아티스트의 감성이다.

이 같은 아티스트의 딜레마를 풀어나가기 위해 랑프랑트에서는 세상과의 소통을 무척 중시한다. 그리고 그 소통은 부티크를 찾는 고객들로부터 시작된다.

랑프랑트의 조합원들은 한 달에 세 번 부티크에 나와 판매에 참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부티크에 들른 고객들과 대화를 나누며, 작품에 대한 의견을 얻을 수 있다. 도예가인 마리안 첼라(Marianne Chemla) 조합원은 “부티크를 찾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 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떤 부분을 좋아하고 어떤 부분을 아쉬워하는지, 공산품에서 느낄 수 없는 내 작품만의 매력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새로 구상하고 있는 작품에 어떤 시도를 할지, 디자인에는 어떤 변화를 줄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한다”고 전했다.

아티스트가 판매에 참여하는 것은 작품을 구매하려는 고객에게도 신뢰감을 주는 방법이다. 고객들은 작품을 만든 아티스트와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재질, 용도, 사용법 등 실용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고, 작품 안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조합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스마일’

한 달에 세 번 부티크에 나와 판매에 참여하는 것은 랑프랑트 조합원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여성복 디자이너인 브로넵 코찬스키(Bronek Kochanski) 랑프랑트 전 대표는 “조합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스마일”이라며 “부티크에서 즐겁게 웃으며 고객을 맞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객과의 소통 없이는 아티스트의 독창성 속에 현대 공예품의 흐름을 담는 일도, 아티스트의 열정이 담긴 작품을 판매하는

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랑프랑트, 아티장 그리고 삶

40여 년 전 퀘벡의 아티장들은 자신들의 부티크를 마련하기 위해 협동 조합을 만들었다. 그들이 원한 것은 공동의 부티크에서 작품을 판매하며, 지금까지 판매를 위해 기울였던 노력을 작품 제작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지금도 여전히 랑프랑트의 가장 큰 역할은 부티크를 통해 아티장들의 작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랑프랑트 예술인협동조합 가입 이후 아티장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

가장 큰 변화는 아티장들의 소득이 안정되었다는 점이다. 조합에 가입한 지 10년이 되었다는 리차드 하지 대표는 “소득의 크기만큼 중요한 것이 소득의 안정”이라며 “조합 가입 이후 소득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삶의 변화”라고 이야기했다.

삶의 변화가 작품의 판매와 소득의 증대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조합의 창립 멤버였던 샤타 오게르 Chantal Auger 씨는 “우리는 이곳에서 작품만 판매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워나갔다”며 “랑프랑트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자신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부티크를 운영하면서, 부티크를 찾는 고객들은 물론 아티장들 사이에서도 감성의 교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때 랑프랑트의 조합원이었던 폴레트 노 Paulette Naud 씨는 “나는 랑프랑트에서 공예 예술가로 성장했다”며 “판매와 창작 활동에서 한 단계 올라섰을 뿐 아니라, 인간관계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함께 일하며 작품의 전시와 판매에 있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스스로 제공받은 랑프랑트 조합원들은 사업 개발에 있어서도 민주적인 접근

방식을 취한다는 비전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아르티장으로서의 일상에도 변화가 생겼다. 랑프랑트에서 1년째 활동하고 있는 조합원 마리안 켈라 씨는 “퀘벡에서도 대부분의 아르티장들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며 “혼신을 기울여 만든 작품들을 판매하지 못하고 홀로 집에만 쌓아둘 때면 아르티장들은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켈라 씨가 랑프랑트에 가입한 이유는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아르티장이 고립에서 벗어나 세상과 소통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며 “이곳에서 사람들과 만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스스로 동기 유발이 된다”고 랑프랑트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를 설명했다.

따로 또 같이, 한 걸음 더 내딛다

소통과 교류를 중시하는 랑프랑트지만 아르티장들은 부티크를 통해 전시·판매뿐만 아니라 공유할 뿐 작업은 철저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지금은 버려진 옛 공업단지 등에 가난한 아르티장들의 작업장이 몰려 있기는 하지만, 조합원들끼리 작업장을 공유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작업에 사용할 재료 역시 아르티장들이 직접 선택한다. 작품 활동만큼은 아르티장 각각의 독특한 스타일과 재능이 살아날 수 있도록 개별적인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작품의 전시와 판매 역시 조합만을 통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조합원들은 랑프랑트가 아닌 다른 판매망을 통해서도 작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다. 단, 랑프랑트 부티크 인접 구역에서는 작품의 전시와 판매가 제한된다.

랑프랑트 부티크 인접 구역이 아니라면, 조합원의 다른 협동조합 활동에도 제약은 없다. 실제로 아주 오래전, 한 조합원이 작품의 판매를 위해 다른 협동조합에 가입한 사례도 있었지만, 랑프랑트 부티크에서 멀리 떨어



랑프랑트 부티크 내부

진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현재 랑프랑트의 조합원은 23명이다. 전체 조합원은 1년에 두세 번 조합원 총회를 갖고, 조합원 중 일부는 운영위원으로서 조합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출자금은 80캐나다달러다. 하지만 첫 1년 동안 예비 기간을 두기 때문에 조합원 가입 시에는 40캐나다달러만 출자하면 된다. 1년이 지나 랑프랑트에서 계속 활동하겠다고 결정하고 40캐나다달러를 마저 출자하면 예비조합원은 정식조합원이 된다.

아르티장의 조합원 가입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조합원 가입은 대개 기존 조합원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특정 분야의 수공예품을 다루는 조합원이 이미 많을 경우, 디스플레이 문제 등을 감안해 같은 분야의 조합원을 받지 않기도 하고, 조합 가입을 희망하는 아르티장의 스타일이 기존 조합원의 스타일과 많이 유사할 경우 조합원 가입을 거절하기도 한다. 신규 조합원 가입처럼 예민한 문제들은 모두 조합원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랑프랑트 부티크에서는 조합원뿐 아니라 게스트 아티스트라 불리는 비 조합원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부티크 운영을 위한 공동의 결정에 참여하는 조합원과는 달리 게스트 아티스트는 협동조합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부티크에 나와 판매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도 없다.

조합원과 게스트 아티스트의 가장 큰 차이는 조합원에게는 작품 판매액의 70%를, 게스트 아티스트에게는 작품 판매액의 50%를 지급한다는 점이다. 또한 아름다움과 독창성, 기술의 숙련도와 재료의 선택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작품의 디스플레이를 결정하는 것도 조합원만 할 수 있다. 조합원들은 판매, 관리, 유지 등 부티크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며 랑프랑트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스트 아티스트들은 랑프랑트 부티크에 다양성을 더하고, 협동조합 자체에 활력을 선사한다. 현재 랑프랑트 부티크에서 활



랑프랑트 부티크에 전시된 아티저의 작품들

동하고 있는 게스트 아티스트는 40여 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이곳에서 먼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게스트 아티스트 선정은 매년 초에 이루어진다.

수공예품에 퀘벡을 담다

랑프랑트 부티크에서는 젊은 아티스트, 이미 자리를 잡은 아티스트, 퀘벡으로 이주한 외국인 아티스트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처럼 매혹적인 문화와 세대의 융합 속에서도 랑프랑트를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다. 바로 퀘벡이다.

‘퀘벡 사람들이 퀘벡에서 만든 작품을 퀘벡에서 판매하는 것’은 랑프랑트 부티크가 추구하는 또 하나의 가치다. 그리고 이보다 중요한 것은 퀘벡의 문화를 그들의 작품 속에 담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랑프랑트 부티크의 작품들은 고풍스러운 석조 건물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조화를 이룬 이곳 몬트리올과 어딘지 모르게 닮아 있다.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손에서 전통적인 기술은 현대적인 감각과 만나 생동감을 발휘하고 독특한 현대 공예품으로 태어난다. 그리고 과거 세대의 숙달과 우리 시대의 걱정이 조화를 이룬 독창적인 작품들은 여전히 퀘벡 고유의 감성을 유지한다.

폭풍우를 이겨내는 커다란 배

랑프랑트의 지난해 매출액은 100만 캐나다달러 정도이다. 부티크 이전 후 매출이 늘면서 조합원 기금 적립도 다시 시작했다. (이전에 모았던 조합원 기금 10만 캐나다달러는 부티크 이전 비용으로 거의 다 사용했다.)

랑프랑트 부티크는 기본적으로 조합원들 스스로 운영하지만, 매니저와

파트타임 스탭들은 아티스트가 아닌 이들을 고용하기도 한다. 부티크 운영은 작품의 판매 수수료(조합원 작품 판매액의 30%, 게스트 아티스트 작품 판매액의 50%) 등으로 이루어지지만, 퀘벡 정부의 보조로 운영되는 문화기업협회(SODEC)에 1년 예산 내역을 제출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그 해 예산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조합원 교육은 지역 커뮤니티 조직과의 협력 속에 이루어진다. 커뮤니티 조직은 1년에 한두 번 랑프랑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가치에 대해 교육을 하고, 조합의 운영에 대해 자문을 한다.

마케팅 플랫폼의 변화에 따라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다. 랑프랑트 예술인협동조합 웹사이트에서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하면 아티스트와 새로운 작품, 다가오는 이벤트에 대한 정보가 담긴 뉴스 레터를 1년에 네 번 받아볼 수 있다. 하지만 수공예품은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아직까지는 랑프랑트 부티크를 통한 전시·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리차드 하지 대표는 랑프랑트 예술인협동조합을 커다란 배에 비유했다. 작은 배에서는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할 수 있지만, 커다란 배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폭풍우가 몰아칠 때, 작은 배는 위험

랑프랑트 예술인협동조합(la Cooperative l' Empreinte)

- 위치 : 88, rue Saint-Paul Est Vieux-Montréal Quebec, Canada H2Y 1G6
- 영업 시간 : 오전 11시~오후 6시, 연중무휴
- 웹사이트 : <http://www.lempreintecoop.com/>
(불어, 영어 지원. 온라인 쇼핑몰 운영)

하지만, 큰 배는 이겨낼 수 있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많은 이들이 힘을 모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40여 년의 세월 동안 큰 배처럼 유유히 앞으로 나아간 랑프랑트 예술인 협동조합. 이제 랑프랑트 부티크는 퀘벡에서 가장 오래된 부티크-갤러리 중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설립 이래 265명 이상의 조합원들(2014년 기준)이 랑프랑트 예술인협동조합을 통해 아르티장으로서, 기업인으로서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하며 공동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갔다는 점이다.

조합원의 시선으로 준비하는 총회

김현하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파트 파트장



코끝이 시린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즈음 협동조합에도 꼭 찾아오는 행사가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바로 정기총회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8조에는 반드시 총회를 설치해야 하며 소집은 누가, 의결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총회를 했는지 물어보면 그걸 그렇게 제대로 해야 하는 거냐고 묻는 이들도 있고, 간단하게 압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는 이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물음 속에는 사업할 시간도 부족하는데 총회할 시간이 어디 있나 하는 간절함도 담겨 있는 것 같아 마냥 모른 척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총회의사록 양식만 보면 총회는 형식적이고 번거로운 일이어서 넘어야 할 산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총회는 의사결정의 최고 단위 기구이자 민주적인 운영 원리의 기초입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보호된 역할입니다. 법률로 보장되지는 않았지만 총회의 또 다른 역할 중 하나는 '공지성'입니다. 협동을 만들기 위해 '함께합시다'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협동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 자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을 알 때 행동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총회라는 의례ritual는 의사결정의 최고 기구일 뿐만 아니라 공동이 메시지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협동을 촉진하는 좋은 수단이기도 합니다.

법률로 보장된 내용은 아니지만 조합원에게 다양한 가치와 비전을 제시해주고 정보 교류와 교육,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제공하는 것도 총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조합원들을 모아놓고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대로만 총회를 진행한다면 지루하고 단조로운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원들은 더 좋은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무관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예측적 삶을 거부하고 자립적인 주체가 되기를 기꺼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의 방향을 결정하러 모이는 곳이 총회입니다.

니다. 총회만 봐도 그 협동조합이 조합원과 얼마나 소통하고 민주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매출이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조합원 없이 협동조합이 있을 수 없듯 조합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한 걸음으로 총회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말을 맞이해 '더 성공적인 총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성공적인 총회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

총회는 법률로 보장된 공식 기구이자 조합원과 다양한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안전을 심의하고 의결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에게 한 해의 활동과 기록을 보고합니다. 안으로는 고생한 임직원들에게 1년간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내년 한 해를 새롭게 다짐하는 기회로 삼기도 하죠. 그런데 조합원 수가 10명이 넘게 되면, 총회를 혼자 맡아 이것저것 준비하는 일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총회준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총회준비위원회에서는 총회의 전체적인 구상과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각각의 역할을 배분해 언제까지 준비할 것인가를 점검합니다. 필요하다면 워크숍을 열기도 합니다. 보통 총회 2개월 전부터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규모가 조금 작은 곳은 1개월 전부터 하기도 합니다. 조합원 수가 적은 협동조합의 경우, 모이는 사람이 적겠지만 아무리 축소한다하더라도 사업을 결산, 평가하고 차기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본질적인 일은 총회에서 생략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을 멈추고 총회를 할 수도 없으므로 사전에 역할과 책임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총회준비위원회에 참여할 조합원을 선택할 때 연령별, 성별 안배를 골고루 하는 것도 참고해볼 만합니다. 협동조합 내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회준비위원회에 청년이 참여하도록 하거나 총회 이벤트에 청년이 즐길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관점 자체가 새로운 시각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회준비위원회에 일반조합원이 참여하면 이사 및 대표의 관점이 아닌 일반조합원의 관점으로 협동조합을 볼 수 있습니다. 총회준비위원회는 조합원의 요구를 대변해야 하는 책임과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했는데 조합원이 참여하지 않는다, 이사회에 이사가 참여하지 않는다, 총회에 조합원이 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의심하기 전에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관점에서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 총회준비위원회가 꾸러졌다면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관점에서 생각하기

총회를 1년에 한 번 있는 가장 큰 교육 이벤트라고 부르는 것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아는 것이 때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분야를 너무 깊이 알면 잘 모른다는 것의 감각을 잃어버려 비전문가와 소통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할 때도 조합원의 관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협동조합에 대해서 잘 몰라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인데, 생각해보면 협동조합을 설명하는 것이 복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에 관한 퀴즈를 내고 함께 풀어볼 수도 있고, 협동조합의 자본참여 방식, 의결권의 특징 등을 카드 게임을 통해 쉽게 접근해볼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를 환기하는 것이죠. 훌륭한 연사를 초청해 총회의 격을 높이고 조합원들을 모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때도 조합원의 관점을 잃어버리면 잘 아는 것의 저주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조합원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야 하는 것 중 중요한 하나가 회계입니

다. 회계감사보고서와 결산정보는 조합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정보지만 동시에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내용입니다. 결산정보에는 예산 대비실적표, 재무제표, 현금흐름표 등이 제공되는데 여기에는 자산, 부채, 자본과 같은 용어뿐만 아니라 감가상각, 유가증권, 지불어음과 같은 생소한 용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용어를 바로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협동조합에 얼마나 될까요? 기업을 운영해본 경험이나 회계를 배운 적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겐 어렵고 낯선 단어입니다. 총회라는 공간이 조합원과 소통을 위한 자리라면 낯선 언어들 좀 더 쉽고 익숙한 방법으로 서술되어야 합니다. 그림과 그래프를 통해 재무 상황을 설명해보려는 시도는 어떨까요? 물론 연차보고서 수준으로 만들면 예산이 들지만, 총회 자료집과 별도로 보조 발표 자료 등을 추가적으로 만들면 큰 비용 없이도 설명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엑셀 시트 한 장을 가득채운 재무제표의 숫자만으로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유추하기 쉽지 않습니다. 작년도, 재작년도와 비교해 재무 상황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부채가 현재 자산 대비 몇 %인지, 총지출에서 인건비 비중은 몇 %인지 등 조합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별로 가공된 재무지표를 제공하면 그 의미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회를 흥미진진한 토론과 즐거운 축제로

총회는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적 기능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육도 그렇지만 총회도 일방향일 수 없습니다. 양방향 소통이 필요합니다. 특히 총회는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과 의심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조합원이 무슨 질문을 할지 알 수 없지만, 많은 경우 조합의 재정 상태나 정책에 대해 그리고 향간에 떠도는 루머에 대해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만큼 흑색선전

과 루머에 취약합니다. 루머를 덮어놓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과 염려들을 해소해야 합니다. 다만 토론 과정에서 논의가 과열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 과정에 참여한 협동조합 리더의 섬세한 조정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 때문에 조합원과 소통하는 것을 외면한다면 더 심각한 갈등일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험담을 늘어놓는 것보다는 관련된 내용을 공론화하여 논의를 통해 오해를 최소화하는 게 보다 나은 일입니다.

최근 한국을 찾은 몬드라곤 라보랄쿠차¹의 전 대표는 협동조합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므로 협동조합 원칙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세 마리아 신부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존속하는 것이 생동감의 징후가 아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그리고 적용하는 것이 생동감이다.” 협동조합에 상상력이 필요한 이유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본질을 잊지 않고도 협동조합의 가치를 추구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ICA가 발표한 <협동조합 10년을 위한 청사진>에서도 협동조합은 미래의 리더인 청소년, 청년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온라인을 이용해 조합원들이 새롭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총회의사록 양식을 정부에서 제공하기 전에는 총회의사록을 공유해달라는 요청도 많았습니다. 형식과 절차가 생소하다 보니 참고자료 없이 실행하기 어려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형화된 샘플을 보면서 총회의 방법을 가늠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형식이 굳어지면 또 하나의 깨어야 할 틀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학교협동

1 라보랄쿠차(Laboral Kutxa)는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가장 큰 은행으로 몬드라곤의 노동인민금고(CAJA LABORAL)와 신용조합 이파르쿠차(Ipar Kutxa)가 합병하면서 탄생했다. (편집자 주)



자리에 놓인 사진과 꽃 화분으로 총회의 분위기를 새롭게 했던 인천아이쿱생협

조합에서는 총회의 형식성이 그 자체로 부담입니다. 어려운 용어와 법률적인 절차, 거기에 공증에 필요한 다양한 서류는 청소년들의 협동조합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호세 마리아 신부의 말처럼 협동조합이 존속이 아니라 매번 새롭게 태어나야 할 운명이라면 총회 또한 조합원과 소통하고 유대를 만드는 일로서 즐겁고 흥미로운 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협동조합의 상황에 맞춰 재정비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조합원과 소통하는 데 경직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16년 초 인천아이쿱생협에서는 총회를 찾은 조합원들이 앓을 테이블마다 총회 자료집과 함께 1년간 고생한 조합원의 사진과 꽃을 준비해두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안건보다 1년 동안 고생한 조합원을 위로하고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이야말로 꼭 통과시켜야 할 안건이 아닐까요? 경직된 사고를 버리고 마음을 열면 총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회를 보면 협동조합이 보인다

총회에 참석해보면 협동조합의 관점과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주식회사의 투자자와는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에서 오는 긴장과 화해 속에 협동조합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사업으로서 비전과 전망도 있어야 합니다. 사업 손실이 크면 우려와 걱정의 분위기가 협동조합 전체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얼마를 벌었고 또 얼마를 손해 보았다는 내용만이 협동조합의 전부는 아닙니다. 협동조합은 왜 존재할까요? 조직은 개별 조합원의 필요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합원입니다. 과잉보호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불확실한지, 개인의 욕구가 얼마나 다양한지, 우리의 요구가 얼마나 모순투성이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복무하는 조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협동조합이라는 한 배에 올라탔지만 거기에는 조합원마다의 다양한 동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 때문일 수도 있고, 주인이라는 역할에 큰 자긍심과 삶의 변화를 체험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특별한 동기를 가지고 참여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조합원이 오해하지 않도록 협동조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나누고, 협동조합의 지향성을 공유하는 것이 총회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총회는 관리자가 아니라 조합원들을 위한 자리이고 시간입니다. 조직 뒤에 조합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 앞에 조합원이 있습니다. 조합원이 손님이 아닌 주인이 되는 총회가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어떤 잘못도 없는 가난의 세습, 그 비극의 목격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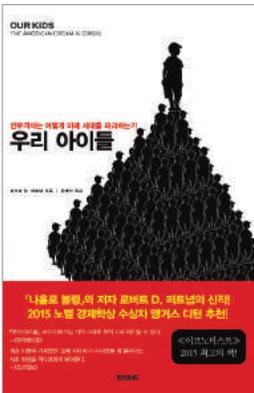
『우리 아이들 : 빈부격차는 어떻게 미래 세대를
과괴하는가』

로버트 D. 퍼트남 지음/정태식 옮김,

페이퍼로드, 2016

정설경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캠페인팀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는 ‘국가 재건’과 ‘아메리칸 드림의 복원’을 소감으로 대신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린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본다면, 트럼프가 말한 ‘아메리칸 드림의 복원’이 그 본질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 길은 없다. 다만 ‘아메리칸 드림’은 오랫동안 미국인들의 절대적인 열망이었고 자부심이었음은 분명하다.

이 책에서 아메리칸 드림은 기회 균등과 평등의 가치 속에 누구나 사다리를 오를 수 있었던 시절로 기억한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그들이 태어난 가정, 그들이 받은 양육과 교육, 그리고 그들이 자라난 공동체 등을 직접 조사하

는 방대한 연구가 담겨 있다.

아메리칸 드림과 아메리칸 악몽의 대비

피트넘을 비롯한 일련의 학자들은 1950년대가 한 세기를 통틀어 사회·경제적 장벽이 가장 낮았던 때라고 평가한다. 사회·경제적 장벽이란 기회를 통해 장벽을 얼마만큼 극복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데 일정한 경제와 교육 수준을 갖춘다면 신분 장벽이 극복되고 소득 향상이 가능했던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웃 간이나 학교에서 계급 차별이 적었던 시절이기도 하다. 결혼이나 교류를 통한 계급 이동이 가능하며, 시민 참여와 사회적 연대는 활발한 편이었다. 낮은 계급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사회·경제적 계단을 오를 수 있었다. 소위 사다리 올라타기나 갈아타기를 의미한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경제적 지위는 세대로 전달되며, 우리 아이들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다시 다음 세대로 전달될 위험을 안고 있다. 계급 별로 거주하는 주거지가 구별되고, 학교도 다르며, 양육 모습도 다르다. 공동체의 사회관계망도 서로 달라졌다. 이렇게 계급이 무너지진 주요 요인으로 저자는 노동계급의 위기를 읽어냈다.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온 지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그것에 의지해 지내온 노동자 가족의 삶이 흔들렸다는 것이다. 함께 어울려 살아왔던 지역은 잘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주거지역이 구별되기 시작했다. 빈곤아동이 생겼다. 아동 빈곤율이 지역에 따라 1% 대 51%로 극심하게 벌어졌다.

이런 결과는 가족의 빈곤으로 끝나지 않고 아이들의 기회격차-opportunity gap가 벌어지는 것으로 이어졌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기회를 갖거나 또는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뉘었다. 같은 지역에서 1950년대의 가난한 아이들보다 지금의 가난한 아이들이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가난의 두께가 과거보다 심각해졌다.

우리 아이들의 기회격차^{opportunity gap}, 생애기회^{life chances}

퍼트남은 오늘날 미국의 아이들 사이에서 기회 분배가 적정한지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의 해답을 찾고자 했다. 각기 다른 사회적, 경제적 출신 배경을 가진 젊은이들이 동등한 생애기회^{life chances}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Green Depression}을 겪으며 경제적 피라미드가 평평해졌고, 1910년부터 1970년까지 소득분배가 균등해졌다고 한다. 그러나 1970년대 초부터 이런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완만하게 이뤄진 기회의 분배가 빠르게 역주행했다. 부자와 빈자 사이의 격차는 부와 행복, 심지어 기대수명을 포함한 복지에서도 벌어졌다.

기회격차와 생애기회에 차별이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 딱 잘라 지목하지 않았지만, 부추기는 요인은 확실했다. 변화된 가족 구조와 사적 역할로 강화된 양육 패턴, 그리고 학군으로 구별된 차별적인 학교 교육이 그것이다. 공동체 모습도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관찰됐다. 양육이나 학교 교육을 공적 역할로 요구하지 않고 개인적 책임으로 간주하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어른들에게서 멀어졌다. 내 아이만 책임지면 된다는 믿음이 확고해진 사이 우리 아이들의 기회격차와 생애기회는 더 큰 차별로 이어졌다.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 : ‘내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들’

소득 불평등과 기회 불평등의 연계는 간단히, 순간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 달리기를 하려는데 출발점이 달라져 아이들의 기회격차는 더 벌어졌다.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아이들은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기회격차는 정치적 평등성과 민주적

인 정당성을 훼손시킨다. 기회격차를 줄일 묘안이 필요했다. 저자는 누구나 우리 아이들을 돌봤던 비공식적인 공동체가 아이들의 기회격차를 줄여 준다고 조언한다. 소위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사회관계망을 의미한다. 시민협의회, 종교기관, 운동단체, 자원봉사 활동에 지역사회와 비정부 민간기구를 포함해도 좋겠다.

사회자본은 개인이나 공동체 모두의 행복을 예견할 수 있는 강력한 지표임을 연구자는 반복해서 입증했다. 개인의 건강, 행복, 교육적 성공, 경제적 성공, 공공 안전, 그리고 아동복지는 사회관계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내 아이를 '우리 아이들'로 여긴다면 '사회자본'으로서 공동체의 결속과 사회관계망을 활용해서 돌봄을 함께 담당하는 것이다. 공동체를 통한 자연발생적 돌봄은 사라졌지만 공동체가 돌봄의 주체로 나서도록 복원하려는 움직임은 우리에게도 있다.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지역 발전의 미션을 담당하는 협동조합이 있고, 먹을거리로 세상과 소통하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생협이 움직이고 활발하다. 아직 자그마한 시도이지만 돌봄을 활동과 사업의 동력으로 이해하면서 지역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과제를 준비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삶을 협동조합 생태계로 꾸리는 움직임은 우리 아이들을 지속 가능하고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할 어른들의 책무일 것이다.

퍼트넘은 1950년대 졸업식 풍경을 회상하며, 제목을 '우리 아이들'로 지었다. 당시 졸업식은 지역 공동체의 축제였고 공동체 성원이라면 누구나 졸업식에 참석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든 졸업생들을 '우리 아이들'로 생각했다. 사라진 가치를 추억하며 복원하고 싶어하는 것은 미국도 지금 우리와 다르지 않다. 사회 이동에서 일어난 급속한 변화를 목격한 것은 이 연구의 비극이지만, 우리 아이들을 함께 돌봐야 하는 미션을 자극한 유익한 연구이기도 하다. 보다 넓은 공동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야말로 사회 자본주의자가 실천하는 덕목이고, 한 아이의 삶에서는 매우 중

요하다는 그의 지적은 격언처럼 새겨졌다. 방대한 연구 사례는 부모들이 양육서로 읽어야 할 만큼 생생한 목격담이다.

서평

이 시대의 인의(仁醫)를 찾아서

『참 좋은 의료공동체를 소개합니다』

임종한 외 지음,
스토리플래너, 2015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우리나라에 과연 진정한 의사, 다시 말해 소위 인의(仁醫)가 있을까? 생·노·병·사 중에 인간의 힘으로 어느 정도 그 고통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병(病)’인데, 그것을 제어할 힘이 없어 서럽고 억울하고 한탄스러운 이들을 위해 자신의 의술을 아낌없이 그리고 조건 달지 않고 제공하는 의사를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이 책은 이런 질문에 회의적인 답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답(答)이 아닐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개가 존재하고, 아시아 지역에만도 300개 이상이 있으며, 일본에는 119개가 존재하는 의료협동조합. 그러나 한국에는 1994년 안성의료협동조합을 시작으로 2014년 말 고작 20개의 의료협동조합이 존재하고 있다. 결코 우리나라의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 실정이라 할지라도 이런 희망의 움직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인의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개탄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 의사들만을 탓할 일은 아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며 뛰는 가슴과 타오르는 열정을 품는 예비 의사들, 의료 현장에 있으면서 수술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암환자의 현실과 마주하며 가슴 아파하는 의사들, 감당할 수 없는 입원비 때문에 퇴원 수속을 밟으며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는 소아암 환자 부모를 보며 눈가가 시려오는 자신을 발견하는 의사들이 왜 앓겠는가?

결국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인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의 탓이라기 보다는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이들을 이익 추구자profit-seeker 또는 효율적 경영의 도구로 내몰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의료기관 중에서 국공립 의료기관의 비중이 기관 수로는 5%, 병상 수로는 12%만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 행위별수가제로 보건의료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이를 기정사실화하여 심사평가원에서 정상적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따지는 현실, 어떤 진료과목을 택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수입의 차이, 부와 명예의 차이가 발생하는 현실, 그래서 진실로 자기가 꿈꿔왔던 진료과목의 전공의를 포기하는 나약한 자신을 확인하는 현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2%에 머물더라도 수많은 비급여를 발굴하여 의료기술 개발이란 명분으로 병원의 이익 추구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현실, 보수 정부에 의해 버젓이 의료민영화 정책이 추진되어 의료 행위를 통한 영리 추구가 법적으로 조장되고 있는 현실 등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의사가 특권과 권위의식에 물들어 환자로부터 외면 받는 존재로 전락하고 있는 이유라고 봐야 한다.

그러나 여기 20개의 의료협동조합을 열고 그곳에서 청진기를 대고 있는 의사들은 적어도 이런 현실에서 작은 저항의 몸짓을 행하고 있다. 이런 의사들의 족적을 밝혀놓은 것이 바로 이 책이다. 물론 이들이 인의의 반열에 올랐다고 자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여전히 의료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타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은 뜻을 같이하는 주민들, 동료들과 함께 인의의 전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생^{未生}의 불완전체일이지 모른다.

그럼에도 이들의 몸짓과 시도가 한국의 의료계와 지역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적지 않다. 그러기에 이 책의 가치는 빛난다.

책은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축은 10명의 의사 및 사회적경제 전문가가 ‘왜 의료공동체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풀어낸 11개의 해법을 제시하는 형식, 또 다른 한 축은 실제 운영되고 있는 의료협동조합의 산 역사를 증거하는 형식이다. 이 두 가지 축이 서로 교차하며, 의료공동체의 거시적 존재 이유와 그것이 실제로 작동되는 형상을 동시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점이 독특하다.

전자에 대해 이 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답을 내놓고 있는가? 바로 의료공동체가 ‘민주적 공공성에 기초한 지역건강레짐’을 만드는 견인차라는 답도 있고, 의료민영화와 대조적으로 공공성을 실현하는 의료의 대안적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위험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협동사회로 가기 위해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깨닫고 지혜를 얻어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깨닫게 한다는 불교 교리인 자리아타(自利利他)의 관계를 위해서, 1차 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이 죽은 영역을 살리기 위해서 등을 의료공동체의 필요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후자에 대해 이 책은 최초의 의료생협인 안성의료사협의 역사에 대한 생생한 기록에서부터 2013년에 문을 연 느티나무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주치의’를 위한 고군분투기까지 그 실상을 담담히 소개한다. 한눈에 모든 의료사회협동조합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접할 수 있게 해준다.

여기서 소개한 이들 의료공동체들은 두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하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형식을 빌리는 데에 동의했다는 점이다. 자주, 자립, 자치의 협동조합 원리를 바탕으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공익사업에 기여하는 조직 형태인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오늘날 의료기관들이 내재한 ‘영리의 틀걸이’를 완전히 배제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복지’라는 용어를 빌려와 ‘의료복지’라는 개념으로 의료의 차원을 한층 더 승화시켰다

는 점이다. 의료라는 용어만으로는 대중의 신뢰와 공익의 실현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 현실에서 의료복지라는 용어는 원래 의료의 근간인 ‘사람을 살리는 일’, 그러기 위해 ‘사람의 안녕과 행복의 총체를 추구하는 일’의 의미를 연상시키기에 적합한 형태이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외피를 가지고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의료의 원래 목적인 ‘사람 살리기’를 행하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간단히 말해 의료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해 이 책만큼 안정맞춤인 책은 없다.

다만 이 책은 대중서로서 지역의 공동체적 시도에 국한해 있다 보니 이러한 시도가 한국의 의료 지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안에서 의료의 본성을 억누르고 있는 질곡들이 어떻게 깨질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시도들이 몇몇 지역의 일부 주민과 인인들의 목가적 공동체에서 어떻게 더 큰 대한민국 의료공동체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그것은 또 다른 작업의 결과물을 통해 기대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한국 의료의 변혁에 목마른 자에겐 이런 성급한 요구를 벌써부터 갖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작업의 결과물을 기대하게 하는 동시에, 한국 의료의 변혁에 목마른 이들에게 변화의 욕구를 끌어오르게 한다는 점에서 이미 소중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돌봄’의 문제를 고민하는 해외 협동조합

이주희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국제협력파트

영국의 돌봄협동조합 CASA

●●● 지난 10월 3일 영국의 돌봄협동조합 CASA의 창업자인 가이 턴불Guy Turnbull 박사가 제18회 영국 EY 최우수 기업가상EY Entrepreneur Of the Year¹ 중 사회적기업 부문을 수상했다.

영국 북부에 기반을 두고 6개 지역에서 매주 총 2만 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CASA의 기원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3년 건축협동조합의 선구자였던 선더랜드인 Sunderlandia에서 일하던 벽돌공의 아내였던 마가렛 엘리엇 Margaret Elliott은 여성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지고 리틀 위민Little Women을 설립하여 1976년 식료품점과 유아원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이후 직원 소유의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는 방문돌봄서비스 전문 사회적기업인 선더랜드 홈케어Sunderland Home Care Associates, SHCA를 설립했다. 2004년 선더랜드 홈케어의 성공적인 사례를 타 지역에도 전파하기 위해 분화한 것이 CASA^{Care and Share Associates}이다.

1 글로벌 회계, 컨설팅 법인 Ernst & Young 이 매년 도전과 리더십으로 혁신을 이끌어가는 모범적인 기업을 선정하는 시상식

CASA는 주로 고령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돌봄, 전문인 간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수혜자들이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자 직원협동조합이다. 현재 노동자이며 동시에 CASA의 소유자인 8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매출 1,400만 파운드를 기록하고 있다.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CASA 아카데미를 통한 직원 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직원들 간의 공정한 성과 배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CASA의 수익 3분의 1은 노동자에게 돌아가며 나머지는 사업과 서비스에 재투자된다.

CASA www.casaldtd.com

SHCA www.sunderlandhomecare.co.uk

싱가포르의 고령자 스스로가 만든 협동조합

●●● 지난 11월 16일 발표된 싱가포르 보험협동조합인 NTUC 인컴Income과 리엔Lien 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세에서 75세 약 1천 명의 싱가포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50%가 노인복지시설을 향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60%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1인실 또는 2인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약 5만 명의 고령자들이 노인복지시설을 필요로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시스템으로는 약 1만 2천명만이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싱가포르 사회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 국민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지난 1970년 13.5:1에서 2030년에는 2: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의 구성원이 1인 이상인 가구 비율은 2010년 21.1%에서 2014년 29.6%로 증가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구의 60%가 경제적으로 은퇴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싱가포르 협동조합운동은 고령자의 지원과 포용이라는 사회적인 요구와 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SNCF싱가포르전국협동조합연합은 신규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실버 호라이즌Silver Horizon 여행협동조합은 2012년에 18명의 고령자들이 고령자들을 위해 4만 5천달러의 자본으로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이 협동조합은 고령자들을 위한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고령자들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여행 전후에도 교류 행사와 만남 등 다양한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조합원의 자격은 40세 이상의 싱가포르 거주자로, 할인된 가격으로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2014년 기준 총 200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최고령자는 86세, 가장 젊은 조합원은 41세이다. 기존의 여행사들과 협의하여 조합원들의 연령, 취향, 식사 등에 맞춘 연간 약 10회의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회 약 20~30명의 조합원들과 배우자들이 참여한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활동과 사업을 통해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통합되고 소외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조합원뿐만 아니라 외부 복지기관 등과 협력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 직원은 고용하지 않으며 조합원으로 구성된 집행위원들이 봉사활동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한다.

실버호라이즌협동조합 www.silverhorizontravel.com/

NTUC 인컴 income.com.sg/

더스트레이즈 타임즈 www.straitstimes.com

고령화사회에 대응하는 일본 생협운동의 다양한 노력

●●● 2016년 2월, 일본 총무성의 조사 발표에 따르면 일본 총인구는 1억 2,711만 명으로 2010년 조사보다 약 947,000명이 감소했다. 반면, 1994년 14%였던 고령화율은 2007년 21%를 넘어 일본은 현재 초고령·인구감소 사회가 되었다. 이에 맞서 일본 생협운동은 조합원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품질의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의 변화에 따라 지역과 연계한 복지와 개호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이 중 도치기^{栃木}생협은 2000년 개호보험제도² 도입과 함께 조합원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개호 및 복지지원 사업을 펼쳤으며, 2006년에는 사회복지법인 후레아이생협의 설립을 인가받았다. 2016년 5월 현재 특별양호 노인 홈과 소규모 다기능 거택개호³를 포함한 21개의 사업을 10개 사업소에서 전개하고 있으며 연간 수입은 14억 엔, 직원 수는 420명으로 성장했다. 7개 사업소에서 전개하고 있는 데이서비스(통원개호) 중 하나인 데이서비스센터 이마이즈미^{伊予}는 도치기생협의 매장과 함께 진료소와 방문간호 스테이션도 병설되어 있어, 생협과 함께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고 있다. 또한 재택방문사업으로 24시간 정기순회 수시대응형 방문개호간호라고 하는 ‘코프안심케어시스템 미도리^{みどり}’를 새로이 시작하여 4교대로 정기 방문 순회와 긴급 방문을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고령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 생협은 매주 동일한 담당자가 동일한 조합원을 대면하는 전국 배송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지킴이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 협정은 생협 배송 담당자가 배송 시 조합원이나 지역 고령자의 문제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연락하여

2 개호(介護)는 곁에서 보살핀다는 뜻으로 수발, 간병을 의미하며, 개호 보험 서비스는 2006년부터 민간에 위탁됐다. 생협들은 이 과정에 적극 참여해 정부 위탁 개호 보험 서비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3 일반 가정집을 노인들이 생활하기 편리하게 개조한 것

조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조사에 따르면 협정을 맺고 있는 지자체 수는 2016년 5월 기준 전체 지자체의 50%를 넘었다.

COOP Navi 2016년 8월호
후레이이 생협 fureai-coop.com

생협평론 2010 겨울(창간호)

발간사 협동조합에 대한 건강한 담론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 정병호(iCOOP협동조합연구소장)

축사 인간의 본성, 그리고 생협

— 정태인(경제평론가)

열린 생협 운동의 비전제시를 기대하며

— 이정주(iCOOP생협연합회 회장)

길잡이 iCOOP생협, 세상에 말 걸다

— 염찬희(편집위원장)

창간 특집 **윤리적 소비, 신자유주의 질서를 거스르다!**

소비가 이념적이고 윤리적이기까지 한 까닭은?

— 이정옥(대구가톨릭대 교수, 사회학)

윤리적 소비의 경제학적인 이해와 생협의 선택

— 김형미(메이지대학원 정치경제학 박사후기과정)

iCOOP생협과 윤리적 소비

— 정원각(iCOOP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유럽의 윤리적 소비

— 이의남(iCOOP고양생협 이사)

[창간 특집 좌담]

윤리적 소비는 생산, 소비, 노동 모두를 고려한다

— 김아영, 김미영, 송정임, 우분주

이슈 옹포 금강에서 사라진 이름들

— 송기역(르포작가)

투기자본이 판치는 세상, 공정무역은 위태롭다!

— 허영구(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만화가)
협동조합 소식	한국의 공정무역 현황 —김태연(iCOOP생협개발부 무역팀장) 유럽 협동조합의 사례 : 경제 대안 운동 —정원각(iCOOP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지금 해외에서는 —이주희(iCOOP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
돌발논문	우리는 속고 있다, 속는 줄도 모르고 —노종면(전국인론노조 민주인론실천위원장, 천안합인론검증위원)
서평	『생명을 살리는 윤리적 소비』 —이선옥(구로생협 문화위원, 르포작가)

생협평론 2011 봄(2호)

길잡이	먹을거리만 다루라고요? —염찬희(편집위원장)
특집	경쟁의 생산에서 협동의 생산으로 WTO-FTA 시대 한국의 농축업정책,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권영근(생명창고·지역순환형 사회형성추진운동협의회 상임대표) 한국 농업의 위기와 협동조합의 과제 —정은미(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협동과 상생의 대안 만들기 : 배추파동을 통해 생각해보는 생협운동의 비전 —허현중(지역재단 기획이사) 아이쿱은 왜 생산의 문제를 고민하는가? —신성식(아이쿱생협 생산법인 경영대표) [좌담회] 생산자들에게 듣는다 : 한국농업현실과 아이쿱 생산정책 —김진원, 박석원, 오미예, 유재흠, 주정산

- 이슈**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 서분숙(르포작가)
 복지논쟁의 주요 쟁점들을 해부한다
 —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조합원 활동가들의 활동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 정원각(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 아이쿱생협 만평** — 이동수(만화가)
- 들발논문** SSM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 친서민 대 친대기업으로 양분되는 보도
 — 김서중(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서평** 『식품주식회사』
 — 엄은희(부산대학교 HK교수)
- 협동조합 소식** 지금 해외에서는
 — 이주희(아이쿱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

생협평론 2011 여름(3호)

- 길잡이** 협동조합 공부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 엄찬희(편집위원장)

특집 협동조합 제대로 이해하기

협동조합이란? : 경제학적으로 이해하기

— 정태인(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신뢰의 생산이 협동조합의 본성

— 정찬울(친환경유기식품유통인증협회 사무국장)

왜 협동조합은 규모 확대 문제에 더 민감한가

— 장종익(연세대 경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일본 생협이 직면한 과제와 조합원 참여 시스템

(日本の生協が直面する課題と組合員の参加システム)

— 丸山茂樹(JC総合研究所、客員研究員) / 번역: 김연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좌담회]

생협, 규모가 커지면 협동조합 정신이 훼손될까?

—김영숙, 이금자, 이필구, 김아영

이슈 3.11 농협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이호중(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 연구기획팀장)

건강보험 하나로운동, 참여할까, 말까?

—강상구(『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저자)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만화가)

돌발논문 에너지 위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할까?

—이유진(녹색연합 녹색에너지디자인팀장)

서평 『건강한 경제모델 프라우트가 온다』

—오귀복(아산YMCA생협 이사)

협동조합 소식 지금 해외에서는

—이주희(아이쿱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

생협평론 2011 가을(4호)

길잡이 모두에게 좋은 세상을 위해

—염찬희(편집위원장)

특집 복지사회, 협동과 참여

복지국가운동과 협동조합운동

—정승일(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복지사회의 이행전략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에 관한 탐색

—장원봉(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교수)

협동조합운동과 복지

—김형미(메이저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선수금 운동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협동조합 경제

—오향식(아이쿱생협연합회 사무처장)

[좌담회]

협동과 참여, 그리고 복지

— 권순실, 김민경, 이미연, 장남희, 김아영

이슈

협동의 정신과 평창 동계올림픽

— 우석훈(2,1연구소 소장)

생협법 개정, 기회를 놓치면 위기가 된다

— 김기태(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와 한국협동조합의 나아갈 길

— 홍광석(국제협동조합연맹 분과기구담당)

아이쿱생협 만평 — 이동수(만화가)

르포

제2·제3의 용산, 명동3구역을 말한다

— 유채림(소설가/ 홍대철거현장 '두리반' 주인)

서평

『복지국가 스웨덴 : 국민의 집으로 가는 길』

— 허인영(아이쿱구로생협 조합원)

협동조합 소식 — 지금 해외에서는

— 김영미(아이쿱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

2011 윤리적소비 공모전 수기부문 당선작

우리는 사회공헌반이다!!!

— 류지형(교사)

위대한 생산

— 김시은(주부)

내가 공부하는 이유

— 유형석(용인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생협평론 2011 겨울(5호)

길잡이

협동조합님,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어주세요

— 엄찬희(편집위원장)

특집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 김찬호(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두레생협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과 의미

— 권순실(생협전국연합회 전 회장)

지역사회에서, 생활인이, 만들어가는 소박한 복지

: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협동복지사업

— 박제선(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기획부)

나눔과 협동이 건강을 만든다 : 의료생협

— 조병민(대전민들레의료생협 전무이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와 한살림의 '지역살림운동'

— 정규호(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실장)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이쿱생협

— 김대훈(아이쿱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장)

일본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

(協同組合と地域社会への貢献)

— 北川太一(福井県立大学経済学部 教授) / 번역 : 김연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좌담회]

지역 활동가들이 보는 협동조합의 나눔 활동

— 김이창, 이진홍, 이해정, 정경섭, 김아영

이슈

종편 방송을 어찌 할꼬?

— 정연우(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사람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 '반값 등록금'과 교육복지 실현!

— 안진걸(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아이쿱생협 만평

— 이동수(만화가)

르포

강은 가르지 않고 막지 않는다

— 서분숙(르포작가)

돌발논문

지속 가능한 사회는 행복한 노동에서

— 하종강(성공회대학교 노동대학장)

서평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

— 차형석(시사IN 기자)

협동조합 소식 지금 해외에서는

—김영미(아이쿱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

생협평론 2012 봄(6호)

길잡이 지금, 시민이 주인인 세상을 말해야 한다

—염찬희(편집위원장)

특집

민주주의와 협동조합

민주주의 발전에서 협동조합의 역할

—정태인(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민주주의를 훈련시켜온 유럽의 협동조합들

—정원각(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유럽의 협동조합기업 : 경제민주화 구현 현장

—김현대(한겨레 선임기자)

일본의 협동조합 민주주의 : 그 성과와 과제

(日本における協同組合民主主義 : その成果と課)

—杉本貴志(関西大学商学部教授) / 번역 : 김연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1970년대 한국 협동조합의 민주주의 지향성

—신철영(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친환경유기식품클러스터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좌담회]

협동조합이 민주주의를 말하다

—신종철, 안상연, 오귀복, 이화수, 홍준호, 김이영

이슈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과 의미

—박범용(한국협동조합연구소 협동조합형기업지원팀장)

철도민영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몇 가지 것들

—박홍수(공공운수정책연구소 연구원)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만화가)

르포	세 가지 물음 : 정리해고 철회투쟁 1000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 이야기 —연정(르포작가)
돌발논문	소셜미디어로 그리는 소셜디자인 —고재열(시사IN 문화팀장)
서평	『민주주의 색깔을 묻는다』 —조영훈(청년유니온 조합원)
협동조합 소식	지금 해외에서는 —김영미(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대외협력팀)

생협평론 2012 여름(7호)

길잡이	탐욕이 아닌 필요에서 출발하는 협동조합 —염찬희(편집위원장)
-----	--------------------------------------

특집	<p>세계의 협동조합</p> <p>주택협동조합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시사점 —기노채(아틀리에 대표이사, 주택건설협동조합준비모임 대표)</p> <p>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김신양(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부회장)</p> <p>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역사와 한국에서의 전망과 과제 —김성오(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p> <p>소비협동조합의 과제와 대안 —전형수(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p> <p>신용조합과 협동조합은행 —김창진(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p> <p>생산자협동조합의 생성과 진화 —장종익(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교수)</p>
----	---

[특별기고]

살아 있는 역사

: 50년 전, 영국 북서부의 협동조합 매장 근무를 추억하며

(Living History

: Working at the Co-op in north-west England fifty years ago)

— 로저 리차드슨(R. C. Richardson, 영국 윈체스터대학 명예교수)

[좌담회]

새로운 협동을 모색하는 협동조합들

— 국태봉, 김일섭, 석승익, 조성돈, 김아영

이슈 동일본 대지진 : 원전사고 1년, 그 현장을 가다

— 정재은(미디어충정 기자)

세계평화는 강정에서부터!

— 여옥(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아이쿱생협 만평 — 이동수(만화가)

들발논문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고발한다

— 송명훈(리셋 KBS뉴스 기자)

서평 『자본주의, 그 이후』

— 이창근(쌍용자동차 해고자)

협동조합 소식 지금 해외에서는

— 김영미(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대외협력팀)

생협평론 2012 가을(8호)

길잡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독자를 기다리며

— 염찬희(편집위원장)

특집 협동조합의 이론과 실제

협동조합과 '일다운 일(Decent work)' 의 만남

— 신효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 ODA인턴)

협동조합은 고용 천국을 보장하는가?

—김성오(『몬드라곤의 기적』 저자)

여성의 참여와 도전을 위한 협동조합의 원칙과 실천전략

—김아영(성공회대학교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박사과정)

여성의 능력을 높이고 권한을 강화하는 협동조합을 지향하며

—이미연(아이쿱구로생협 이사장)

협동조합 고유의 특성에 근거한 경영전략

—이호중(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 연구기획팀장)

나그네 민주주의와 주인 민주주의 :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에 대해

—신성식(아이쿱생협 생산법인 경영대표)

[좌담회]

협동조합에 대한 세간의 관심과 기대, 어떠세요?

—권미옥, 김현동, 박주희, 서재교, 김아영

- 이슈** 절반의 승리 절반의 패배 : 세세대 생협을 지키기 위한 싸움
—문효규(세종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협동조합기본법 시대를 앞두고 노동자 협동조합을 생각한다
—김대훈(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대외협력팀장)
-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만화가)
- 르포** 농민의 꿈
—안미선(르포작가)
- 돌발논문** 밀양 송전탑 현장에서
—이계삼(765kV 송전탑 반대 故 이지우 열사 분신대책위 사무국장)
- 서평** 『협동조합, 참 좋다』
—이정주(쿵스토어 대표)
- 협동조합 소식**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축하하며 진행된 다양한 기념행사
—김영미(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대외협력팀)

- 길잡이** 협동조합시대, 자금 조달이라는 걸림돌
—엄찬희(편집위원장)
- 특집** **자본 조달, 한국 생협의 난제**
협동조합과 ‘자본’
—김수행(성공회대 석좌교수)
협동조합을 위한 금융모델
—조혜경(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협동조합에서 자금의 문제
—정원각(아이쿱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준비위원장)
협동조합 지원금융 역할을 수행해온 캐나다 데잘맹신협
—장종익(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 [좌담회]**
한국 생협의 자본 조달 현실
—기노채, 김대훈, 민영, 조향숙, 김아영
- 이슈** 다시 꿈꾸고 싶은 청년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연대, ‘청년연대은행(준)’
—조금득(청년연대은행 추진위원장)
이 세상 꿈이 모두 사라질 때 천국의 영광 보게 되리라
—김남주(변호사)
-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만화가)
- 르포** 아직, 거기 그들이 있다
—이혜정(기록노동자)
- 돌발논문** 구미 불산 가스 유출사태, 무엇이 문제고 얼마나 심각한가?
—김수민(구미시의회의원, 아이쿱 구미생협 조합원)
- 서평** 『화폐전쟁』
—이현숙(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 협동조합 소식** 코퍼라티브 유니티드(The Co-operative United) 참가기
—이주희(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대외협력팀)

생협평론 2013 봄(10호)

길잡이 왜 협동조합 생태계인가?

— 엄찬희(편집위원장)

특집 **협동조합 생태계**

한국 사회 경제위기의 대안 하나, 협동조합 생태계

— 김기태(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협동조합 생태계에 대한 구상

— 신성식(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

협동조합 생태계로 다함께 행복한 노동을

— 김홍범(아이쿱축산 상무대행)

협동조합 생태계와 조합원 활동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의 경우

— 권미옥(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활동국장)

협동조합 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

— 오향식(아이쿱생협 콕서비스 경영이사)

[좌담회]

협동조합 생태계, 이렇게 만들어가야 한다

— 김동준, 송주희, 유창복, 이대중, 장은성, 조우석, 손범규

이슈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몰려온다

— 박기용(한겨레 사회부)

금융협동조합을 통하여 협동조합을 육성하라

— 신철영(아이쿱생협 클러스터추진위 집행위원장)

학생인권조례의 앞날은?

—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아이쿱생협 만평 — 이동수(만화가)

- 돌발논문** 물의 공공성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 송미영(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서평** 『착한 것이 살아남는 경제의 숨겨진 법칙』
— 최은미(밝맑 도서관)
- 협동조합 소식** 세계 협동조합 생태계는 어떻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가
— 김영미(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 특별기고** 아이쿱생협은 과연 성장신화에 빠졌나?
— 신철영(아이쿱생협 클러스터추진위 집행위원장)

생협평론 2013 여름(11호)

- 길잡이**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을 위한 공부, 그 하나
— 염찬희(편집위원장)

- 특집** **생협법 제도를 둘러싼 논쟁들**
: 조합원 외 이용을 허용할 것인가
일본 생협법의 조합원 외 이용 규제
(生協法における員外利用規制)
— 関英昭(青山学院大学名誉教授) / 번역 : 이향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6조를 철폐해야 하는 이유
— 김형미(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상임이사)
협동조합의 비조합원 이용 금지에 대하여
— 이재욱(춘천산골마을협동조합 부이사장)
협동조합의 비조합원 이용 문제에 대한 단상(短想)
— 김성오(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좌담회]
한국 생협법의 조합원 외 이용금지 조항, 어떻게 볼 것인가
— 김보라, 김창근, 문보경, 박은경, 김형미

이슈	아이쿱생협, 물 사유화 저지와 공공성 회복 운동에 뛰어들다 —이미연(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참여활동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전아름(보건의료노조 선전부장)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만화가)
르포	서부이촌동, 오세훈의 단순한 아이디어로 황폐화된 삶의 터전 —윤형중(한겨레 사회부)
기획연재	협동조합을 가다 ① 순천언론협동조합을 가다 —김은남(시사IN 선임기자)
서평	『살림/살이 경제학을 위하여』 —김기태(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협동조합 소식	높아지고 있는 협동조합의 위상과 평가 —김영미(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생활평론 2013 가을(12호)

길잡이	협동조합, 정부 지원을 요구해야 하나 —염찬희(편집위원장)
특집	협동조합 법 제도를 둘러싼 논쟁들 : 정부의 지원, 어디까지가 바람직한가 협동조합 정부지원, 협력적 사회 환경 조성이 우선이다 —최유성(전 특임장관실 제2조정관) 정부의 지원, 어디까지가 바람직한가? —이이재(새누리당 국회의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개정 쟁점 및 대안 —김현미(민주당 국회의원) 협동조합과 바람직한 국가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강민수(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의 방향

— 김대훈(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장)

[좌담회]

정부의 협동조합 지원, 어디까지가 바람직한가?

— 강완구, 박봉희, 손낙구, 정원각, 이향숙

이슈 못살겠다, 협동조합이다! : 프레스안의 협동조합 전환기

— 이대회(프레스안 협동조합팀장)

국정원 사태와 실종된 한국 민주주의

— 배성인(한신대학교)

아이쿱생협 만평 — 이동수(만화가)

돌발논문 민영화의 뒷,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 김철(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기획연재 협동조합을 가다 ②

중국집 ‘철가방’들이 일군 협동의 힘

— 김은남(시사IN 선임기자)

영화평 <위 캔 두 댓>

— 정설경(생협평론 편집위원)

협동조합 소식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의 사회적 확산을 보장하는 일

— 김영미(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생협평론 2013 겨울(13호)

길잡이 협동조합의 정체성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 염찬희(편집위원장)

특집 협동조합 정체성 논쟁 1

[발제]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

— 신성식(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

[토론]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에서 길을 찾자

—이현숙(한겨레경제연구소장)

나무로서 협동조합과 숲으로서 협동조합

: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에 대한 단상

—장종익(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화폐 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제도 차이를 인식하자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협동조합운동, 친철히 톺아보면서 나아가기

—김동준(성공회대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연구교수)

토론에 대한 발제자 의견

—신성식(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

[좌담회]

활동가 입장에서 바라 본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

—김순희, 정설경, 정현화, 손범규

이슈 현대판 봉이 김선달은 과연 누구인가?

: 상수도 민영화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송유나(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22조 원 퍼부은 4대강사업의 실체

—박창근(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아이쿱생활 만평 —이동수(만화가)

돌발논문 30년 후 기초연금, 현행법상 기초노령연금의 절반

: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 공약 후퇴, 쟁점과 대안

—홍현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기획연재 협동조합을 가다 ③

이 학교 매점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김은남(시사IN 선임기자)

서평 현명한 소비자로는 부족하다 : 『질병관매학』

—민앵(살림의료생협 이사장)

협동조합 소식 전세계 협동조합들은 무엇을 고민하는가?

—김영미(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길잡이 사람 중심의 경제를 향해서
—엄찬희(편집위원장)

특집 **바람직한 사회적 경제 모델 찾기**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운동
—장원봉(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사회적 경제의 현실과 협동조합운동의 방향
—하승우(플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 경제 개발
—김성기(사회적 협동조합 SE EMPOWER 이사장)
한국 사회적 경제의 주요 이슈와 과제
—김영식(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

[좌담회]

사회적 경제, 어떤 모델이 바람직한가
—김재경, 양현준, 윤호중, 이이재, 김형미

이슈 몬드라곤 파고르의 실패
(モンドラゴン、ファゴールの失敗)
—이시즈카 히데오(石塚秀雄, 협동총합연구소 생명과 생활 주임연구원)
미디어 공공성 현황과 그 회복 가능성
—신태섭(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만화가)

돌발논문 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이천옥(기록노동자)

르포 밀양, 보통 사람들의 싸움을 기억하라
—희정(르포작가)

기획연재 **협동조합을 가다 ④**
조합원이 주인 되는 방송, 4월1일 시작합니다
—김은남(시사IN 선임기자)

- 서평** 『세계를 바꾼 과일의 운명 : 바나나』
—이응구(성공회대학교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석사과정)
- 협동조합 소식** 사회적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렛대가 되다
—김영미(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생협평론 2014 여름(15호)

- 길잡이** 친환경농산물이라고 불리는 것들
—염찬희(편집위원장)
- 특집** **한국사회 친환경농산물의 현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현황과 전망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최동근(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
- 한국 친환경농산물의 조명 : 생산·시장·소비 측면에서
—김창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iCOOP생협 친환경농산물 수급 시스템
—신신일(아이쿱인증센터), 허미영(아이쿱농산)
- 순환과 공생의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옥천 이야기
—권단(옥천순환경제공동체 운영위원장)
- [좌담회]**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들이 들려주는 현장 이야기
—김근호, 임영택, 주정산, 홍진희, 이향숙
- 이슈** 규제 완화라는 재앙, 그리고 의료민영화
—변혜진(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
- 저성장시대의 주택정책 방향과 공유주택의 역할
—변창흠(세종대학교 교수)
-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만화가)
- 돌발논문** 논습지의 중요성과 보전대책
—주용기(전북대학교 전임연구위원)

- 기획연재** **협동조합을 가다 ⑤**
 삶의 질 높여줄 '우리의 집'을 구상하다
 —김은남(시사IN 선임기자)
- 서평** 『가치를 다시 묻다』
 —신미정(구로생협 조합원)
- 협동조합 소식** **GMO 오염의 대가를 치르게 될 유기농 생산자들**
 —이주희(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생협평론 2014 가을(16호)

- 길잡이** **협동조합 교육, 절실한 이유**
 —염찬희(편집위원장)

- 특집** **협동조합 교육,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의 협동, 협동은 어떻게 배우게 되는가?
 —문영선(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교육을 통한 협동조합과 사회의 성장
 —정원자(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협동조합, 학교에서부터 교육해야
 —금현옥(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교사)
 학교협동조합에서의 협동조합 교육
 —박주희(학교협동조합지원네트워크)
 협동조합 교육, 습득이 아닌 참여와 협동의 과정
 —김아영(성공회대 협동조합경영학과 박사과정)

[좌담회]

- 학교협동조합, 그 현장의 소리**
 —강연수, 김민성, 김현미, 박선하, 황성경, 지민진

- 이슈**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소비자 인증시대**
 —박인자(아이쿱인증센터 회장)

‘유기농의 진실’이 놓친 진실들

—김홍범(쿠팡스토어 광주전남 이사)

지하철 9호선을 협동조합으로…?

—김기태(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만화가)

돌발논문 농산물 가격 폭등과 폭락, 그 원인과 처방은 무엇인가?

—이호중(너름 연구기획팀장)

기획연재 **협동조합을 가다 ⑥**

협동으로 함께 굶는 빵, 동네빵집 되살릴까

—김은남(시사IN 선임기자)

에세이 협동조합 역사 : 로치데일협동조합을 다시 생각한다

(Co-op History : Re-visiting the Rochdale Pioneers)

—R. C. 리처드슨(R. C. Richardson, 영국 원체스터대학)

영화평 눈부신 순간에 대한 기록

—주현숙(독립영화감독)

협동조합 소식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의 노력

—김영미(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생협평론 2014 겨울(17호)

길잡이 성장없이 하는 모든 협동조합들에게

—염찬희(편집위원장)

특집 **한국협동조합의 성장통**

이용자협동조합 임금노동자의 노동 문제

—김대훈(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이사)

반겨야 할 역설, 협동조합의 민주적 거버넌스

—윤주일(쿠파협동조합 이사)

협동조합은 좋은 일자리인가

—강민수(쿠파비즈협동조합대표)

협동조합 지배구조에 대한 단상

—김성오(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협동조합, 공제조합의 거버넌스 : 역설 시각에서

(The Governance of Co-operatives and Mutual Associations :
A Paradox Perspective)

—크리스 콘포스(Chris Conforth, 영국 Open University 교수)

[좌담회]

소비자협동조합의 거버넌스와 노동의 실제

—김정희, 이선경, 한금희, 손범규

이슈

쌀 전면개방과 식량주권

—장경호(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찾아서

—오영중(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특별위원회 진상조사단장)

돌발논문

세월호 참사만큼 심각했던 세월호 언론보도 참사

—김언경(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르포

잊지 않겠습니다

—이하늬(미디어오늘 기자)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만화가)

기획연재

협동조합을 가다 ⑦

서민도 이용 가능한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꿈꾸다

—김은남(시사IN 선임기자)

서평

『우리는 도시에서 행복한가?』

—정원각(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대표)

협동조합 소식

협동조합의 상상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시대

—김영미(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 길잡이** 고립을 넘어 함께하는 세상을 향하여
— 박종현(편집위원장)
- 특집** **협동조합기본법 2년, 그 성적표는?**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와 향후방향
— 이철선(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2년,
기본법 제정 당시의 정책목표는 얼마나 달성했나?
— 이대중(전 기획재정부 협동조합법제정담당)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그 성과와 과제
— 문보경(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협동조합의 지형
— 김현하(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 2팀)
[좌담회]
협동조합기본법 2년, 우리 마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
— 김정원, 유영우, 이석우, 정원오, 김형미, 김현대
- 이슈** 사람다움의 샘, 함께하기 : 세월호, 3·11, 그리고 생협의 조합원들
— 김형미(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
한·일 생협의 풀뿌리 교류의 궤적과 향후
: 어려운 사회를 지지하는 중심은 '사람'에게
— 시바 사나에(일본협동조합학회 부회장)
- 돌발논문** 갑을 관계를 넘어서려면
— 김찬호(성공회대 교양학부 초빙교수)
- 르포** 고맙데이 사랑한데이
: 농축업 이주노동자와 아름다운 농부 고용주
— 공정경(아이쿱 시민기자)
- 아이쿱생협 만평** — 박해성(만화가)

- 기획 연재** **협동조합을 가다 ⑧**
 오래된 여관촌을 바꾼 청년들의 힘
 —김은남(시사IN 선임기자)
- 서평** 『협동조합 비즈니스 전략』
 —유정식(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협동과 연대의 인문학』
 —주세운(동작신희 전략기획팀)
- 협동조합 소식** 협동조합의 역할, 어디까지일까?
 —김영미(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생협평론 2015 여름(19호)

- 길잡이**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꿈꾸며
 —박종현(편집위원장)
- 특집** **청년과 협동조합**
 청년, 협동조합, 그리고 ‘멤버십 사회’
 —이원재(희망제작소 소장)
 서울시 청년 협동조합 주택
 —이수연(서울시 사회적경제과 주무관)
 협동조합과 청년의 만남 협동조합, 청년에게 더 다가가기
 —이현숙(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청년들의 ‘사회적 노동’ 경험
 : 청년들의 서사를 중심으로
 —명수민(서울대 교육인류학 석사), 이영룡(연세대 문화학협동과정 석사)
- [좌담회]**
 협동조합을 만난 청년들, 위기도 행복도 서로 함께
 —김진희, 임소라, 조한솔, 김지만

이슈	<p>클라우드펀딩법이란 무엇인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 이대중(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과장)</p> <p>제로로 아이들을 제대로 지키자 — 공정경(아이쿱 시민기자)</p>
돌발논문	<p>협동조합다운 협동조합을 위한 충분조건들 : 협동조합 간 협동을 위한 전제 — 신성식(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CEO)</p>
르포	<p>노동자협동조합 설립과 두 개의 시각 : 노동자협동조합에서 조합원에 포함되지 못한 노동자 — 송문강(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이사)</p>
아이쿱생협 만평	— 박해성(만화가)
기획 연재	<p>협동조합을 가다 ⑨ 클린광산협동조합, 폐업 위기에서 함께 살길을 찾다 — 김은남(시사IN 선임기자)</p>
서평	<p>개인인가, 관계인가? :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 — 홍훈(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p>
협동조합 소식	<p>청년들을 위한 협동조합의 국제적인 노력 증가 — 이주희(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p>

생협평론 2015 가을(20호)

길잡이	<p>인간적인 시장을 꿈꾸는 이유 — 박종현(편집위원장)</p>
특집	<p>사회적경제와 행복한 지역 만들기 사회적경제, 지역 발전의 대안인가? — 김기태(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p>

마을과 경제

— 유창복(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사회 혁신에 기반한 지역 발전 : 캐나다 퀘벡의 사례

— 정준호(강원대학교 교수)

혁신적 협동조합과 지역 만들기 : 구레자연드림파크 사례

— 정태인(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젠트리피케이션, 사회적경제로 핵심을 짚어내자

— 전은호(사회주택협회 사무국장)

[좌담회]

임대업이 꿈인 나라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누구의 문제인가?

— 안진걸, 김남균, 선민, 위성남

이슈

새로운 희망적 대안, 협동조합

— 박계동(한국택시협동조합 이사장)

메르스와 위험사회

— 임종한(인하대학교 교수,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회장)

돌발논문

해피브릿지의 새로운 보상제도 만들기

— 문성환(해피브릿지협동조합 이사)

아이쿱생협 만평

— 박해성(만화가)

기획 연재

협동조합을 가다 ⑩

에너지 자립의 꿈, 함께 꾸면 현실이 돼요!

— 황세원(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사회적경제 석사과정)

서평

『이런 협동조합이 성공한다』

— 강양구(프레시안 기자)

『전환의 키워드, 회복력』

— 최인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협동조합 소식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 이주희(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 길잡이** 설득의 공론장이 되기를 소망하며
— 박종현(편집위원장)
- 특집** **협동조합 지원, 그 실상과 바람직한 방향**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둘러싼 협동조합 관련 언론 보도 심층 분석
— 조현경(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지원정책과 협동조합 현황
— 정상철(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과장)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경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 유정식(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기업·운동·정치로서의 협동조합
— 김종걸(한양대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
- [좌담회]**
비판은 약으로 삼고, 오해는 풀어가며
— 박란희, 이현숙, 장승권, 최혁진, 김기태
- 이슈**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한 후쿠시마현 농업재생활동의 의의
— 박상현(후쿠시마대학 특임연구원)
협동조합의 오래된 도전과 새로운 혁신 : 자본
— 서진선(성공회대학교 협동조합경영학과 박사과정)
- 르포** 아이쿱의 노동정책은 “범대로 한다+α”
— 공정경(아이쿱 시민기자)
- 아이쿱생협 만평** — 박해성(만화가)
- 기획 연재** **협동조합을 가다 ⑩**
사람에게 ‘이로운 풀’을 정직하게 사고 팔다
— 김은남(시사IN 선임기자)
-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첫걸음 ①**
한눈에 보는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 이대중(전 기획재정부 협동조합팀장)

- 서평 35년 전 제출된 보고서가 주는 영감에 대해
『21세기의 협동조합 : 레이들로 보고서』
—신성식(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CEO)
- 협동조합 소식 협동조합 지원정책
—이주희(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 제2회 아이쿱 협동조합 논문 공모전 당선작
협동조합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황세원(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생협평론 2016 봄(22호)

- 길잡이 농협과 생협의 협동, 농민과 소비자의 상생을 꿈꾸며
—박종현(편집위원장)
- 특집 ‘협동조합으로서의 농협’
협동조합의 관점에서 본 농협의 역사
—조현경(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
세계 농업협동조합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안상돈(농협중앙회 미래전략부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 회복과 농협의 과제
—이호중(지역재단 농협연구교육센터 센터장)
도시농협,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 소비자를 통해 생존하거나 문 닫거나
—정연근(내일신문 기자)
- [좌담회]
농협에 기대하는 변화, 그리고 농협과 생협의 협동
—장민기, 정기석, 조성규, 조현선, 유재흠
- 이슈 2015 협동조합 실태조사 리뷰
—김란수(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부장)

- 돌발논문** 사회혁신이 필요한 시대
— 김홍길(서울시 협치서울추진단 시민선임 코디네이터)
- 르포** 집을 다시 그리다 : 주택협동조합과 주택공동체
— 공정경(아이쿱 시민기자)
- 아이쿱생협 만평** — 박해성(만화가)
- 기획 연재** **협동조합을 가다 ②**
필리핀 봉제조합 ‘익팅’ : “익팅을 만나고 내 삶이 바뀌었다”
— 김은남(시사IN 선임기자)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첫걸음 ②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 교육·훈련사업 활용하기
— 이대중(전 기획재정부 협동조합팀장)
- 서평**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 그 꿈과 땀의 역사
『영국 협동조합의 한 세기』
— 임정은(강서아이쿱생협 조합원)
- 협동조합 소식** 농업 활성화와 협동조합
— 이주희(사회적협동조합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국제파트)
- 제2회 아이쿱 협동조합 논문 공모전 당선작**
일제강점기 오사카 지역 제일조선인 협동조합의 운영 추이
— 허선희(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생협평론 2016 여름(23호)

- 길잡이** 협동조합이 혁신을 고민하는 까닭은?
— 박종현(편집위원장)
- 특집** **협동조합과 혁신**
협동조합은 사회혁신이다
— 이일영(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대안 조직으로서의 협동조합과 혁신의 과제
— 김동준(성공회대 경영학부 연구교수)

노동자소유기업, 일터를 혁신하고 사회를 혁신하다

—김활신(안산아이쿱생협 이사)

학교협동조합, 학교를 혁신하다

—주수원(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정책위원)

[좌담회]

협동조합, 혁신의 DNA를 찾아서

이슈

GMO 소비시대, 알 권리 선택할 권리

—김훈기(홍익대 교양과 교수)

라틴아메리카의 협동조합 현황

—김혜숙(국제전략센터 대표)

돌발논문

최저임금 올리고 지키자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아이쿱생협 만평

—박해성(만화가)

기획연재

협동조합을 가다 ⑩

문화예술협동조합 씨앗(C. Art)

: 시골로 간 청년들, ‘비밀 언덕’을 찾다

—김은남(시사IN 기자)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길라잡이 ③

협동조합 스타트업 지도 그리기

—김현하(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파트 파트장)

서평

우리는 ‘집단 어리석음’으로부터 안녕한가요?

: 군터 뒤크, 『왜 우리는 집단에서 바보가 되었는가』

—곽운학(작은기업연구소 소장)

2% 다른 사람들

: 차형석, 『아이쿱 사람들』

—이정옥(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협동조합 소식

변화를 주도하는 세계 협동조합의 현재

—이주희(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국제파트)

- 길잡이** '을'과 함께하는 협동조합 프랜차이즈를 꿈꾸며
—박종현(편집위원장)
- 특집** **협동조합과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은 왜 프랜차이즈에 주목하는가?
—장종익(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주임교수)
소셜 프랜차이즈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이해
—김정원(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협동조합·프랜차이즈 현황과 소상공인 지원정책
—남윤형(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버거킹, 던킨도너츠에서 레베(REWE), 코나드(CONAD)까지
—김현대(한겨레 출판국장)
해피브릿지가 바라본 사회적경제 영역과 프랜차이즈
—윤찬(해피브릿지 외식창업센터 센터장)
- [좌담회]
협동조합, 프랜차이즈를 만나다
- 이슈** 제2차 협동조합기본계획에 바란다
—김기태(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농협의 특권적 지위와 독점체제를 해소하고 공정 경쟁체제를 도입하라
—이호중(지역재단 농협연구교육센터 센터장)
- 돌발논문** 그들은 왜 협동조합기금을 만들었나
—서진선(성공회대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박사과정)
- 아이디어생협 만평** 골목상권, 협동조합으로 지키자!
—박해성(만화가)
- 기획연재** **협동조합을 가다 ④**
롤링다이스협동조합, 데굴데굴 함께 굴리는 저 주사위처럼
—김은남(시사IN 기자)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길라잡이 ④

협동조합 사업자금, 얼마나 필요하고 어떻게 조달할까?

—김현하(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파트 파트장)

서평 ‘호세 마리아 신부의 생각’을 생각하다

: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아리에타, 『호세 마리아 신부의 생각』

—송경용(성공회 걷는교회 사제/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협동조합 소식 협동조합의 새로운 시도!

—이주희(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국제파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발행물 목록

단행본

No.	발행년도	제목/ 저자 및 역자
1	2006	『생협 인프라의 사회적 활용과 그 미래』 ___일본 21세기코프연구센터 저 한국생협연합회 역
2	2008	『iCOOP생협 10년사 : 협동, 생활의 윤리』 ___iCOOP생협연대 저
3	2008	『일본 워커즈 콜렉티브 활동 사례연구』 ___김주숙, 김미영, 김양희, 안세희, 정금수, 이향숙
4	2008	『생활 속의 협동』 ___오사와 마리 저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옮김
5	2009	『세상을 바꾸는 소비자의 힘 2009 윤리적 소비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집』 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6	2009	『새로운 생협운동』 ___한국생협연대 엮음 (초판 : 2002)
7	2011	『뒤영벌은 어떻게 나는가』 ___이바노 바르베리니 저 김형미 · 김영미 옮김
8	2012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 ___김형미 외
9	2012	『협동조합, 그 아름다운 구상』 ___에드가 파넬 저 염찬희 옮김
10	2012	『후쿠이생협의 도전』 ___일본생협연합회 엮음 이은선 옮김
11	2012	『일러스트로 배우는 생활협동조합 매장 운영 가이드 북』 ___오리토이사와카니시 케이코 저 이은선 옮김
12	2012	『현대일본생협운동소사』 ___사이트 요시아키 저 다나카 히로시 옮김
13	2012	『꺼지지 않는 협동조합의 불꽃』 ___와카츠키 타케유키 저 이은선 옮김
14	2013	『살아 숨쉬는 마을 만들기』 ___니시무라 이치로 저 번역모임 연리지 옮김

- 15 2013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 역사와 사람들』
___조지 제이콥 홀리요크 저 | 정광민 옮김
- 16 2013 『협동조합 운영 사례집』
___서울특별시
- 17 2013 『진짜 가격은 얼마인가요.(2013)』(E-Book)
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위음
- 18 2014 『진짜 가격은 얼마인가요.(2014)』(E-Book)
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위음
- 19 2014 『협동조합 키워드 작은 사전』
___김기태, 김형미, 신명호, 장종익, 정병호 외
- 20 2014 『협동과 연대의 인문학』
___김창진 편저
- 21 2015 『iCOOP생협 2015년 입문협동조합』
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위음
- 22 2015 『사람을 탐하다 : 협동조합 역사에서 살아온 그 사람을 탐하다』
___인물탐구동아리 '사탐' 저
- 23 2015 『스웨덴에서 협동조합을 배우다』
___아너스 오르네 저 | 이수경 옮김
- 24 2015 『21세기의 협동조합 : 레이들로보고서』
___A. F. 레이들로 저 | 염찬희 옮김
- 25 2015 『영국 협동조합의 한 세기』
___G. D. H. 코울 저 | 정광민 옮김
- 26 2016 『iCOOP생협 2016년 입문협동조합』
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위음
- 27 2016 『아이쿱 사람들 : 협동조합의 문을 열다』
___차형석 지음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위음

연구보고서

No.	발행년도	시리즈명	제목/ 저자 및 역자
1	2007	연구보고 2007	『생활협동조합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보고서 : 한국생협연합회 소속 조합원을 중심으로』 ___김주숙 · 김성오 · 정원각

- 2 2009 연구보고 2009 『2009년 iCOOP생협 활동가 의식조사 보고서』
___ 김아영 · 정원각 · 이향숙
- 3 2010 연구보고 2010-1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 생협운동을 중심으로』
___ 염찬희 · 엄은희 · 이선옥
- 4 2010 연구보고 2010-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의 공제조합운영에 관한 연구』
___ 장원봉 · 하승우 · 임동현
- 5 2010 연구보고 2010-3 『생협밸리 커뮤니티 디자인 연구』
___ 김찬호
- 6 2010 연구보고 2010-4 『2009 iCOOP생협조합원의 소비자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___ 염찬희
- 7 2011 연구보고 2011-1 『아이쿱생협의 교육현황, 그리고 교육효과 및 만족도에 대한 연구』
___ 정혜진
- 8 2011 연구보고 2011-2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지자체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협력방안』
___ 장종익 · 김아영
- 9 2011 번역서 2011-1 『일본공익재단법인생협총합연구소 리포트 No.62 : 위기에 대응하는 외국생협—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생협—의 동향』
___ 김연숙 · 이주희 · 정화령
- 10 2011 번역서 2011-2 『일본공익재단법인생협총합연구소 리포트 No.64 : 협동조합의 출자금, 자본회계 문제』
___ 김연숙 · 이주희 · 정화령
- 11 2012 기획연구과제 2012-1 『유럽 주요 국가 소비자협동조합의 성패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___ 장종익
- 12 2013 기획연구과제 2013-1 『지대(地代)가 친환경농업에 미치는 영향』
___ 장상환
- 13 2013 기획연구과제 2013-2 『2012 아이쿱생협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___ 염찬희 · 손범규 · 지민진
- 14 2013 기획연구과제 2013-3 『생협의 사회 가치 : 아이쿱생협을 대상으로』
___ 이향숙 · 지민진
- 15 2013 생활과 동향 1 『한국소비자원, 「2013 한국의소비생활 지표」 발표』
___ 지민진

- 16 2014 생활과 동향 2014-1 『윤리적 소비 속, 업사이클링(Upcycling) 다시 생각하기』
____손범규
- 17 2014 생활과 동향 2014-2 『일본의 유기농업인증제도의 시사점 : 참가형 인증시스템의 의의』
____지민진
- 18 2014 생활과 동향 2014-3 『밀레니엄세대에 동기 부여하기 : 아이쿱생협의 20대 직원의 특성을 중심으로』
____손범규
- 19 2014 기획연구과제 2013-4 『2013 아이쿱생협 직원의 직무만족도 조사』
____손범규
- 20 2014 연수보고서 2014-1 『2014 ICA Research Conference in Pula, Croatia and 2014 Co-operative and Social Enterprise Summer School in Sheffield』
____서진선
- 21 2014 기획연구과제 2014-1 『공정무역을 통한 지역사회 역량강화 iCOOP생협과 PFTC-AFTC의 파트너십 연구』
____엄은희
- 22 2014 기획연구과제 2014-2 『생협의 사회가치 2014 아이쿱생협을 대상으로』
____이향숙 · 이문화
- 23 2015 연구원리포트 2015-1 『협동조합 자본조달 방안 중 조합원 차입금과 기금에 관한 사례 조사』
____서진선
- 24 2015 연구원리포트 2015-2 『협동조합의 자본조달과 우선출자제도』
____지민진 · 서진선
- 25 2015 기획연구과제 2015-1 『iCOOP생협 생산자회원의 특성 : iCOOP생산자회 정회원조사 2014년도』
____정은미
- 26 2015 기획연구과제 2015-2 『2014 아이쿱생협직원의 직무만족도 조사』
____손범규
- 27 2015 기획연구과제 2015-3 『아이쿱생협 통계 2014』
____지민진
- 28 2015 기획연구과제 2015-4 『2015년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____손범규 · 이예나
- 29 2015 기획연구과제 2015-5 『2015년 아이쿱생산자회원 실태 및 의식조사』
____이향숙

- 30 2016 흐름을 읽다 1-01 『저성장 시대, 가치소비의 경험』
___지민진
- 31 2016 기획연구과제 2016-1 『아이쿱 통계 2015』
___지민진
- 32 2016 기획연구과제 2016-2 『친환경 우유의 생산 및 소비 확대와 낙농제도 : 아이
쿱생협의 판매대행제의 시사점』
___장재봉
- 33 2016 번역서 2016-1 『협동조합의 난제 : 자본』
___윤길순·최은주·서진선

연구보고서(아이쿱 해외 협동조합 연구동향)

No.	발행년도	시리즈 번호	제목/ 편역자
1	2012	2012-1-1	『어떻게 사회적 혁신을 이룩할 것인가 정책 개발을 위한 프레 임워크를 위하여』 ___이경수
2	2012	2012-1-2	『2008년 이탈리아의 협동조합』 ___이경수
3	2012	2012-1-3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1)』 ___이경수
4	2012	2012-2	『미국 협동조합 현황(1)』 ___이경수
5	2012	2012-3-1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매뉴얼』 ___이경수
6	2012	2012-3-2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매뉴얼 : 사례연구』 ___이경수
7	2012	2012-3-3	『유릭스 베네치아회의 최종보고서』 ___이경수
8	2012	2012-4-1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매뉴얼 : 조언 Tips』 ___이경수
9	2012	2012-4-2	『ICA 세계 협동조합 모니터』 ___이경수

- 10 2012 2012-4-3 『협동조합 녹색경제에 연료를 공급하다 : 캐나다 재생 에너지 분야 보고서』
___이경수
- 11 2012 2012-5 『로치데일의 의미 : 로치데일 선구자조합과 협동조합 원칙』
___이경수
- 12 2012 6-1 『소비자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발전 접근법』
___이경수
- 13 2013 7-1 『사회연대경제 이해하기』
___이경수
- 14 2013 8-1 『몬드라곤 노동자 협동조합 이해』
___이경수
- 15 2013 8-2 『지역사회 만들기와 생협』
___이경수
- 16 2013 9-1 『식품부문의 협동』
___이경수
- 17 2013 9-2 『자주관리돌봄 : 협동조합접근방식』
___이경수
- 18 2013 9-3 『지역복지·어르신복지와 생협의 역할 (地域福祉・高地域福祉と生協の役割)』
___이경수
- 19 2013 10-1 『푸드 데저트 문제와 지역 커뮤니티』
___이경수
- 20 2013 10-2 『전업주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___이경수
- 21 2013 11-1 『규모화 vs. 참여 : 협동조합 딜레마?』
___이경수
- 22 2013 11-2 『소비자 협동조합 인수 시도에서 얻는 이론적, 실용적 함의』
___이경수
- 23 2013 11-3 『협동조합, 공제조합의 거버넌스 : 역설 시각에서』
___이경수
- 24 2013 12-1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관여 : 조합원에서 출발해 지역사회 이익을 향해』
___이경수
- 25 2013 12-2 『이론과 실제에서의 협동조합 회사』
___이경수

26	2013	13	『대규모 협동조합, 공제조합의 조합원 거버넌스 참여 : 코퍼라티브 그룹 형성평가』 ___이경수
27	2013	14-1	『노동자 회생기업 현황과 관련 연구』 ___이경수
28	2013	15-1	『노동자 회생기업 현황과 관련 연구』 ___이경수
29	2014	2014-1	『협동조합 조합원과 운동』 ___이경수
30	2014	2014-2	『무지개 깃발과 국제협동조합의 날 기원』 ___이경수
31	2014	2014-3	『위기 동안 이탈리아 협동조합』 ___이경수
32	2014	2014-4	『대규모 협동조합 사업체의 거버넌스(1)』 ___이경수
33	2014	2014-5	『대규모 협동조합 사업체의 거버넌스(2)』 ___이경수
34	2014	2014-6	『협동조합 리더십 역량평가』 ___이경수
35	2014	2014-7	『유럽 및 세계의 사회보완통화 실천 : 사회적기업 촉진과 관련해』 ___이경수
36	2014	2014-8	『사회연대경제 : 해방과 재생산 사이에서』 ___이경수
37	2014	2014-9	『미국의 노동자 협동조합 : 규모를 향해서1』 ___이경수
38	2014	2014-10	『미국의 노동자 협동조합 : 규모를 향해서2』 ___이경수
39	2014	2014-11	『협동조합과 지속가능 발전 : 포스트 2015 논의에 대한 기여』 ___이경수
40	2014	2014-12	『사회연대경제와 지속가능발전의 도전 : TFSSE 입장보고서』 ___이경수
41	2014	2014-13	『이론』 『사례』 『거버넌스』 ___이경수
42	2015	2015-1	『사회연대경제의 포스트 2015 개발의제 권고』 ___이경수

- 43 2015 2015-2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과 식품 : 소비자협동조합의 시각』
___이경수
- 44 2015 2015-3 『2014 아이쿱해의협동조합연구동향 모음집』
___이경수
- 45 2015 2015-4 『기후변화와 소비자협동조합 : 도전에 앞서 나가기』
___이경수
- 46 2015 2015-5 『핀란드 협동조합 운동과 SOK 역사 : 핀란드 소비자협동조합 탐구 1』
___이경수
- 47 2015 2015-6 『핀란드 S그룹 사업모델 : 식품 부문』
___이경수
- 48 2015 2015-7 『핀란드 S그룹 비식품 부문 사업모델과 조합원 제도 : 핀란드 소비자협동조합 탐구 3』
___이경수
- 49 2015 2015-8 『핀란드 S그룹의 거버넌스』
___이경수
- 50 2015 2015-9 『핀란드 S그룹의 사회적책임』
___이경수
- 51 2015 2015-10 『핀란드 S그룹의 환경 책임 : 핀란드 소비자협동조합 탐구 6』
___이경수
- 52 2015 2015-11 『핀란드 S그룹의 직원 정책 : 복리와 교육』
___이경수
- 53 2015 2015-12 『지속가능발전 개발재원과 사회연대금융의 역할』
___이경수
- 54 2016 2016-01 『핀란드 S그룹 : 핀란드 소비자협동조합 탐구 1-7』
___이경수
- 55 2016 2016-02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의 사회적연대경제의 현황』
___이향숙
- 56 2016 2016-03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역사 : 이탈리아 소비자협동조합 탐구 1』
___이경수
- 57 2016 2016-04 『이탈리아 레가 역사와 지역·부문 조직 : 이탈리아 소비자협동조합 탐구 2』
___이경수
- 58 2016 2016-05 『이탈리아 레가 거버넌스와 주요 활동 : 이탈리아 소비자협동조합 탐구 3』
___이경수

연구보고서(수행연구)

No.	발행년도	시리즈명	제목/ 연구자
1	2014	연구원 리포트	『훗카이도 지역 밀 산업의 시사점』 ___이향숙
2	2014	서울시 기획 연구	『학교건강매점 협동조합 모델개발 연구』 ___지민진 · 최은주
3	2015	기획연구과제 2015-6	『고양과주아이쿱생협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___손범규 · 신효진
4	2016	양천구 기획 연구	『양천구 사회적경제 인적 자원 조사』 ___이향숙

연구보고서(영문 보고서 및 번역본)

No.	발행년도	제목/ 저자
1	2011	Cooperation between Consumer Co-ops and Local Communities : Focusing on the Case of iCOOP KOREA, Seoul : iCOOP Cooperative Institute ___YEOM Chanhui
2	2013	iCOOP Members' Consumption Pattern and Attitude Survey, Seoul : iCOOP KOREA ___YEOM Chanhui et al.
3	2013	Emerging Dual Legal Frameworks of Social Enterprise in South Korea : Backgrounds and Prospects, 4th conference of EMES held at the University of Liege, 2013. ___JANG Jongick
4	2013	Flux on Korean Consumer Cooperative Activities, Conference on Global Cooperative Project, Sweden, Stockholm ___KIM Hyungmi

- 5 2014 Community Empowerment through Fair Trade : The case study on partnership between iCOOP KOREA and PFTC/AFTC, (Translator : LEE Kyungsoo) Seoul : iCOOP Co-operative Institute
___EOM Eunhui
- 6 2014 A Study on Price Stability in Consumer Co-operatives : Focusing on the Asymmetric Price Transmission for Agricultural Products of iCOOP Korea, ICA Global Research Conference (Finance Session), Pula, Croatia, June 25-28
___JI Minjin and CHOI Wooseok
- 7 2014 A Business Model for Healthy School Tuck Shop Cooperative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Enterprise in Asia (I, Wonju, Korea, July 4-6)
___JI Minjin and CHOI Eunju
- 8 2014 Feedback from iCOOP KOREA to the Guideline of ICA Co-operative Principles, Seoul : iCOOP KOREA
___OH Miyea
- 9 2014 iCOOP KOREA's Cooperation with Social Economy Sector, 2014 Inaugural Meeting of Global Social Economy Forum, Seoul, November 17-19
___LEE Jungjoo
- 10 2015 iCOOP KOREA's Social Value 2014, Seoul : iCOOP Co-operative Institute
___LEE Hyangsook and LEE Munhee
- 11 2016 2015 iCOOP Association of Producer Group Member Survey
___LEE Hyangsook
- 12 2016 2015 iCOOP KOREA Members'Consumption Pattern and Attitude Survey
___SON Beomkyu and LEE Yena
- 13 2016 Making a Better Community : Co-operatives Driving Communities' Future, iCOOP Co-operative Institute 10th Anniversary Commemorating Symposium
___SHIN Dong-Wook, HEO Jun-Gi, HWANG Ji-Eae, JEONG Hwa-Ryung

자료집

No.	발행년도	제목/ 내용
1	2006	『생협 인프라의 사회적 활용과 그 미래』 ____ 출판기념 토론회
2	2006	『제1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____ 생협아카데미 1
3	2006	『제1기 생협아카데미 후속교육 자료집』 ____ 제1회 후속교육
4	2006	『제2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____ 생협아카데미 2
5	2006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형성을 위한 생협의 과제』 ____ 제1회 포럼
6	2006	『한국 사회의 식문화 현황과 문제점 : 식육법의 필요에 대하여』 ____ 제2회 포럼
7	2006	『생협에서 공정무역이 갖는 의미와 방향』 ____ 제3회 포럼
8	2007	『사회발전에 있어서 협동조합의 역할』 ____ 제4회 후속교육
9	2007	『협동조합에서 출자금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 ____ 제6회 후속교육
10	2007	『iCOOP생협 10년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정리와 평가』 ____ iCOOP생협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11	2007	『한일생협조합원 의식조사 결과 발표』 ____ iCOOP협동조합연구소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엄
12	2007	『제3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____ 생협아카데미 3
13	2007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의 사례와 향후 과제』 ____ 제4회 포럼
14	2007	『우리밀 생산과 소비운동의 성과와 이후 과제』 ____ 제5회 포럼
15	2007	『새로운 대안운동으로써의 사회적경제와 생협운동』 ____ 제6회 포럼
16	2007	『iCOOP생협의 정체성에 대한 토론』 ____ 제7회 포럼

- 17 2008 『제4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____ 생협아카데미 4
- 18 2008 『제1회 대학(원)생 윤리적 소비 논문공모 수상집』
 ____ 공모전 2008
- 19 2008 『윤리적소비의 방향과 실천적 모색 : 공정무역을 통한 제3세계 지원과
 우리밀살리기운동을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를 중심으로』
 ____ iCOOP생활협동조합연구소 2주년 기념 심포지엄
- 20 2008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의 한국 경제와 생협 운동의 전망』
 ____ 제8회 포럼
- 21 2008 『광우병 촛불정국에서 생활운동체인 iCOOP생협과 이후 과제』
 ____ 제9회 포럼
- 22 2008 『람사르총회와 논습지보전의 필요성과 과제 전망』
 ____ 제10회 포럼
- 23 2009 『한국의 조세 : 재정 현황과 바람직한 방안』
 ____ 제9회 후속교육
- 24 2009 『국제협동조합연맹(ICA)가입과 생협의 사회적 책임』
 ____ iCOOP생협 ICA가입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 25 2009 『제5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____ 생협아카데미 5
- 26 2009 『생산과 소비의 상생 연계를 통한 우리밀 산업화의 과제』
 ____ 우리밀 1%의 기적 10%의 희망을 위한 정책 세미나
- 27 2009 『2009 윤리적 소비 공모전 논문부문 수상작 논문집』
 ____ 공모전 2009
- 28 2009 『2009년 iCOOP생협 활동가 의식조사 결과 발표』
 ____ 제11회 포럼
- 29 2009 『생협의 노동과 임금』
 ____ 제12회 포럼
- 30 2010 『2010 윤리적 소비 공모전 논문부문 수상작 논문집』
 ____ 공모전 2010
- 31 2010 『제6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____ 생협아카데미 6
- 32 2010 『일본자료연구모임 '연리지' 2010년 활동 자료집』
 ____ 동아리 2010
- 33 2010 『아시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ICA/iCOOP 생협 워크숍』
 ____ 기타 2010
- 34 2010 『개정 생협법 이해』
 ____ 제12회 후속교육

- 35 2010 『2010년 유럽영국몬드라곤 방문 보고회』
____ 제13회 후속교육
- 36 2010 『개정된 생협시행령 시행규칙 내부지침에 대한 과정과 이해』
____ 제14회 후속교육
- 37 2010 『통화 운동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____ 제13회 포럼
- 38 2010 『생협이 지역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____ 제14회 포럼
- 39 2010 『생협에서 공제사업이 가지는 의미와 방향』
____ 제15회 포럼
- 40 2010 『2009년 iCOOP생협 조합원 소비생활과 의식 결과 보고』
____ 제16회 포럼
- 41 2010 『유통인증 5년에 대한 평가』
____ 제17회 포럼
- 42 2010 『아이쿱생협 활동을 위한 이론 정리를 위한 토론』
____ 제18회 포럼
- 43 2011 『성공회대학교 협동조합경영학과 영국 방문보고』
____ 제16회 후속교육
- 44 2011 『복지국가 스웨덴에 대한 이해』
____ 제20회 후속교육
- 45 2011 『2011 스웨덴, 덴마크협동조합 : 북유럽협동조합, 사회복지 기관방문
연수보고』
____ 제21차 후속교육
- 46 2011 『협동조합기본법해설』
____ 제23회 후속교육
- 47 2011 『제7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____ 생협아카데미 7
- 48 2011 『일본자료연구모임 ‘연리지’ 2011년 활동 자료집』
____ 동아리 2011
- 49 2011 『한국생협운동의 기원과 전개』
____ (재)iCOOP협동조합연구소 5주년 기념 심포지엄
- 50 2011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경제분야의 역할』
____ 한국사회포럼 2011
- 51 2011 『아이쿱생협 직원 복지의 바람직한 방향』
____ 제19회 포럼
- 52 2011 『조합원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향 모색』
____ 제20회 포럼

- 53 2011 『조합원 활동가 교육 현황, 평가』
 ____제21회 포럼
- 54 2011 『iCOOP생협 공정무역 5년의 성과와 과제』
 ____제22회 포럼
- 55 2011 『아이쿱생협의 새로운 생협운동 정책에 대한 평가』
 ____제23회 포럼
- 56 2012 『보편적 복지시대를 열어가는 친환경무상급식운동의 성과와 향후 과제』
 ____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공동포럼
- 57 2012 『한국협동조합운동에 대한 진단과 과제』
 ____2012 세계 협동조합의 해 한국조직위원회 포럼
- 58 2012 『제8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____생협아카데미 8
- 59 2012 『2011 윤리적 소비 공모전 논문부문 수상작 논문집』
 ____공모전 2011
- 60 2012 『2012 윤리적 소비 공모전 논문부문 수상작 논문집』
 ____공모전 2012
- 61 2012 『2012 해외협동조합탐방의 열매를 나누다』
 ____제24회 후속교육
- 62 2012 『유럽민중의 집과 지역 네트워크 iCOOP생협 경험 연구 : 윤리적 소비와 지역생협 이사회 분석』
 ____제25회 후속교육
- 63 2012 『유럽생협의 성공과 실패 요인 분석』
 ____제24회 포럼
- 64 2012 『일본 생협매장 사업의 실제와 시사점, (『현대일본생협운동소사』)저자에게서 듣는 일본생협운동의 전망』
 ____출판기념세미나 및 제26회 포럼
- 65 2012 『ICA 총회 및 해외협동조합 연수보고회』
 ____제26회 후속교육
- 66 2012 『한국 사회의 물 공공성과 식수 안전성을 생각해 보다』
 ____제27회 포럼
- 67 2013 『일본자료연구모임 ‘연리지’ 2012년 활동 자료집』
 ____동아리 2012
- 68 2013 『2013 윤리적 소비 공모전 논문부문 수상작 논문집』
 ____공모전 2013
- 69 2013 『CS자유대학 : 수강생 격언집』
 ____기타

- 70 2013 『윤리적인 언론 소비, 어떻게 할 것인가?』
____ 제27회 후속교육
- 71 2013 『농지가격이 친환경 농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
____ 제28회 포럼
- 72 2013 『공정무역을 통한 인권 회복 활동』
____ 제28회 후속교육
- 73 2013 『iCOOP생협의 공정무역 현황과 방향』
____ 제29회 포럼
- 74 2013 『생활협동조합의 경제적 역할 분석』
____ 제29회 후속교육
- 75 2013 『한일생협의 조합원 소비생활과 의식조사 결과 발표』
____ 제30회 포럼
- 76 2013 『윤리적소비와 시민사회』
____ 2013년 시민사회포럼·한국NGO학회·(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공동기획 포
럼 및 제 31회 포럼
- 77 2013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
____ 아이쿱생협 국제포럼 및 제32회 포럼
- 78 2014 『제1회 아이쿱 협동조합 논문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____ 공모전 2014
- 79 2014 『윤리적 생산을 위한 iCOOP생협 생산자들의 활동과 비전』
____ 제33회 포럼
- 80 2014 『영국 코퍼라티브 그룹의 위기와 거버넌스 개혁』, 『파고르 가전 파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____ 34회 포럼
- 81 2014 『아이쿱생협 생산자에게 듣다』
____ 제30회 후속교육
- 82 2014 『아이쿱생협 생산자 회원의 특성』
____ 제35회 포럼
- 83 2014 『협동조합 제6원칙 ‘협동조합 간의 협동’의 의미와 사례』
____ GSEF 2014-iCOOP SESSION 및 제36회 포럼
- 84 2015 『아이쿱시민협동대학 2015 졸업논문집』
____ 시민협동대학 2015
- 85 2015 『경영연구동아리 2015 논문집』
____ 동아리 2015
- 86 2015 『협동조합의 자금조달과 금융의 문제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____ 간담회 2015

- 87 2015 『칼 폴라니와 21세기 경제』
 ____구례자연드림파크 개장 1주년 & KPIA 창립기념 공동포럼 및 제37회 포럼
- 88 2015 『‘협동조합 사이 협동’의 목표와 방도를 찾아』
 ____제38회 포럼
- 89 2015 『2015년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2015년
 아이쿱생산자회원 실태 및 의식조사』
 ____제39회 포럼
- 90 2015 『제2회 아이쿱 협동조합 논문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____공모전 2015
- 91 2016 『세계 유기농식품 동향과 아이쿱 인증』
 ____제40회 포럼
- 92 2016 『좋은 동네에서 살자 : 지역사회의 내일을 만드는 협동조합』
 ____연구소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93 2016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10년 보고서』
 ____연구소 10주년
- 94 2016 『친환경 우유의 생산 및 소비 확대와 낙농제도 : 아이쿱생협의 판매대행
 제의 시사점(후속교육 : 아이쿱인증의 차별성과 농가현장보고)』
 ____제41회 포럼 및 후속교육

생협평론 정기구독 안내

『생협평론』은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협동조합의 공론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신청 방법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www.icoop.re.kr) 홈페이지에 있는
‘1년 구독권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 전화를 주시거나 혹은 이메일로 주소와 연락처, 이름을
남겨주세요.

구독료

- 1년 구독료 : 10,000원

입금 안내

- 계좌 : 국민은행 448601-01-449694
- 예금주 :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기 타

- 구독 기간에 책값이 올라도 정기구독료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분실이나 반송 등 배달 사고로
『생협평론』이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꼭 연락 주세요.
- 날권 구매는 연구소 이메일로 개별 신청 바랍니다.

전화 02-2060-1373

이메일 icoop-institute@hanmail.net

icoop

www.icoop.re.kr